「'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운영 매뉴얼(1차 개정)

2023. 8.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목 차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Ⅰ.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 1

Ⅱ. 위험성평가란? ····· 9

Ⅲ.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 15

Ⅳ.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20

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PART. Ⅰ

Ⅰ.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평가 운영 매뉴얼 ····· 47

1. 사업개요 ····· 48

2. 추진절차별 사업수행 기준 ····· 55

3. 기술지원·평가 관련 서식 ····· 69

PART. Ⅱ

Ⅱ.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운영 매뉴얼 ····· 151

1. 용어의 정의 ····· 152

2. 매칭지원 사업개요 ····· 155

3. 추진절차별 사업수행 기준 ····· 161

4.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관련 서식 ····· 210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Ⅰ.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 총괄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 →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원칙 | 책임성 | 현장성 | 혁신성

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 자기규율 예방체계 뒷받침 위한 감독행정, 법령·기준 정비

+

②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50인 미만 80.9%	건설·제조 72.6%	추락·끼임·부딪힘 62.6%	하청 40%	새로운 위험
중소기업 집중지원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8대 요인 현장중심 특별관리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산업구조 및 기후변화 대비

③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강화
-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중앙-지역-업종)
- 현장 중심 안전보건교육 강화

④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 전문기관 간 연계 협업
- 응급의료 비상상황 대응체계
- 중앙-지역 협업·거버넌스

핵심 실행 전략 및 주요과제[위험성평가 중심]

핵심전략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❶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정착

❷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찾고 유해·위험요인을 통제 할 수 있는 간소화된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 개발·보급

❸ '위험성평가' 현장 정착 지원을 위해 법령·기준 체계 정비 추진

1.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현재 모습

-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 '13년부터 강행성 없이 도입 → 법령 및 감독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여 미작동
- 대기업은 일률적,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 → 형식적 운용

1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23.~),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 확대**('24.~)

☞ **적용 시기**: ('23년 내) 300인 이상 → ('24.) 50~299인 → ('25.~) 5~49인

- **미실시,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벌칙** 신설 ('23.~, 산안법 개정)

- **지도·점검** 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개선**대책(재발방지)의 **적정성, 노·사 참여** 여부, **현장 적용성** 등 위주로 **확인**

○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 →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

2 「핵심 위험요인」 발굴 · 개선 중심으로 운영

○ 기업 내 **아차사고** 및 **실제 사고**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을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 **아차사고** 등 **사고 분석 지원**을 위해 **「재해원인 분석·공유 매뉴얼*」** 마련('24.), **세부 업종별 주요 사고 사례** 등도 제공('23.)

* 노·사, 전문가 등 논의를 통해 업종·규모별 현장 적용 상황 등 평가를 거쳐 매년 보완

-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및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23~)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

*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의 과정, 기업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문제까지 분석·제시

○ **아차사고**와 **휴업 3일 이상 사고**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사례**를 **전파·공유**하고, **위험성평가**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교육토록 지도

- **점검** 시,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고사례 인지·공유** 여부 **중점 확인**

3 기업 규모·작업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적용·확산

○ **중소기업** 등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요인**을 **발굴·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개발·보급**('23.~)

*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단계별 개선(안) >

○ 사업장 여건·특성에 맞게 **업종·직종, 유해·위험요인***별로 **매뉴얼** 및 **우수사례** 등 보급('23.~)

* (例) 고령자(55세 이상) 비중, 산재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고령자 유해·위험요인을 반영

4 위험성평가제 현장 실행력 제고

○ **(노·사 참여)**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노·사 참여** 및 **협업 강화**

-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단계 뿐 아니라 **사전준비, 위험성 추정·결정** 등 **전체 단계**에 **근로자 참여 확대**

- **개선**대책,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보고·공유**(분기별)

○ **(TBM 활성화)** **사업장별 정기**(연 단위) · **수시**(공정·설비 변경 시)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구조화**('23~. 사례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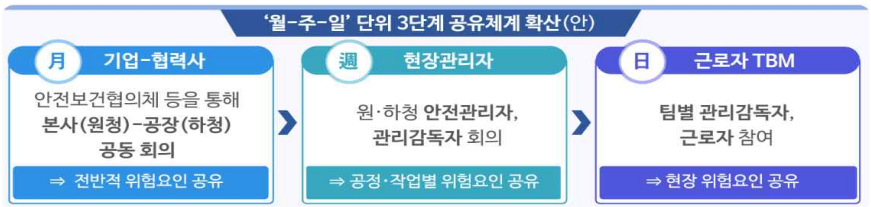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Tool Box Meeting)을 **현장 공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토록 **업종·공정별 'TBM 활용 가이드*'** 보급('23.~)

* (例) ▲건설: 현장별 매일 TBM ▲제조: 본사-공장 간 사내방송, SNS 등 활용한 공유체계

- **스마트기기**를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 공유**되는 **모바일 APP** 개발·보급

○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작업·공정을 가장 잘 아는 **관리감독자**가 **위험요인 파악** 등 **핵심역할**을 하도록 **가이드 마련** 및 **교육*** 강화('23)

* 근로자 지도·감독·훈련, 위험요인별 관리 방법 등 핵심 직무별 표준 교육과정 개설

○ **(위험성평가 운영 시스템)** 위험성평가 全 단계를 **현장**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운영 시스템** 구축('23.)

- **동종·유사 기업**과 **위험성평가 운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 마련

* 사업장 지도·감독, 컨설팅 시 기업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측정·입력, DB 구축 →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주 자가진단 결과와 동종·유사 평균 수준을 비교, 미비점 확인·개선

○ **(사례 공유)** **권역별 포럼 개최,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등을 실시·개최하여 저변 확대

2.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

1 정기감독: 위험성평가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

현재 모습

- 산업안전감독('21. 2.7만개소)은 **정기감독**(1.1만개), **기획감독**(위험요인별 1.5만개), **특별감독**(일부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체계로 실시·운영
- **현장**에서는 **감독에 적발**되면 실질적인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재수없다"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관행**

○ **(감독 방향)**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사고사례 분석 기반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이행** **여부**를 **필수 확인**('23. 감독계획)

*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인지, 참여 여부, 사고사례 공유 등 중점 확인

** 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평상 시 안전관리 관행 등

-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수준,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

○ **(대상 선정) 산재통계**(보상) **분석** 등을 통해 **재해 발생 경향성**을 **사전**에 **확인** 후 **감독 방향 설정** → 고위험 기업 **자동 선정***('23.~)

* 빅데이터(기업+위험요인+예방지원) 및 AI 분석 기반 사고위험 예측 모델 개발('23.)

- **지역**별 실시간 재해 현황, **산업·고용동향** 등에 따라 **위험 업종**을 **사전**에 **포착**하는 **'디지털 산업안전지도*'** 구축·활용

* 워크넷상의 '디지털 기업지도'('21.7월~)와 연계하여 기업별 고용현황과 산재예방 정보를 결합 제공

2 수사·기획감독: 결과책임 확보 및 재발방지에 중점

○ **(수사)** ❶중대재해 **발생원인 철저히 규명**, ❷"**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Golden Rule)의 **위험성평가 반영 여부 중점 수사** → 엄중 **처벌·제재**

* 사고사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분석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특정(例: 정비작업 중 기계 끼임사고 → Lock Out, Tag Out)

-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한 예방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 시 **반영**

○ **(기획감독) 사고 원인**(例: 끼임 방호조치 부실)에 따라 **동종·유사 업종**에도 **사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감독** 실시

* (例) 식품제조업체 등 14만개 대상으로 식품혼합기 등 위험기계 기획감독

-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이행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산재 미보고,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 실시(반기별)

○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기간·범위, 해제절차** 등 **합리화, 급박한 위험** 시 **사전 예방** 목적의 **'한시 작업중지' 예외적 실시** 근거 마련*

* 현장 운영사례, 해외 사례 등 검토·논의를 통해 방안 마련 → 산안법 개정 추진('23.~)

○ **(사후관리) 감독 후, 보고명령 제도**(사업장 개선계획 제출), **확인감독** 등을 통해 개선 상황 지속 확인

3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산재보험료율에 반영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증**('24.~, 보험료징수법 개정)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 상한액**을 現 5배에서 **10배**로 **상향**('24.~, 보험료징수법 개정)

4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강화

○ **입·보직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23.) → **맞춤형, 실습·체험형 교육** 강화

* 실무경력에 따라 ❶기초 안전수칙 점검·감독 → ❷중대재해 수사 → ❸위험성평가 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순으로 커리어패스 설정·관리

3.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 정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화

○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위험기계·기구별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기준규칙**(現 679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23.)

* ▲반도체 공장 등의 비계설치 기준, 수소산업 안전기준 등 보강·신설, ▲現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정 현행화, 중복조항 정비 ▲조문명 및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 등

2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기준 전면 정비

○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분류**(~'24, 법령 개정)

-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규정**은 **처벌이 가능토록 법규성 유지**

  * (例) **처벌규정**: "고소작업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재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 → **고시, 기술가이드** 형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

  * (例) **예방규정**: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또는 추락방지망 등 설치 기준의 세부 내용은 고시, 기술가이드로 제공

3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 **全 부처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 **실태 파악**('23. 관계부처 공동 실태조사) → **중복 규제 개선** 및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 (例) 他 법령 상 안전보건관리 기준이 산안법령에 미달 시, 산안법령을 보완 적용

4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 해소

○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처벌요건 명확화**

-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확행**

○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 강구

해외사례

- **선진국**의 경우 **경제적 제재**를 통해 "**안전보건 미확보 사업**의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 예방 동기 부여** 및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에게 **상한 없는 벌금형** 부과(**매출액**의 **8.6배 벌금 부과** 사례, 대기업은 법원 양형기준에서 **매출액 40%로 상한** 설정)

☞ **산안법·중대법 정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 구성·운영('23.上)

-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개선안 논의·마련**
- TF 內 전문가, 안전보건공단, 노사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정비 자문회의**」 **별도 운영**

Ⅱ.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①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②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③ 또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

□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담당자 단독으로 수행해서는 안되며, 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 참여**

-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정보·위험성,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전반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

※ 언제 실시해야하는가?
- ○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 ○ 공정변경, 작업내용, 방법 및 절차가 바뀐 경우
- ○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 ○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해당공정 및 작업)
- ○ 기존공정·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일상적, 정기적으로 검토할 경우 등

□ 위험성평가의 절차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아닌 순환의 개념

1 1단계: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 ①평가의 목적* 및 방법, ②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③평가 시기 및 절차, ④근로자에 대한 공유·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⑤결과의 기록보존
  *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위험성평가 추진 목표

○ 위험성평가 교육(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목적, 실시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설정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수집

-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장 내 안전보건정보* 수집

  * ▴작업표준, 작업절차서 등,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도급사업장이 있는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사업장 및 동종유사 사업장 재해사례, 재해통계,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등

○ 위험성평가 대상선정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평가대상 분류 방법 예시

○ **(공정 또는 작업)** 가공, 조립, 용접 등 생산공정 또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
○ **(기계 · 기구별 구분)** 지게차, 프레스, 고소작업대 등 기계 · 기구의 종류에 따라 분류
○ **(재해유형별 구분)**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잠재된 재해유형 별로 분류

2 2단계: 유해 · 위험요인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위험요소 파악 방법 예시

- 작업장을 순회하며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관찰한다.
- 어떤 업무활동과 과정이 가장 위험한지, 작업장의 어느 부분이 가장 위험한지 근로자와 함께 관찰한다.(체크리스트 등 활용)
-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위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 동종업종의 조합,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고사례 등을 수집한다.
- 사고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 장기적 유해요소(소음, 유해물질 노출 등) 역시 고려하여 관찰한다.
- 화학물질 MSDS, 기계·기구·장비 제조업체의 지침 또는 데이터 시트를 확인한다.
- 평가자가 식별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있거나 놓쳤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처한 직원들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물어본다.

3 3단계: 위험성결정

○ 사업주는 파악된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을 **사내 규정**으로 확정된

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②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결정** 절차에 따라 **비용 효율적 해결책 적용**을 위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다.

※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할 때

-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위험한 요인을 먼저 해결하고,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요인을 향후에 개선하는 것**

○ 위험성 평가 및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의 기준을 비교하여 유해 · 위험요인별 허용가능 여부 판단

4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중 명확한 ①**중대재해 발생 위험,** ②**다수의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거나 질병발생 위험,** ③**동종업종 사업장의 사고발생 또는 질병발생 사례** 등이 있는 항목의 개선대책은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가장 빨리 개선하여야 함**

○ 감소대책 실행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 확인 및 조치

5 5단계: 기록 · 보존 및 공유(교육)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 위험요인
- 위험성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사업장에 보관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공유하여 위험성 감소 대책과 남아 있는 현장의 위험성에 대하여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안전한 작업절차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있는 지 작업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평가표

1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Checklist)」를 통해 사업주 스스로 중상해 및 사고사망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 수준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수준향상 지원

*SIF(Serious Injury & Fatality) : 사망 및 중상해 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작업/상황(Potential) 및 재해유발요인(Precursor)에 집중한 재해예방활동

○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파악: 사망 및 중상해 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작업/상황(Potential) 및 재해유발요인(Precursor) 파악에 집중하여 해당 유형의 사고예방 역량 수준 확인

[SIF 중상해이상 재해예방 모델(출처:National Safety Council)]

하인리히 이론 과 SIF 모델의 차이점	
하인리히 이론 (Heinrich's Satefy Triangle)	피라미드 하단의 경미한 위험요인을 **모두(All) 관리함**으로써 상단의 중대한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오해. 모든 위험요인 관리는 불가능하기에 **중대재해 가능성**에 대한 해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SIF 모델 (New SIF Prevention Model)	모든 사고가 중상해로 연결되지 않고 **위험작업 및 상황(Potential)**과 **재해유발요인(Precursor)**이 **중첩**되어 **발생**할 때(**약 21%**_OSHA),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가능성을 가진 사고유형의 예방에 집중

2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파악 절차

□ 최근 5년간 제조업에서 발생한 중상해 이상 사고(3,608건)를 분석하여 작성한 「Kosha-SIF 고위험요인 평가표*(65개 항목)」 활용

* 「Kosha-SIF 고위험요인 평가표」는 제조업에 우선 적용된 형태이므로,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은 사업장 특성과 사고사망 예방에 적합한 방법으로 고위험요인 파악

(평가표는 공단 홈페이지(kosha.or.kr)/사업소개/산업안전/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자료실 #1에서 다운로드 가능)

○ 중상해 이상 재해 유발 가능성을 가진 위험작업 실시 파악

① 사업장 담당자 면담을 통해 위험작업 실시여부 우선 확인

-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위험작업 확인
- 잠재적으로 수행 가능한 위험작업 면담 확인

② 현장 방문 시의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을 기반으로 추가 확인

③ 잠재적인 추가 위험작업 실시 가능성은 사업장 자체 확인 안내

○ 위험작업으로 판단된 작업 및 상황에 대한 재해유발요인/위험상황 가중요인 존재 여부 파악

① 현장 방문 시의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을 기반으로 확인

② 잠재적인 추가 재해유발요인 여부는 사업장 자체 확인 안내

❖ **위험상황 가중요인 :** 해당할 경우 중상해 이상 재해 발생 확률이 높아짐(출처: ORCHSE)

위험상황 가중요인	구분
설비·공정이상(이상상황)	설비·공정 불안정/이상
	긴급 설비·공정 중단
	미계획(긴급) 유지보수 등
설비/물질/절차/생산량	설비 노후화, 공정 개선 등으로 설비 변경
	설비·공정 변경에 따른 작업 절차 및 취급 유해·위험물질 변경
	생산량 변경으로 작업량 증대 또는 작업 조건 변경 등
수급(외주)업체 위험작업	수급(외주)업체에 의한 공사/정기보수/정비
	위험물질 취급/위험 설비 사용 작업의 외주화
	도급·수급 업체 혼재작업 등
기타 작업환경 및 내용 변경	양중기, 차량,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용한 이송 중량물의 형태 변경 등

3 핵심 고위험요인 확인·통제방안 마련

□ 「Kosha-SIF 고위험요인 평가표」를 활용하여 파악된 고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상황 가중요인을 고려한 통제 방안 검토

○ 재해유발요인과 위험상황 가중요인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위험요인을 다중 통제(공학적 대책 포함)하는 등 강화된 감소대책 수립

○ 위험작업에 연계되는 재해유발요인이 없더라도 위험상황 가중요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위험작업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

○ 고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의 개선대책 수립은 효과가 가장 높은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예산 등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의 조치(현실적 측면)를 고려

○ 근본적인 개선(제거·대체)이 불가할 경우 관련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서(SOP) 등을 작성 및 관리하고, 공학적·관리적 통제 및 개인보호구 순으로 개선대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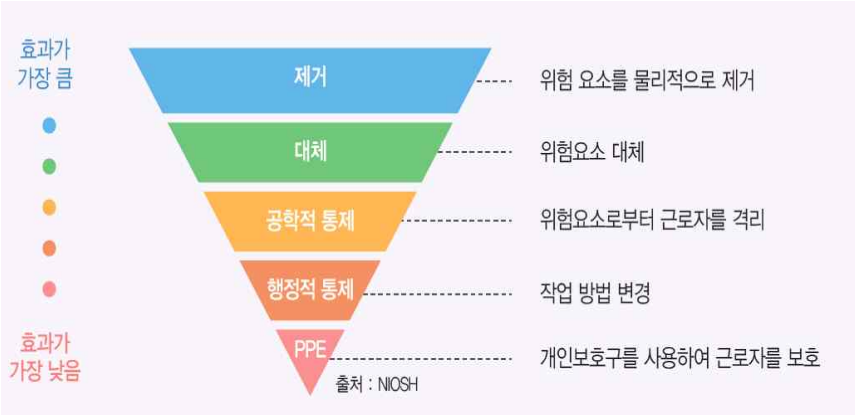

[위험요인 개선 순서(출처:NIOSH)]

○ 적용된 고위험요인의 개선대책이 작업자의 실수나 기계·기구의 고장 발생 시 중상해 이상 재해로 연계되지 않는지 검토(Fail-Safe, Fool-Proof)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이 결정되면 자원(인력·예산 등) 배정방안을 마련하고, 담당자 및 개선시기를 지정하여 권한과 책임 부여

□ 주요 SIF 고위험요인별 제거·대체, 통제 가이드(예시)

1) 고소작업(추락위험 방지조치 미흡)

① 제거·대체
- 설계 및 시공 시 개구부 등 추락 위험장소 최소화

② 통제
- (공학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
- (관리적) 작업 전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방호망 등 점검 및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③ 개인용 보호구
-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2)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사용 작업

① 제거·대체
- 끼임 위험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자동화 기계 도입 및 작업 동선 확보

② 통제
- (공학적) 끼임·말림 위험점 및 동력전달부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 (관리적)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후 기동스위치 잠금 조치 및 표지판 설치(LOTO, Lock-Out/Tag-Out), 작업허가제

③ 개인용 보호구
-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 착용

Lock-Out(잠금장치)	Tag-Out(표지판)
기계 등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물쇠·열쇠와 같은 잠금수단에 이용되는 장치	표지판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가동하지 않도록 에너지 차단장치와 기계가 통제 되고 있음을 표시하고 차단장치의 잠금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꼬리표와 같은 경고표지

3) 화재·폭발 위험물질 취급 작업

① 제거·대체
- 화기작업 시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 사용

② 통제
- (공학적) 용접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용접방화포 등 사용, 정전기 방지 조치 실시,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방폭공구 사용
- (관리적) 작업장 내 위험물질 현황 관리, 화기작업 시 가스농도 측정 및 화재감시자 배치

③ 개인용 보호구
- 제전작업복 착용

Ⅳ.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BM(Tool Box Meeting) 개요

1 TBM(Tool Box Meeting) 정의

○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직장, 팀장 등)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의 내용**과 **안전 작업 절차** 등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활동**을 약칭하는 것입니다.

- 국내에서는 **안전 브리핑,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 조회, 위험예지 훈련**으로,
  해외에서는 **Tool Box Talks, Tool Box Safety training**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TBM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여, **TBM 실행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TBM의 필요성

○ **주기적인 TBM 활동**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 특히,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TBM**을 통해 작업자는 **위험요인**을 **재확인**하며 **예방대책**도 **잊지 않게 됩니다.**

- 작업자 간 안전 대화는 **안전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이며**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게 해 줍니다.

○ TBM은 조직의 **안전 문화**와 **인식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 구성원 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안전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은 그 자체가 **안전 문화 구축의 출발**입니다.

참고 **TBM 필요성**

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잊어버림(망각)은 당연한 생리 현상이다"

독일 심리학자 Hermann Ebbinghaus(1855~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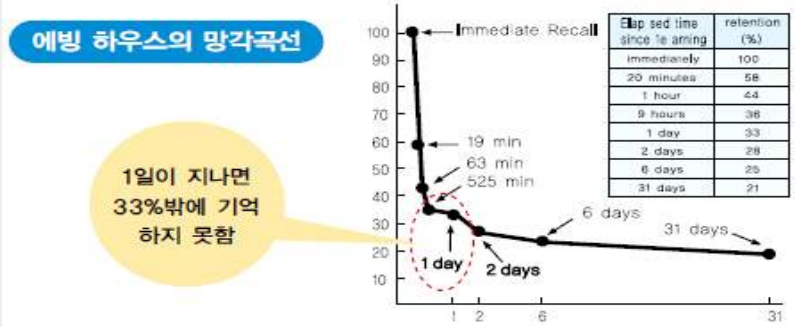

※ 일정 시간 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망각을 없애는데 효과이며, TBM을 통해 안전 작업 방법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② TBM의 긍정적 효과

- 긍정적인 안전 문화의 성장
- 모든 근로자가 경계, 조심성 유지
- 팀 소통과 생산성을 향상
-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을 반복해서 확인
- 위험과 행동계획에 대해서 최근 기록을 유지

▲ Grow a positive safety culture within an organization
▲ Keep all workers alert
▲ Improve team communication and productivity
▲ Serve as a reminder of workers' duties and responsibility
▲ Function as an update record of hazard and action plan

[출처] www.safetyculture.com/topics/toolbox-topics

○ 다만, **안전한 작업 환경**은 TBM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다른 **많은 추가 사항과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합니다.

3 TBM 실행 시간과 장소

○ TBM은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작업 전에 빠르고 쉽게 진행하는 간단한 브리핑입니다.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TBM은 **10분 내외로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다만, 이 시간 동안에는 가급적 **다른 주제** 또는 **여러 주제를 같이 논의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장소**는 작업장이 될 것이나, 가급적 **소음과 기타 방해요소가 없는 곳**에서 대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자가 TBM 리더의 말을 들을 수 없거나 다른 활동으로 주의가 산만하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4 TBM 실행 주기

○ 개최 주기는 **작업(장)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 **매일 작업 전에 개최하는 것이 안전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❶ 현장 또는 작업장에 **새로운 작업자가 정기적으로 유입**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❷ 작업에 **위험한 분야**가 있거나 해당 **공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 「2020 ABC(미국 건설업 협회) 안전 성과보고서」에는 TBM을 매일 실시한 회사가 매월 실시한 회사에 비해 총기록 재해율(TRIR)이 82%까지 낮아졌다고 보고함

○ 다만, **작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매주, 격주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5 TBM 참여자 수

○ **소수가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4명에서 10명** 사이가 가장 효과적이며 **최대 20인 이내**로 하되, **해당 작업**의 **수행자는 가급적 모두 참여**시키도록 합니다.

> 유의 **TBM에 불참한 작업자를 확인하고, 사전에 조치합니다.**
>
> ▪ 안전 작업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자임에도 불참한 인원에 대해서는 작업 전 반드시 TBM 내용을 공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TBM 논의 주제

○ 논의 주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작업장의 현재 또는 향후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작업절차의 변경, 최근 이슈와 사건·사고, 작업 일정, 안전 작업 모범사례, 신설 장비·설비의 사용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주제 중 **당일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제**를 **3개 이내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TBM 논의 주제(예시)**

▪ 작업 절차변경 내용
▪ 새로운 위험의 식별 및 기존 위험 검토
▪ 위험요인 통제방안
▪ 최근 이슈와 사건·사고 사례
▪ 작업 일정(일일 또는 주간)
▪ 안전 작업절차
▪ 새로 도입되는 장비와 설비의 사용법
▪ 날씨·계절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폭염·탈수)
▪ 교대 근무에 따라 다음 근무자에 전달해야 할 안전 사항

TBM 단계별 활동 내용

1 TBM 단계별 활동(실행개요)

TBM은 정해진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각 기업과 현장의 작업내용과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TBM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TBM을 실시하는 단계별 예시**입니다. 참고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TBM**을 실시할 것을 권합니다.

❶ TBM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작업·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 TBM은 모든 작업자가 작업 전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이해**할 수 있는 필수적인 활동으로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TBM의 핵심 전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❷ TBM 실행 과정에서 핵심은
작업내용에 대한 **중점 위험요인**과 **대책**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 TBM은 작업 전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된 위험 이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 참석자 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작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작업자**가 **TBM의 전달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❸ TBM 환류 조치는
제기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작업자에 피드백**하고,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 TBM 단계별 활동 내용 요약 >

단 계	내 용
1 TBM 사전 준비	①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실시**
	②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내용 확인**
	③ **작업 현황 파악** ❶ 작업 물량, ❷ 작업 범위, ❸ 작업내용 ❹ 필요한 보호구
	④ **TBM 전달자료 작성 및 내용 숙지** ❶ 위험성평가 결과, ❷ 사고보고서, ❸ 안전작업 지침 및 규정
2 TBM 실행 과정	①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 과도한 음주, 37℃ 이상 체온, 약물 복용 여부 등 이상 유무
	② **작업내용 / 위험요인 / 안전 작업절차 / 대책 공유·전달** ❶ 최근 작업장 사고사례 공유 ❷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분위기로 작업자의 발표 적극 권장 ❸ 다양한 매체, 방법(스마트폰, App 등)으로 전달력 제고
	③ **작업자가 TBM 내용 숙지하였는지 확인** ❶ 중점(One point) 위험요인과 대책 숙지 여부 ❷ 외국인 포함 시 통·번역 등 효과적인 전달 방안 마련 * 지적하거나 확인할 사항을 작업자가 구호로 복창할 수 있음
	④ **위험요인, 불안전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 확인** ❶ 멈춘다(Stop) → ❷ 확인한다(Look) → ❸ 평가한다(Assess) → ❹ 관리한다(Manage)
3 TBM 환류 조치	①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② **TBM 결과의 충실한 기록·보관**
	③ **관련 조치 결과 피드백**

2 TBM 단계별 활동(세부사항)

1 TBM 사전 준비

①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 Tool Box Meeting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활동**입니다.
-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에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 우수사례, 표준모델 확인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자료실

②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실제 현장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작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특히, **아차사고**를 포함한 **사고사례**와 **대책**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 최근 유사한 사건 사고사례 확인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③ 작업 현황을 파악합니다.

- 예상되는 **작업 물량**은 얼마인지, 주된 **작업장소**는 어디이며, **작업내용**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작업자들이 계속 작업을 해 오던 작업자인지, **신규 업무수행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보호구가 필요한지** 작업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협력업체의 작업내용도 파악**합니다.

④ TBM 전달자료를 준비하고 내용을 숙지합니다.

- TBM을 주관하는 **TBM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TBM 리더는 사전에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사고보고서, 안전작업 지침**과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안 이후에 이를 작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이것은 TBM 리더가 **TBM의 자료와 친숙**해지도록 자료를 **여러 번 읽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의 **TBM 리더의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TBM 리더가 짧은 시간 내에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과 대책을 공유하고, 작업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성공적인 TBM의 전제조건입니다.
- 효과적인 전달과 운영을 위해 TBM 리더는 사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숙지합니다.

- 현장에서는 **안전의식이 높고 안전 작업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작업자**를 **TBM 리더로 추천**할 수 있으며, 작업팀장(또는 반장, 조장) 등 관리감독자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참여한 작업자, 관리감독자 등이 TBM 리더를 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TBM 리더**는 효과적인 TBM의 실행을 위해서 별도로 **안전보건 전문교육**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 **작업 시 유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업종 및 공정별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 해당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검색어: 작업 전 안전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TBM 실행 과정

유의 TBM이 왜 필요한지 잘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요건입니다.

- 왜 지금 TBM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자 하는 안전 주제와 잘 연관시켜서 작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 작업자 개개인이 TBM에 참석하고 발언하는 것이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① 작업자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안전한 작업**을 위한 **기본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 전날의 **과도한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인한 피로감, **발열** 등은 **안전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고위험 작업에는 투입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작업자 스스로**에게 **"내가 오늘 이 작업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다른 작업자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작업내용 / 위험요인 / 안전 작업절차 / 대책을 공유합니다.

유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TBM은 작업자들의 안전 행동, 안전을 위한 노력, 주도적인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 상호 발언과 행동에 대해 비판을 금지하며, 안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의식으로 진행하지 말고 팀원과 함께 대화하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 사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하지만,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현장의 모든 위험이 제거되거나 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 TBM 리더는 **TBM**이 **작업 전 마지막 위험성평가**라고 생각하고 작업자와 함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험요인과 대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TBM 절차가 필수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작업내용과 공정의 변화로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경우

❷ 작업장 여건상 위험의 제거, 대체가 아니라 안전 작업 방법의 준수, 보호구 착용 등 관리적 대책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

❸ 작업자가 새롭게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입니다.

- 최근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아차 사고, 사고사례** 등 **실제 사례를 활용**하면 작업자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동종업종의 사고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안전작업을 위한 **보호구의 지급 여부**와 **착용 상태**도 참석자 간에 함께 **점검**합니다.
  -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호구**가 있고 **작업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보호구**가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내용을 TBM 리더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예상되는 위험요인과 대책을 **작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말하거나 토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 **참석자 간 칭찬**을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 TBM을 토론 없이 하기보다는 질문이 오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작업자의 지식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美) 질병통제예방센터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valuation of toolbox safety training in construction : The impact of narratives (2018년)

유의 TBM 안전 대화 사례

-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OOO님이 말씀하신 금일 작업의 위험성은 우리 작업과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 **(바람직한 사례)** "OOO님의 발언 감사합니다. 금일 작업의 위험성에는 OOO님이 말씀하신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고 추가로 OOO에 대한 위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다양한 매체와 전달 방법**을 활용합니다. **앱(App), 온라인(랩탑), 직원용 포켓 카드, 전단지, 차트**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TBM에서 **소품을 활용**하면 **작업자의 집중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이동용 사다리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경우 **TBM을 하면서** 그 위험성을 지적할 수 있도록 **근처에 이동용 사다리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③ 작업자가 TBM의 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TBM은 작업 전 마지막 위험성평가인 동시에 **단시간**(또는 단기간) **시행**하는 **교육훈련**이기도 합니다.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이 **TBM의 내용, 메시지**를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질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업자 개인별 발언**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활용합니다.

  - **퀴즈 형식**으로 **질의·응답**하는 현장의 사례도 있습니다.

유의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 **'무엇을', '어떻게', '가능하였나'와 같은 열린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 '예', '아니오'와 같은 제한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예시> **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이유는 뭐죠?** **② OO작업 시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은 무엇인가요?** **③ 정리 정돈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예시> ① 안전벨트는 다 착용했죠? ② OO작업 시 안전 수칙을 다 알고 있죠? ③ 정리 정돈 다 하셨나요?

- 작업자가 안전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다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 TBM 실행 시 여유를 갖도록 합니다.

- 시간에 쫓기듯 TBM을 진행하는 경우 작업자들은 TBM에 집중하기 어렵고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절차라고 인식합니다.

- 특히, 여러 위험요인 중 **중상해 이상의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점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책을 확인**합니다.

  - 여러 위험요인 중 중점요인을 서로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TBM은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 **TBM은 모든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작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통·번역 방안을 마련합니다.

  - 작업자나 직원 중에서 **통·번역을 도와줄** 각 **국적의 대표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TBM 등 운영사례

▪ **외국인 근로자의 TBM 이해도, 숙지 여부** 확인을 위해

① 외국인 근로자가 TBM 시범을 보이도록 함(사진1)

② TBM 지적·확인 교육을 별도로 실시(사진2)

③ 안전교육 시 외국인 근로자가 맨 앞자리에 착석(사진3)

④ 내국인 직원들도 간단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어를 학습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하도록 함

① 외국인 근로자 TBM 시범	② TBM 지적·확인 교육	③ 교육 시 맨 앞자리 착석

[출처] 2021년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자료(기업명: 다인안전산업)

④ 위험요인, 불안전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을 전달합니다.

▪ 멈추기(Stop)

- 작업자 본인이나 주변의 작업자를 위험하게 하는 요인이나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한 경우, **반드시 멈춥니다.**

- 해당 작업은 이전 작업과는 다른 **새로운 작업**일 수 있고, **작업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그 작업을 마지막으로 한 지가 오래된 작업**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확인하기(Look)

- 멈춘 후에는 그 작업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평가하기(Assess)

- 그리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안전 작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안전 작업 방법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받았는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또는 도구)**를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관리하기(Manage)

- 평가 후에는 **현장의 모든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 다만, **작업자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

참고 The SLAM technique(Stop, Look, Assess, Manage)
- 멈추고, 확인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술

1 **멈추기(Stop): 작업을 멈추고 각 단계를 생각**

① 할당받은 작업이 새로운 작업인가?
②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었는가?
③ 해당 작업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인가?
④ 해당 작업을 하는데 편안함을 느끼는가?
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2 **확인하기(Look):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항상 확인하기**

① 작업구역 내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험을 조사함
예) 안전하지 않은 사다리, 정리되지 않은 작업 환경 등
② 작업 각 단계에 대한 위험요인을 식별함
③ 위험요인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평가함

3 **평가하기(Assess): 안전하게 작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하기**

① 평가항목(4개): 지식, 기술, 훈련, 보호구(도구)
* 안전한 작업을 위해 작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훈련은 받았는지, 작업을 위한 적합한 보호구(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② 직원들이 위험에 대해 많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교육 이수 전까지는 작업에 투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많은 추가 조치 필요

4 **관리하기(Manage): 현장의 모든 위험을 제거,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함**

① 적정한 장비가 사용되었고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② 완료된 작업에 대해서는 종료 후 잘된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해 기록·검토
③ 예상치 않게 발생한 것은 없었는지, 향후 더 잘 준비하고 계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

[출처] HSE, Leadership and worker involvement toolkit Step6
Communication skills for safety briefing and toolbox talk

3 TBM 환류 조치

①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을 검토합니다.

- TBM을 통해서 지속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가능하려면 작업자들이 **TBM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작업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작업 방법을 제안**한 **작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천합니다.

②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작업자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 **위험요인으로 평가된 사항,** 작업자가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조치**합니다.
- 그리고 **조치 결과**도 **작업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서 TBM 실행의 필요성을 바로 체감하도록 합니다.

③ TBM 결과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 작업일시, 작업내용, TBM 장소, 참석자, 위험요인 확인·조치사항, 공유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 특히 **참석자 기록**은 **불참한 작업자를 확인**해서 TBM **참석을 유도**하고 관리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으며, 위험요인에 대한 **후속 조치도 작성**하여 보여줍니다.
- TBM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작업자를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Tool Box Meeting 성공 요소**

❶ Tool Box Meeting 리더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❷ 위험성평가와 연계하여 도출된 위험요인을 Tool Box Meeting시 전달

❸ 사전에 Tool Box Meeting 주제에 대한 사전 자료준비

❹ Tool Box Meeting에 대한 기록관리

❺ Tool Box Meeting 진행 시 작업자의 이해도 확인

❻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Tool Box Meeting 효과성 평가

[출처] 김정남, 「Tool Box Meeting 평가시스템 적용을 통한 효과성 향상에 관한 사례 연구」(2019.8)

유의 **작업장 정리, 정돈은 안전 작업의 기본항목입니다.**

▪ 작업자들에게 **일과 종료 전**에 **정리 정돈**을 하도록 합니다.

❶ **분류**: 필요한 것은 보관하고, 불필요한 자재는 버립니다.

❷ **정돈:** 공구들을 원위치에 정돈합니다.

❸ **청소:** 작업장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3 TBM 리더의 역할과 의무

○ **TBM 리더의 역할은 TBM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단계별로 TBM 리더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리더의 역할 내용
TBM 시작 전	- 작업 관련 숙지사항 및 전달 사항 작성 - 예상 작업 물량 및 작업범위, 내용 파악 -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자료 - 작업을 위한 도구 또는 보호구 준비
TBM 진행 시	- 작업자의 건강 상태 확인 - 작업자와 함께 위험요인(잠재요인 포함) 확인, 대책 공유 - 중점 위험요인과 대책 숙지 여부 확인 - 불량 보호구 및 방호장치 파악, 건의 사항 접수 - 불량 보호구 교체 - 협력사 관리자 등과 협조(작업 범위, 투입 인력 등 상호 확인)
TBM 종료 후	- TBM 내용 이행상태 모니터링 -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관리 - 시설, 공구·도구 관리 등 불안전한 위험 요소 파악·제거 - 정리·정돈 확인 - 작업 중 특이사항 보고 및 TBM 기록관리

[출처] 이지수, 「근로자 주도형 TBM을 통한 건설업 안전 조회 대체 방안에 관한 연구」(2017.8월) 38p 참조

○ 또한 TBM 리더를 포함한 현장의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전달한 내용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 TBM 리더와 관리자가 TBM에서 언급된 사항을 위반한다면 TBM 실행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참고 **리더가 의사소통 시 갖추어야 할 9가지 역량**

- **첫인상의 중요성(First impression count)** 열정을 보여주고, 현장에서 건강 및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
- **청중에 대한 고려(Know you audience)** 작업자들의 모국어가 서로 다르다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유의해야 함
- **명료함과 일관성 유지(Keep it simple and be consistent with your message)** 짧고 간단한 단어와 구문을 사용하며, 속어나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함
- **존중감 표시(Demonstrate respect)** 작업자들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며, 듣고 있다는 것을 몸동작으로 표시함
- **목소리의 톤에 대한 고려(Think about the tone your voice)** 목소리의 톤을 바꾸면 작업자들이 더 많이 들을 가능성이 높음
- **전달 속도에 대한 고려(Think about the pace of your delivery)** 내용을 전달할 때 긴장하면 서두르게 되므로 여유를 갖는 게 필요함
- **열린 질문으로 이해도를 확인(Use open question to check understanding)** 전달한 내용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들에게 열린 질문으로 확인함
- **작업자들 특성을 충분히 고려(Some people may need more explanation than other)** 전달자가 서두르게 되면 참을성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작업자들은 어떤 질문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긍정적인 자세 유지(Keep it positive)**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여야 함

[출처] HSE, Leadership and worker involvement toolkit Step4
Communication skills for safety briefing and toolbox talk

4 작업자의 역할과 의무

○ **작업자는 작업자 본인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에 대해 사업주와 상호협력해야 합니다.**

- 익숙하지 않거나, 불편하며,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낀다면 반드시 작업을 멈추고 해결방안을 관리자에게 문의합니다.

- TBM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합니다.

-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들을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작업자는 이러한 사업주의 노력에 협력하여 교육에 참석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야 합니다.

○ **다른 작업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자신이 알고 있는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책을 공유해서 다른 작업자들이 같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과 태만으로 다른 작업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나아가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들을 기능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각종 안전 활동은 사실대로 전달하고 기록합니다.**

- 예를 들어 소화기로 장난을 하거나 오용하는 행위,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교육 참석기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기준!(국내기업 사례)

▸ 안전보건 10계명(철강업종 A社 사례)

1. 모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한다.
2.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한다.
3.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및 협력사에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4. 모든 작업 시 적절한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5. 작업장 내 안전 통로를 확보하며, 작업 전·후 정리 정돈한다.
6. 가동 중인 기계에 접근하지 않으며, 방호장치를 임의 해제하지 않는다.
7. 화기/고소/밀폐/전기 등 위험작업은 반드시 안전 작업허가 후 실시한다.
8. MSDS를 취급장소에 게시하며, 사전에 위험정보를 반드시 확인한다.
9. 휴대폰 사용/과속/음주/폭언/폭행 금지 등 기초 안전질서를 준수한다.
10. 급박한 위험 발견 시 누구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즉시 신고한다.

▸ 안전보건 절대수칙 및 3초 확인 점검(조선업종 B社 사례)

절대수칙	3초 확인점검
1. 스마트폰/이어폰 사용금지	A. 상차 작업 전
2. 흡연금지(이동/작업 중)	B. 자재 고박 전
3. 30km/h 준수(지게차 8km/h)	C. 차량 출발 전
4. 안전벨트 착용	D. 이동하기 전
5. 권상부재 하부 출입금지	E. 작업착수 전
6. 기계 안전장치 제거금지	F. 변경 작업 전
7. 전기작업 시 LOTO 준수	G. 호선 오르기 전
8. 추락방지 시설 임의 해제 금지	H. 밀폐공간 출입 전
9. 도장/화기 혼재작업 금지	I. 크레인 사용 전
10. 러그이면부 용접누락 금지	J. 완성품 운반 전
11. 가스호스 훼손, 니플 개조 금지	K. 전원 넣기 전
12. 크레인 레일상 무단주차 금지	L. 가스밸브 열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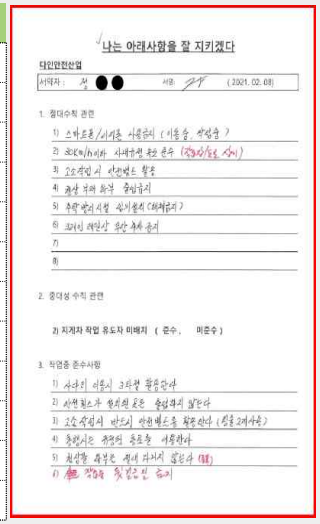
나는 아래사항을 잘 지키겠다

타인안전산업

서약자 : 성 ●● 서명 (2021. 02. 08)

1. 절대수칙 관련

1) 스마트폰/이어폰 사용금지 (이동중, 작업중)
2) 30km/h이하 사내차량 속도 준수 (지게차/5km, 사내)
3)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착용
4) 음주 및 흡연 출입금지
5) 추락방지시설 임의철거 (해체금지)
6) 크레인 레일상 무단 주차 금지
7)
8)

2. 중대성 수칙 관련

2) 지게차 작업 유도자 미배치 (준수, 미준수)

3. 작업중 준수사항

1) 사다리 이용시 3점법 활용한다
2) 사면 발판과 안전화 준수 출입하지 않는다
3) 고소작업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작업고 2m이상)
4) 출입시는 지정된 통로를 이용한다
5) 화상을 유발한 행위 하지 않는다 (담배)
6) 無 작업 중 잡담금지 등의

❶ **(절대수칙)** 작업자는 12대 절대 수칙 중 본인 작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약
→ 작업자 스스로 작업 내용과 위험요인에 대해 숙지가 가능하게 하는 조치

❷ **(확인점검)** A~L까지 12개의 작업 시작 전에는 항상 3초간 확인 후 작업 개시
→ 작업자가 작업 직전에 위험요인을 재확인하고 제거하는 방법

참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기준!(해외기업 사례)

▸ 종사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은 핵심 안전수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

-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는 10대 핵심 위반사항(10 Golden Rules), 생명을 구하는 핵심규정(Life-Saving Rules Campaign) 등의 안전수칙을 정하고 종사자들에게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

▸ A사의 10대 핵심 위반사항(10 Golden Rules)

1. 사고 은폐(Hiding Incident)
2. 제한속도 10km/h 초과 주행(10km/h over speed driving)
3. 운전 중 통화, 문자 확인, 영상물 시청
   (Any cell phone use, text/video/call etc. while driving)
4.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Not fastening seat belt while driving)
5. 사업장 폭력(Workplace violence)
6. 허가 대상 밀폐공간 허가 없이 작업(Confined space work without permit)
7. 잠금 및 표지부착 미실시 작업(Work without Lock out/Tag out)
8. 추락 예방 조치 미실시 작업(Work without fall protection)
9. 안전작업허가 미실시 작업(Work without Safety work permit)
10. 변경관리 미실시 작업(Work without Management of change process)

※ 10대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responsible person) 및 매니저(manager) 등을 징계위원회 회부

▸ B사의 Life-Saving Rules Campaign

- 생명을 구하는 핵심 규정으로 총 9가지*에 대해 중점 관리
  * 운전, 차량 / 작업허가 / 에너지 차단 / 위험한 대기(大氣)환경 / 고소작업 / 협력사 관리 / 변경관리 / 안전 보호구 / 안전설비·장비

참고 **Tool Box Meeting(Talks) 참고 자료 및 관련 사이트**

연구논문	김정남, 「Tool Box Meeting 평가시스템 적용을 통한 효과성 향상에 관한 사례 연구」(2019.8.)
	이지수, 「근로자 주도형 TBM을 통한 건설업 안전조회 대체 방안에 관한 연구」(2017.8.)
온라인 사이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검색어: 작업 전 안전점검) → 위험작업(기인물) 안전 점검 OPS 제공
	유튜브(youtube) 안전보건공단안젤이 안전영수증 TBM(작업전 10분 안전점검 편)
	미국 OSHA 홈페이지(www.osha.net/toolbox-talks-free-downloads) * TBM 주제(topics) 다운로드 가능
	영국 HSE 홈페이지(www.hse.gov.uk) > 검색(toolbox-talks) * TBM 주제(topics), 관련 자료 등 다운로드 가능
관련자료	HSE, Leadership and worker involvement toolkit Step4 Communication skills for safety briefing and toolbox talk
	HSE, Leadership and worker involvement toolkit Step6 Communication skills for safety briefing and toolbox talk
	https://www.assp.org/news-and-articles/2018/11/08/measuring-the-effectiveness-of-toolbox-safety-training
	Guide to EFFECTIVE TOOLBOX MEETING, WSHCOUNCIL, 싱가포르

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 **목적**

○ 본 매뉴얼은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업 단계별 절차와 세부기준 및 방법을 정함

■ **사업시행 근거**

○ 국정과제 49-2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주요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지원

○ 2023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4차) (2023.06.01, 공단)

■ **적용범위**

○ 본 매뉴얼은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기술지원·평가" 및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에 참여하는 공단, 기업 및 컨설팅기관의 전반적인 수행 업무에 적용

■ **매뉴얼 시행 경과**

○ 최초시행 : 자율안전사업부-536호(2023.06.01)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시행"

○ 1차 개정 : 자율안전사업부-762호(2023.08.04)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개정"

■ **활용방안**

○ **(공단, 내부직원)**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기술지원·평가,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분야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수행

○ **(모기업)** ▲(기술지원·평가) 관련 절차 및 지표의 이해, 상생협력체계 구축 가이드 제공 ▲(매칭지원) 매칭지원 가이드(지원범위, 소요비용 단가 등) 및 사업 관련 서류(지원 계획서, 수행완료 보고서 등) 작성 시 활용 등

○ **(컨설팅기관)** 매칭지원 컨설팅 가이드(과제, 컨설팅 소요일수 및 단가 등) 및 업무수행 서류(컨설팅 보고서, 수행완료 보고서 등) 작성 시 활용 등

○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사업절차와 기준의 이해 및 사업관리 용역 업무(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관리) 시 관련 절차와 기준의 참고 등

PART. I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평가 운영 매뉴얼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평가 운영 매뉴얼

2023. 8.

목 차

1 사업개요 ····· 48

2 추진절차별 사업수행 기준 ····· 55

3 기술지원 · 평가 관련 서식 ····· 69

1.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신청서 ····· 70
2.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 73
3. 사전기술지원 보고서 ····· 86
4. 확인기술지원 보고서 ····· 100
5. 상생협력지수 평가 지표 ····· 114
6. 보안유지각서(외부전문가 위촉 시 활용) ····· 149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원·하청 안전보건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자율형 상생협력 우수모델을 확산시켜 중·소기업 협력사의 사망사고 감축 기반 마련 및 지속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2 사업대상 및 물량

□ **(사업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 등"이라 함)

□ **(사업물량)** 모기업 300개소,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75억원

3 추진절차

□ 사업참여 신청

○ **(신청·접수)** 사업공고문 지정일까지

○ **(접수처)** 모기업 소재지 관할 공단 광역본부 및 경기지역본부(이하 "광역본부 등"이라 함) 안전보건체계지원부(첨부 2 참고)

○ **(참여방법)** 사·내외 협력업체(2차 이하 협력사 포함) 및 모기업과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2차 이하 협력업체, 사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다수 참여 시 사업대상 선정 우대

○ **(접수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참여 신청서, 협력업체 등의 구성 현황, 매칭지원 컨설팅 유형 등

□ 사업대상 선정

○ **(1차 선정)**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공단 본부에 결과 보고(광역본부 등)

○ **(2차 선정)** 사업 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장을 최종 확정(공단 본부)

○ **(선정 안내)** 모기업에 사업대상 선정 및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안내(광역본부 등)

□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대상 선정 모기업은 참여 협력업체 등과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을 작성·제출(제출기한 : 광역본부 등에서 별도 안내)

○ 확정된 수행계획서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수 평가』 실시

□ 사전기술지원

○ **(기간)** 수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상)** 사업 대상 모기업(필요시 협력업체 등 포함)

○ **(기술지원)** 광역본부 등 수행, 2명 이상으로 지원반 구성, 1~2일간 실시

-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사전 검토 및 현장진단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 실태 파악 → 수행계획서 보완 및 개선대책 제시

○ **(결과처리)** 기술지원 보고서를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해당 사업장에 발송 → 모기업은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보완 및 확정

□ 이행상태 중간 모니터링(수시)

○ 수행계획서 이행상태에 대한 중간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시

□ 확인기술지원

○ **(기간)** 사전기술지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광역본부 등 및 모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술지원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대상)** 사전기술지원 수행 완료 모기업

○ **(기술지원)** 광역본부 등 수행, 2명 이상으로 지원반 구성, 1~2일간 실시

- 현장 확인을 통해 모기업에서 확정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의 항목별 이행 수준 모니터링

- 사업 전반(추진절차, 평가내용 등)에 대한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 수렴

○ **(결과처리)** 기술지원 보고서를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사업장에 발송

□ 상생협력활동 추진 실적(수행 완료보고서) 제출(모기업)

○ **(시기)** '23년 10월 13일까지(추진실적은 9월말 기준)

※ 모기업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최대 7일 이내로 제출기한 연장 가능

○ **(내용)**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측정 결과(목표 달성도)

○ **(제출처)** 관할 공단 광역본부 등 안전보건체계지원부

□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모기업)

○ **(기간)** '23년 10월 중 ~ 12월 15일까지

○ **(대상)** 사업 참여 모기업

※ 협력업체 등의 경우, 별도의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평가 실시

○ **(평가방법)** 광역본부 등 수행, 2명 이상으로 평가반 구성, 1~3일간 실시

※ 참여 협력업체수가 30개 이상인 모기업은 2일 이상 실시

- 모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노력도(600점)』와 『성과 창출도(400점)』 평가(배점 : 총 1,000점)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평가

○ (기간) ‘23년 9월～10월 중순까지

○ (대상) 사업 참여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평가방법) 광역본부 등 수행, 1명 이상, 1~3일간 실시

-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무작위 선정 →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중심으로 평가

< 평가 대상 협력업체수 >

전체 참여 협력업체 수	평가대상
30개소 이상	4개소
10개소 이상 ～ 30개소 미만	3개소
5개소 이상 ～ 10개소 미만	2개소
5개소 미만	1개소

< 우선선정 기준(안) >

① 고용부 기준에 따른 위험업종
② 2차 이하 및 사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③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무작위 선정 (가급적 모기업이 참여토록 안내)
※ 단순 용역(경비·청소·식당 등) 협력업체는 가급적 제외

○ (결과 활용)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에 반영

□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 (우수기업 후보선정) 사업참여 모기업별 상생협력지수 평가 결과(평가점수) 보고(광역본부 등 → 공단 본부)

- 지역별·업종별 등 고득점 순으로 우수기업 후보 선정

○ (우수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우수기업 선정 후보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여 최종 우수기업 선정 확정(공단 본부)

- (개최시기) ‘23년 12월중

- (선정방법) 『상생협력지수 평가 결과』+ 『상생협력 추진내용 및 성과 심의 결과』 합산

- (선정서 수여) 우수기업 선정서(장관 명의) 수여 및 인센티브(첨부 3) 확정

※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 외 사업참여 기업에도 일정 인센티브 부여

□ 사후관리

○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유효기간(2년) 중 주기적 실태점검 실시 (선정 다음 연도부터 매 1년)

첨부1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사업 추진절차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① 사업 공고, 설명회 (공단)	○ 인터넷 사이트 등 매체 공지 - 공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 모집공고 ○ 사업 대상(기업) 설명회 개최(광역권역별)
② 참여신청 (모기업)	○ 사업 참여신청 (접수 : 광역본부별(경기본부 포함)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참여신청서(협력업체별 컨설팅 과제선정) 제출
③ 사업대상선정 (공단)	○ (1차) 광역본부별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 본부 보고 ○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장 최종 확정 - 지역별 1차 선정결과를 반영하되, 특정기업의 편중,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장 조정·심의 ○ (선정 통보) 광역본부별 사업대상 선정 및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④ 수행계획 작성·제출 (모기업→공단)	○ 사업대상 선정 모기업은 컨소시엄 참여 협력업체와 상행협력활동 수행계획서수립 및 제출 -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항목」에 대한 자가진단 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작성 및 제출
⑤ 사전기술지원 (공단)	○ 모기업에서 제출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사전검토 및 현장진단을 통한 수행계획서 보완 및 개선 요구 - 수행계획서 보완 및 확정(모기업)
⑥ 이행상태 중간 모니터링 (공단)	○ 상생협력사업 수행계획서의 이행상태에 대한 중간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시
⑦ 확인기술지원 (공단)	○ 확정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의 이행수준 모니터링 실시(6~7월) - 사업 전반(추진절차, 평가내용 등)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및 추진 시 애로사항 청취
⑧ 상생협력 활동평가 (공단)	○ 참여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평가(9~10월) -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 무작위 선정 및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중심으로 평가
⑨ 추진실적 제출 (모기업)	○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측정 결과(목표 달성도)(~10.13)
⑩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 (공단)	○ 모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노력도와 성과 창출도」 평가(10~12월) - 평가지표 구성 : 총 2개 분야, 11개 항목, 16개 평가지표(총 1,000점)
⑪ 우수기업 선정 (공단)	○ 「상생협력지수 평가 결과」+「상생협력 추진내용 및 성과 심의 결과」 합산 - 심사위원회 구성(본부)을 통한 우수기업 선정후보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최종 선정(`24년 1월중)
⑫ 사후관리 (공단)	○ 우수기업에 대하여 선정유효 기간(2년) 중 주기적 실태점검(선정 다음 연도부터 매 1년)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실행수준과 이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수준 유지 여부 확인

첨부2 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등) 소재지 및 관할구역

기 관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지방노동관서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및 은평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서울서부지청
강원지역본부	춘 천 시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원주지청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서울남부·서울관악지청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및 성북구	서울동부·서울북부지청
강원동부지사	강 릉 시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태백.강릉지청, 영월출장소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부산북부지청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지청
경남지역본부	창 원 시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창원.진주.통영지청
경남동부지사	양 산 시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양산지청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광주지방노동청
전북지역본부	전 주 시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전주지청
전남지역본부	목 포 시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목포지청
제주지역본부	제 주 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과)
전북서부지사	군 산 시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 및 부안군.고창군	익산.군산지청
전남동부지사	여 수 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및 고흥군.보성군	여수지청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대구지방노동청
경북지역본부	구 미 시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	구미.영주.안동지청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대구서부지청
경북동부지사	포 항 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 및 영덕군.울릉군.울진군	포항지청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부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경기북부지사	의 정 부 시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지청
경기중부지사	부 천 시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부천지청
고양파주지사	고 양 시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고양지청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 및 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
충북지역본부	청 주 시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 및 영동군	청주지청
충남지역본부	천 안 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서산시 및 예산군.태안군	천안지청, 서산출장소
충북북부지사	충 주 시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 및 단양군.음성군	충주지청
경기지역본부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경기.평택지청
경기서부지사	안 산 시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안양.안산지청
경기동부지사	성 남 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성남지청

첨부3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우수)기업 인센티브

평가등급	평가등급별 혜택	관련근거	적용 시기/기간	적용 대상	
				모기업	협력업체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우수사업장 선정서**	-	선정 다음연도부터 2년간	○	○ (병기)
	❖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대상 미포함,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고용부 지침 (감독지침 등)	선정 다음연도부터 2년간	○	○
	❖ **기업 우수 사례 홍보지원**	-	선정 다음연도 1년간	○	포함 가능
	❖ **정부 동반성장 지수 평가 가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공정위) 동반성장종합평가	선정 다음연도 1년간	○	
	❖ **우수기업 담당자 해외시찰 기회 부여** (규모는 추후 확정)	공단지침	선정 다음연도 (`24년 이후)	○	
참여기업	❖ **업무담당자 표창(우선 선정)**	고용부·공단지침	참여 다음년도	○	○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우대**	공단지침	참여 당해 및 다음연도	×	○
	❖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 **정부포상(산재예방 유공) 우대**	고용부·공단지침	참여 다음연도	○	○
	❖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 혜택 부여**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 제조기업) -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실질 금리 인하 효과) - 보증료율 감면 : 기업별 보증료율 0.2%p 감면	-공단-기술보증기금 업무협약 (2019.5.14.)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60억→100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 기준에 따름	-공단-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업무협약 (2019.9.12.)		○	○
	❖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보증 혜택 (중소·중견 기업)**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및 보증(험)료 20% 할인	-공단-무역보험공사 업무협약 (2021.11.19.)		○	○
	❖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대상 미포함,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고용부 지침 (감독지침 등)	참여 당해	○	○

Ⅱ. 추진절차별 사업수행 기준

< 목 차 >

1.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 및 대상 선정

1. 상생협력사업 참여신청 및 접수 ····· 56
2. 사업대상 선정 ····· 58

2.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1.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59

3. 기술지원

1. 상생협력활동 사전기술지원 ····· 60
2. 이행상태 중간 모니터링(수시) ····· 61
3. 상생협력활동 확인기술지원 ····· 62

4. 상생협력지수 평가

1.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 ····· 63

5. 외부전문가 위촉

1. 외부전문가 위촉 기준 ····· 65

6. 우수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1.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 66

7. 기타

1. 기술지원결과 입력(ERP) ····· 67
2. 사업실적 관리 EXCEL 파일 양식 및 작성법 ····· 68

1-01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 및 접수

▶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

○ **(참여신청)** 모기업은 참여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 등(안전보건체계지원부)에 제출*

*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제출

○ **제출서류**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 참여기업 현황(서식1-1)
-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현황(서식1-2)

연번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개시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산재보험 증업종	근로 자수	협력형태 (모기업/ 사내/ 사외/미거래)	협력 차수	업무 내용	매칭비용지원 (하단의번호기재)		모기업지원 컨설팅과제 (하단의과제번호기재)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위험성평가인정 여부(연도)
										컨설팅 과제	(1유형) 추가 선정과제		
1	*912..*	*123..*	*OO전자 (주)*	*경기 화성시.*	*전자제품 제조업*	*000*	*모기업*	*-*	*-*				
2	*912..*	*123..*	*OO정비*	*경기 화성시.*	*정비..*	*000*	*사외*	*2차*	*정비 보수*	*①,③, ⑦번*	*①,②, ③번*	*②,⑤번*	*KOSHA -MS('22년)*
3			*OO포장*	*..*			*사내*	*1차*	*포장 운반*	*①,③, ⑦번*	*①,②, ③번*	*②,⑤번*	*위험성평가 인정('22년)*
…			*..*				*미거래 중소업체*						

- **(연번)** 모기업, 협력업체 구분 없이 순서대로 입력
- **(사업장관리번호)** 11자리 숫자(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 0)

☞ 조회방법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사업개시번호)** 11자리 숫자

☞ 별도 사업개시가 없는 경우에는 "00000000000" 기재

- **(사업장명)** 별도의 사업개시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현장명을 추가 기재
- **(산재보험중업종(표준산업분류업종))** 국세청(홈텍스) 등의 조회 기준으로 작성

- **(근로자수)** 산재보험 일괄가입 사업장은 해당 현장의 근로자 수 기재
- **(협력형태)** 모기업 / 사내 / 사외 / 지역 기재
- **(협력차수)** 1차 / 2차 / 지역 기재
- **(업무내용)**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담당업무 간략히 기재
- **(매칭비용지원 컨설팅과제)** 공단비용지원 또는 모기업비용지원을 받아서 컨설팅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컨설팅과제(1번~7번)

《 컨설팅 과제 》

- [기본과제] ①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실행력 향상
- [자율과제] ② 3대사고유형·8대위험요인 발굴 ③ 폭발장소 위험성평가 및 예방 ④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⑤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⑥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⑦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각 과제별 포함] ⑧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 **(1유형 추가선정과제-안전보건 활동과제)** : 1유형의 추가 선정과제(1번~6번)

《 1유형 추가선정 과제 》

① 안전보건 세미나 ② 안전보건 캠페인 ③ 안전보건 물품 ④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⑤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 ⑥ 기타(상기 과제 외)

- **(모기업지원 컨설팅과제)** 별도의 비용지원 없이 모기업의 인적지원 및 기술력지원 등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컨설팅과제(1번~7번)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위험성평가 인정 여부)** 해당 시 위험성평가(0000년), KOSHA-MS(0000년) 방식으로 기재

▶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공단 업무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제출대상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 접수처리

▶ 사업대상 선정 기준

○ **(1차선정)** 선정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1차 선정 사업장 현황을 작성·제출(광역본부 등 → 본부)

* 모기업(협력업체) 업종, 참여협력업체 수, 매칭 참여유형, 컨설팅과제 수, 지역특성 등

○ **(2차선정)** 광역본부 등에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장 최종 확정(본부)

- 특정기업의 편중,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장 조정·심의

《 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

- [위원회 구성] 위원은 ① 당연직 위원과, ② 위촉직 위원으로 9명 이내로 구성
  ① 당연직 위원 : 산업안전실장(위원장), 고용부 소관부서 업무 담당자
  ② 위촉직 위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17조 준용
- [회의의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기타] 회의 운영 및 위원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18조, 제19조 준용

▶ 선정 공고 및 안내

○ **(선정공고)** 선정결과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광역본부 등에 선정 사업장 명단 송부(본부)

○ **(선정안내)** 상생협력사업 신청 사업장에 선정여부 안내(광역본부 등)

- 선정 사업장에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및 매칭지원 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작성 방법

○ 모기업은 공단에서 제공한 양식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서식2) 작성

《 수행계획서 양식 》

A.1 안전보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및 이익 공유

1. 상생협력활동 지원 업무 전담조직 설치·운영

□ 자기진단

평 가 내 용	점검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조직 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부서, 팀 등 포함, 이하 같음)이 구성되어 있음		✓	
○ 조직 내 협력업체 등에 대한 「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음	✓		
○ 협력업체 등에 대한 「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이나 업무 담당자는 없으나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 등을 평가 또는 지원하는 조직(구매부서 등)이 있음			
○ 협력업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구성되지 않고 해당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음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조직 설치 ○ (예시)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업무 담당자 배치	○ (예시)협력업체 지원 조직 설치 ○ (예시)지원 업무 담당자 배치 (1명)

- **(점검결과)** 모기업 상황에 대한 자가진단 후 해당되는 내용에 표시
- **(개선계획 채택여부)** 평가내용에 대한 자가진단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계획 채택여부(반영 또는 미반영)를 결정
- **(개선계획)** 개선계획 채택여부를 "반영"으로 결정한 경우, 자가진단 평가내용에 대한 개선계획을 작성
- **(성과목표(KPI) 설정)** 개선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급적 정량화하여 표시)를 설정하여 작성

▶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제출

○ 모기업은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공단 광역본부 등에 제출(방문, 우편 또는 E-mail)

- 수행계획서 제출일은 광역본부 등에서 자체적으로 안내

▶ 수행계획서 접수

○ 모기업에서 제출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광역본부 등)

▶ 사전기술지원 실시

○ **(지원반)** 공단 광역본부 등에서 2명 이상으로 구성(1~2일간 실시)

※ 참여 협력업체수가 다수(30개 이상)인 경우 등 기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3일 이상 실시 가능

○ **(사전기술지원)** 수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

※ 모기업과 사전기술지원 일정 협의 후 방문

《 사전 기술지원 수행사항 》

①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지표』 내용 설명 및 평가절차·방법 안내

②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보완 및 개선 요구

- 모기업에서 제출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사전 검토

※ 항목별 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확인

- 현장진단(실태파악)을 통해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의 보완 및 개선사항 파악
- 수행계획과 연계하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참여 안내

③ 참여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점 지원

-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지표』 항목 중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강화 지원"의 개선계획 및 성과목표 설정의 적정성 중점 지원

○ **(보고서 작성)** 수행계획서 사전검토 및 현장진단을 통해 상생협력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계획서 보완 및 개선대책 제시

- 사전기술지원 실시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보고서(서식3) 발송(우편 또는 E-mail 등)
- 모기업은 기술지원 보고서 확인 후 수행계획서 보완 및 확정

3-02 이행상태 중간 모니터링(수시)

▶ **이행상태 중간 모니터링 실시**

○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이행상태에 대한 중간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시

- 사전(확인)기술지원의 이행이 상당히 미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모기업에서 추가 기술지원 등의 사유로 별도 요청한 경우
- 기타 중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등

○ 중간 모니터링 실시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보고서(서식3) 발송(우편 또는 E-mail 등)

※ 보고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3-03 상생협력활동 확인기술지원

▶ **확인기술지원 실시**

○ **(지원반)** 공단 광역본부 등에서 2명 이상으로 구성(1~2일간 실시)

○ **(확인기술지원)** 사전기술지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광역본부 등)

※ 광역본부 등 및 모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술지원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방법)** 확정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의 이행수준에 대한 확인 실시

- 수행계획의 추진이 미흡한 항목에 대한 강평 및 확인기술지원 결과를 경영진*에 통보하여 추진 활성화 독려

* 각 지사/지점/사업장(공장)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 공장장, 지사장, 지점장 등)

- 사업 전반(추진절차, 평가내용 등)에 대한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 수렴
- 확인기술지원 실시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보고서(서식4) 발송(우편 또는 E-mail 등)

▶ 상생협력활동 추진 실적(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 상생협력사업 참여 모기업에 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안내(광역본부 등, 9월 이전 실시)

※ 모기업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최대 7일 이내로 제출기한 연장 가능

- 제출처 : 공단 광역본부 등 안전보건체계지원부(방문, 우편 또는 E-mail)
-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측정 결과(목표 달성도)

▶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

○ 모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지수 평가 실시(서식5)(10월 중 ~ 12월 15일까지)

- 2명 이상으로 평가반 구성(1~3일간 실시)

※ 참여 협력업체수가 30개 이상인 모기업은 2일 이상 실시

《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지표 》

□ 평가지표 구성 : 총 2개 분야, 13개 항목, 18개 평가지표 (배점 : 총 1,000점)

평가분야	상생협력 지원 노력도(400점)	상생협력 성과 창출(600점)
평가항목	△ 안전보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및 이익 공유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강화 지원 △ 협력업체 작업중지권 보장 및 활성화 노력 △ 협력업체『안전보건에 관한 비용』확보 노력 △ 지역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 활동(가점) △ 기타안전보건 상생활동(가점)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 상생협력활동 추진 실적 △ 매칭지원 추진 실적 △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 정부사업 참여 및 성과(가점) △ 컨설팅 과제 추진 실적(감점) △ 재해발생 수준(감점)

○ 평가반은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에 대한 강평 실시(경영층 포함)

- 평가 총평, 우수사항 및 미흡사항(개선사항 포함), 향후 절차(우수기업 선정, 사후관리 등) 등 안내

※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 후 별도 보고서 송부는 불필요

▶ 참여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평가

○ 참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평가 실시(광역본부 등, 9월~10월)

- 1명 이상으로 평가반 구성(1~3일간 실시)
-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협력업체를 무작위로 선정

※ 해당 모기업에 평가대상 협력업체 명단 통보

《 평가 대상 협력업체수 》

전체 참여 협력업체 수	평가대상(수)
30개소 이상	4개소
10개소 이상 ~ 30개소 미만	3개소
5개소 이상 ~ 10개소 미만	2개소
5개소 미만	1개소

《 우선선정 기준 》

① 고용부 기준에 따른 위험업종
② 2차 이하 및 사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③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무작위 선정
※ 위험성평가 기 인정사업장은 가급적 제외
※ 단순 용역(경비·청소·식당 등) 협력업체는 가급적 제외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수준평가 실시

○ 평가 결과는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에 반영

※ 평가기준 :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지표 내 『 II. 안전보건 상생협력 성과창출 - 7. 평가 및 개선 - B.1 참여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참조

5-01 외부전문가 위촉

▶ 외부전문가 위촉 기준

○ 공단 광역본부 등은 기술지원(사전, 중간, 확인) 및 상생협력지수 평가 시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위촉하여 활용

- 단, 기술지원을 실시한 공단 직원 1명은 반드시 포함
- 외부전문가로 위촉된 자는 보안유지각서(서식6) 작성 후 참여

《 외부전문가 자격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수수료 기타실비 징수규정 시행규칙』 [별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화공·전기·금속·안전·보건·건축·토목·디자인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⑥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외부전문가 위촉 제외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외부전문가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거나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② 위촉한 외부전문가가 사업장과 공단 내부지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③ 그 밖에 사업수행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지원 및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사 등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 여비 및 수당(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지급

6-01 우수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 우수기업 후보 선정

○ 상생협력지수 평가 결과(사업장별 평가 점수) 보고(광역본부 등 → 공단 본부)

- 지역별·업종별 고득점 순으로 우수기업 후보 선정

▶ 우수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우수기업 선정 후보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여 최종 우수기업 선정 확정(공단 본부, 12월 중)

※ 우수기업 선정 기준 및 비율, 결격 사유(당해연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등은 고용부와 협의 후 확정·시행

- 우수기업은 『상생협력지수 평가 결과』 + 『상생협력 추진 실적 심의 결과*』를 합산하여 선정

* 상생협력활동 추진 실적(수행 완료보고서)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우수기업 선정서(장관 명의) 수여 및 인센티브 확정(고용노동부)

※ 우수기업 외 일반 참여기업에도 일정 인센티브 부여

▶ 우수기업 사후관리

○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유효기간(2년) 중 주기적 실태점검 실시(년 1회 이상)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실행수준과 이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 수준 유지 여부 등을 확인

※ "사후관리 운영규정"은 하반기 중 별도 수립 시행 예정

7-01 기술지원결과 입력(ERP)

▶ 업무처리절차

○ 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후 내부 전산(ERP)에 결과 입력

- 통합정보 ⇨ 기관/연도별사업관리 ⇨ 사업수행등록(ERP외) ⇨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사전(또는 확인)기술지원

▶ 입력방법

○ 사업장관리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신규」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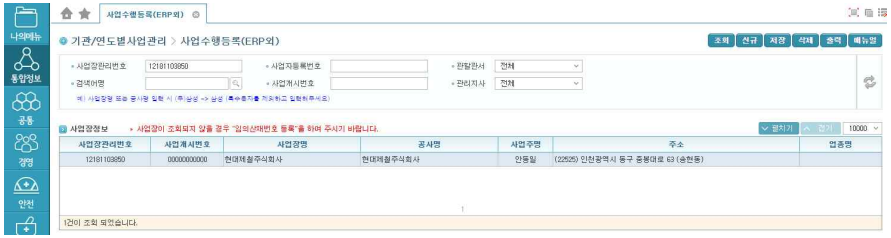

○ 사업수행 상세정보 입력(보고서 첨부 포함) 후 「저장」 버튼 클릭

7-02 사업실적 관리 EXCEL 파일 양식 및 작성법

▶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평가

○ 사업장별 기술지원·평가 관련 실적 입력·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일자	사전기술 지원일자	이행상태중간 모니터링일자	확인기술 지원일자	평가일자		
				모기업 실시일	협력업체	
					협력업체명	실시일
05월 08일	05월 31일		07월 25일	10월 16일	㈜가나다	09월 27일
					㈜마바사	09월 27일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 사업장별 매칭지원 실적 입력·관리

매칭 컨설팅 참여유형	매칭비용지원 컨설팅과제 (과제번호 기재)	1유형 추가선정과제 (과제번호 기재)	모기업지원 컨설팅과제 (과제번호 기재)	과제 건수	컨설팅 결정금액-총계(만원)	컨설팅 결정금액-공단지원금(만원)	안전보건 활동과제 금액(만원)	컨설팅 확정금액-총계(만원)	컨설팅 확정금액-공단 지원금(만원)	안전보건 활동과제 확정금액-총계(만원)	안전보건 활동과제 확정금액-공단 지원금(만원)
2유형	1, 3	1, 2, 3		10	4200	2100	1500	4200	2100	1300	650

- **(과제 건수)** 매칭비용 지원 및 미지원(모기업지원), 1유형 추가선정 과제의 총 건수 입력
- **(컨설팅 결정금액 - 총계)** 컨설팅 소요비용 중 지원금액(공단+모기업) 입력
- **(컨설팅 결정금액 - 공단 지원금)** 컨설팅 소요비용 중 공단 지원금액 입력
- **(안전보건 활동과제 금액)** 1유형 추가선정과제 추정금액(총액) 입력
- **(컨설팅 확정금액 - 총계)** 컨설팅 과제의 확정 지원금액(공단+모기업) 입력
- **(컨설팅 확정금액 - 공단 지원금)** 컨설팅 과제의 공단 지원 확정금액 입력
- **(안전보건 활동과제 확정금액 - 총계)** 안전보건 활동과제의 확정 지원금액(공단+모기업) 입력
- **(안전보건 활동과제 확정금액 - 공단 지원금)** 안전보건 활동과제의 공단 지원 확정금액 입력

컨설팅기관	컨설팅기관 등급	실태컨설팅 수행일자	확인컨설팅 수행일자	컨설턴트 등급	교육			
					협력업체명	컨설팅 과제번호	교육일자	교육시간
㈜안전	S	06월 09일	08월 10일	고급	㈜가나다	1	07월 19일	2
					㈜가나다	3	07월 19일	2

- **(컨설팅기관)** 매칭지원 컨설팅 수행기관명 입력
- **(컨설팅기관 등급)** 공단에서 전년도에 실시한 민간기관 평가등급 입력
- **(교육)** 협력업체의 과제별 교육 시간 입력

Ⅲ.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 평가 관련 서식

[서식 1]『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참여신청서

[서식 2]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서식 3] 사전기술지원 보고서

[서식 4] 확인기술지원 보고서

[서식 5] 상생협력지수 평가 지표

[서식 6] 보안유지각서(외부전문가 위촉 시 활용)

[서식 1]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AX)	-　- (　-　-　)
주요 생산품 (매출액)			근로자수(모기업)	명
소재지	□□□□□			
상생협력사업 담당자	부서명 (직책)	(　　)	성명	
	전화번호 (Fax)	-　- (　-　-　)	휴대폰번호 (e-mail)	-　- (　　)
첨부서류	1. 참여기업 현황 1부. 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사업장 현황 1부.			

우리 사업장은 2023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귀 안전보건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아래의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의 개인정보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추진 과정의 각종 정보 및 일정의 통지, 사업장 지원, 혜택의 제공 등에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사업장식별 정보** : 사업장명, 사업자관리번호, 소재지 등

▶ **개인정보 활용목적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과 관련한 SMS를 이용한 정보 및 안내 등 동 사업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활용

성명(대표자 본인) :　　서명

상생협력 담당자 :　　서명

[서식 1-1]

참여기업 현황(총괄)

■ 일반현황

모기업 현황	사업장명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산재보험 중업종명	
협력업체 현황	총 계 : _____개사, _____명			
	사내 협력업체 : ___개사, ___명		2차 이하 협력업체 : _____개사, _____명	
	사외 협력업체 : ___개사, ___명		지역 중소기업 : _____개사, _____명	
매칭 비용 지원	컨설팅과제	협력업체 및 선정 과제 수	총 _____개사, 총 _____개 과제	
		참여 유형	□ 1유형 □ 2유형 □ 3유형	
	(1유형)추가 선정과제	총 _____개사, 총 _____개 과제		
모기업 지원 컨설팅* (매칭비용 미지원)		협력업체 및 선정 과제 수	총 _____개사, 총 _____개 과제	

* 모기업 지원 컨설팅 : 정부:모기업의 50:50 컨설팅 비용지원 없이 모기업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임

참여 협력업체 사업주 가나다(주) 대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라마바(주) 대표 성춘향 (서명 또는 인)
사아자(주) 대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
·
·
·

[서식 1-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사업장 현황

※ 엑셀 양식으로 작성

연번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개시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산재보험 중업종	근로자수	협력형태 (모기업/사내/사외/미거래)	협력차수	업무내용	매칭비용지원 (하단의번호기재)		모기업지원 컨설팅과제 (하단의과제번호기재)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위험성평가인정 여부(연도)
										컨설팅 과제	(1유형) 추가 선정과제		
1	912..	123..	OO전자(주)	경기 화성시.	전자제품 제조업	000	모기업	-	-				
2	912..	123..	OO정비	경기 화성시.	정비..	000	사외	2차	정비 보수	①,③,⑦번	①,②,③번	②,⑤번	KOSHA -MS('22년)
3			OO포장	..			사내	1차	포장 운반	①,③,⑦번	①,②,③번	②,⑤번	위험성평가 인정('22년)
…			..				미거래 중소업체						

《 컨설팅 과제 》

- [기본과제] ①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실행력 향상
- [자율과제] ② 3대사고유형·8대위험요인 발굴 ③ 폭발장소 위험성평가 및 예방 ④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⑤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⑥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⑦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각 과제별 포함]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 1유형 추가 선정과제 》

① 안전보건 세미나 ② 안전보건 캠페인 ③ 안전보건 물품 ④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⑤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 ⑥ 기타(상기 과제 외)

[서식 2]

2023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2023. . .

모기업명 : **대표자 :**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수행계획서

A.1 안전보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및 이익 공유

1. 상생협력활동 지원 업무 전담조직 설치·운영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조직 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부서, 팀 등 포함, 이하 같음)이 구성되어 있음		V	
○ 조직 내 협력업체 등에 대한「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음	V		
○ 협력업체 등에 대한「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이나 업무 담당자는 없으나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 등을 평가 또는 지원하는 조직(구매부서 등)이 있음			
○ 협력업체, 중소기업 등에 대한「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구성되지 않고 해당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음			

【참고사항】	
【평가기준】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이 본사에만 구성되어 있고 해당 본사 조직원이 각 지사/지점/사업장(공장)의 상생협력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인정 가능(사업장 내 담당 인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 외 환경, 소방업무 등을 병행하는 경우 전담조직으로 미인정 * **상생협력활동** :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활동 등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	【확인내용】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 모기업의 조직도, 업무분장표, 지침 또는 관련 내부문서 등을 반드시 확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 등의 평가 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또는 내부 문서 등을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조직 설치 ○ (예시)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업무 담당자 배치	○ (예시)협력업체 지원 조직 설치 ○ (예시)지원 업무 담당자 배치 (1명)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2. 협력업체 등 안전보건 투자·지원 향상 노력도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전년 대비 편성 및 집행 예산의 규모가 **10%이상 증가**하였음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전년 대비 편성 및 집행 예산 규모가 **동일한 수준(±10%이내)**임		∨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편성 및 집행 예산의 규모가 **10%이상 감소**하였음	∨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음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평가 연도에 수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평가기간 전까지 집행 내역이 있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 ○ 예산편성 및 집행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감은 『전체 안전보건 관련 예산』 대비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 예산』비율의 증감 또는 지원 금액 단위의 비율 증감(ex. 1억 → 1억5천: 50%증가)으로 평가 ○ 예산 편성증감률과 집행증감률이 상이할 경우 집행증감률로 평가	○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서류* 확인 * 연간 지원사업계획, 투자계획 등 기업 내부 결재 문서 등 ○ 수시 편성 예산에 대한 관련 규정, 근거 또는 평가 연도 기준 집행한 내역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시 - 예산항목 : 1. 협력업체 안전보호구 구입, 2. 협력업체 컨설팅 지원 3.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등	○ (예시)안전보건예산 수립(1식) ○ (예시)당해연도 예산 집행율 (80%이상)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3.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른 이익 공유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근거(규정·지침 또는 추진계획 등)를 마련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음 ※ 평가시 평가년도 기준 운영 실적 건당 점수 배점		∨	
○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근거(규정·지침 또는 추진계획 등)를 마련하고 있음 ※ 평가시 이익 공유(인센티브 제공) 근거 건당 점수 배점	∨		
○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근거(규정·지침 또는 추진계획 등)는 없으나 이익을 공유한 실적이 있음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협력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활동성과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각종 지원 제도를 평가 ※「상생협력활동」참여 및 결과에 따른 이익공유 (인센티브 제공) 사례 예시 ① 안전보건관련 상생펀드운영 ② 수급업체 선정·평가 시 우대 ③ 납품단가연동제 ④ 성과 우수 임직원(협력업체) 포상 등 ⑤ 협력업체 납품물량 조정 ⑥ 협력업체 현금·현물 지원 등	○ 해당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적격수급업체 선정·평가 기준, 계약지침 등) 및 내부품의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운영실적은 평가 연도의 실제 이익공유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내부 규정 수립 - (제도안) 1. 수급업체 선정 시 우대(우대가점 등) 2. 참여 직원 성과 우수직원 포상(협력업체 포함) 3. 협력업체 납품물량 조정 (참여 시 전년대비 최대단가 최대 0.5% 상향조정)	○ (예시) 협력업체 이익공유 제도 수립(1식)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4.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의견청취 및 참여 지원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향상을 위해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규정, 지침, 계획 등 포함)를 마련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음 ※ 평가시 운영 건수 당 배점		∨	
○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향상을 위해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규정, 지침, 계획 등 포함)를 마련하고 있음 ※ 평가시 제도 건수 당 배점	∨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안전보건 의사소통 및 참여 활성화 지원 제도
① 종사자 접근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정보시스템(앱 또는 웹) 제공, 사용
② 안전행동관찰 제도 운영
③ 우수제안, 적극적 참여시 포상 등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④ 모기업 및 협력업체 종사자 안전보건 합동 캠페인 등 정기 행사(분기 1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
⑤ 아차사고사례 공유제도
⑥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도급 관련으로 모기업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점검 등)은 제외

【확인내용】
○ 해당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지침 및 내부품의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운영실적은 평가 연도의 실제 지원·제공 여부를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 소통 활성화 제도 수립 (추진계획) - (제도안) 1. 온라인 전산망 수립 2. 안전행동관찰 제도 운영 3. 우수제안 채택시 인센티브 부여(포인트 등) 4. 안전캠페인 실시(분기별 1회) ○ (예시)제도수립에 따른 협력업체 안내 실시(3회)	○ (예시) 안전보건 소통 활성화 제도 수립 (추진계획, 1식) ○ (예시) 안전캠페인 실행율(80%이상)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A.2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강화 지원

5. 협력업체 등 안전보건 수준향상 지원(컨설팅 분야)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 특성 및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평가시 컨설팅 분야 당 배점(평가 연도 기준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미흡	∨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분야*
* 모기업의 담당자가 직접 협력업체를 지원한 실적과, 모기업이 외부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협력업체를 지원한 실적 모두를 포함
①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컨설팅과제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 획득지원
③ 위험성평가 실시 또는 인정 지원
④ 직업 건강증진 프로그램(근골격계질환예방, 뇌심혈관질환예방, 직무스트레스 등)
⑤ 종사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
⑥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점검·발굴
⑦ 기타 분야

【확인내용】
○ 컨설팅 지원 계획서,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서 등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참여 협력업체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항목 추가(강화) - 1. 위험성평가 수준향상 컨설팅, 2.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 (예시)협력업체 컨설팅지원율 - 지원율 50%이상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6. 협력업체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활동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 등의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적인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평가시 개선지원 분야 당 배점(평가 연도 기준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미흡	V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활동 분야 (소요 비용지원, 물품지원 등 현금·현물성 지원)

① 유해 · 위험요인 개선 비용(사내 제외)

② 근로자 건강검진 비용

③ 작업환경 측정비용(사내 제외)

④ 안전보건교육 및 교재 비용

⑤ 안전보건관리 인건비

⑥ 안전물품·보호구 구입 비용

⑦ 전산프로그램 개발(안전관련 프로그램 공유 포함) 비용

⑧ 안전신문, 안전관련 정보지, 도서 등 정기간행물 구입 비용

⑨ 기타

※ 분야별 총 소요비용 100만원 이상만 실적으로 인정(개소 무관)

【확인내용】

○ 개선 지원활동 계획서, 개선지원 결과보고서 등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참여 협력업체 유해위험요인 지원제도 수립(1식) - 지원활동분야 : OOO, OOO, OOO ○ (예시) 참여 협력업체 지원율 80% 이상	○ (예시)지원제도 수립(1식) ○ (예시)협력업체 지원율 (80% 이상)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A.3 협력업체 작업중지권 보장 및 활성화 노력

7.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운영

□ 자가진단

<Ⓐ-1> 작업중지권 지원제도 운영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등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제도나 절차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음		V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등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제도나 절차가 있으나, 운영 실적이 없음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등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제도나 절차가 없음	V		

<Ⓐ-2> 협력업체 작업중지 요청 대비 개선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작업중지 요청 대비 이행률(50% 이상)	미흡	V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작업중지권 지원 제도 사례

① 모바일 기기활용 신고/접수 채널 확보

② 작업중지에 따른 협력업체 손실 보상

③ 신고자 포상 제도 등

【확인내용】

○ 협력업체 작업중지권 지원 제도 관련 근거(규정·지침 및 내부품의서, 활용 전산시스템 등) 확인

○ 지원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내역 확인(계약서류 및 TBM활동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작업중지권 홍보 및 참여 안내 실시 여부 확인)

○ 협력업체 작업중지 요청 및 개선 조치 관련 증빙자료(신고/접수 서류, 개선 조치 내역 및 활동 증빙서류(사진 등))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작업장내 작업중지권 제도(소속 종사자 포함) 수립(1식) ○ (예시) 지원제도 활성화 운영(1식) - 1. 모바일 어플, 2. 손실보상제도 운영, 3. 포상제도 ○ (예시) 작업중지권 조치율 모니터링 (80%이상)	○ (예시)제도수립(1시) ○ (예시)개선조치율 (80%이상)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A.4 협력업체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확보 노력

8. 도급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편성기준 운영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편성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비용 또는 요율 등이 전년도(직전 계약 등) 대비 확대·상향(5% 이상) 되었음		∨	
○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편성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 상기 내용의 편성기준 및 절차가 없음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시설비, 보호구 구입 비용 등) - 단, 산안법 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은 제외 (예) 도급금액의 10.0%에 대한 비용은 안전보건 비용으로 견적금액에 포함하여 계약 ○ 도급계약서 내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편성 비율 또는 금액이 확대되었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등 관련내용 확인 후 배점 적용	○ 도급계약서, 적격수급업체 선정 내부 평가지침, 규정 등 근거자료 확인 실시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도급계약시 편성기준절차에 "안전보건비용 포함"수립(1식) ○ (예시) 안전보건비용 예산 확대(전년대비 5% 상향, 수립 또는 확보기준)	○ (예시) 도급계약 기준절차 수립(1식)-안전비용 포함 ○ (예시) 예산확보율 증가 (전년대비, 5%)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A.5 지역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 활동

9. 2~3차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 활동(가점분야)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2~3차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규정·지침 또는 활동 계획 등)를 마련하고 운영 중임 ※ 평가시 제도 건당 배점(평가년도 기준 지원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미흡	∨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2~3차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제도 ① 안전보건 분야 컨설팅 지원 * A.2 Ⓐ 협력업체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분야 ②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 A.2 Ⓑ 협력업체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활동 분야 ③ 공익 재단·단체를 통한 지원 < 사례 > - 국내 중소기업 부품제조업 등 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강화 지원 (○○안전상생재단) - 지역사회 근로자 직업성질환 예방 등 지원(○○○건강센터) ④ 기타 자체 추진 지원 활동	○ 지원활동 계획서, 지원 결과보고서 등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지역 중소기업 등(2-3차 협력업체 포함) 안전보건 지원제도 수립(1식)	○ (예시) 지원제도 수립 (1식) 및 담당직원 배치(1명)

□ 공단검토결과(개선의견)

A.6 기타 안전보건 상생활동

10. 안전문화실천추진단, Safety Contact 제도 등 안전보건 상생활동(가점분야)

□ 자가진단

<Ⓐ-1>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지역별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업종별 협의회 등을 통해 가입되어 있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한 실적이 있음	미흡	V	

<Ⓐ-2> Safety Contact 제도 운영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 등과 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미흡	V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 범국가적 안전문화 확산 활동 전개를 위한 전국 39개 지역 단위(지청)별 조직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예시: ① 안전문화 확산 합동 캠페인 ② 옥외광고(통근버스 등) ③ 홈페이지 온라인 배너 ④ 지역별 행사에 협업 홍보 ○ Safety Contact 제도 : 기업간 Mentor & Mentee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 노하우 제공 및 합동 현장 모니터링 등 실시	○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고 증빙자료 등 확인 ○ 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내부 규정, 문서, 활동실적 등을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지역 중소기업 등(2-3차 협력업체 포함) 안전보건 지원제도 수립(1식)	○ (예시) 지원제도 수립 (1식) 및 담당직원 배치(1명)

□ 공단검토결과(개선의견)

■ 모기업 자율 선정과제

11. 모기업 자율 선정과제

□ 자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조직 ○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 협력업체의 안전보
○ 협력업체의 안전보

■ 모기업 지원 컨설팅(매칭비용 미지원) 과제

12. 모기업 지원 컨설팅(매칭비용 미지원) 과제

□ 컨설팅과제(매칭비용 미지원) 지원일정

단 계	과제내용	수행일정계획			비고
		실태컨설팅	교육 (필요시)	확인컨설팅	
지원기업1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23. 4. 5 ~ 4. 10*	*'23. 5. 2 ~ 5. 3*	*'23. 5. 12 ~ 5. 14*	
지원기업1	*3대사고유형·8대위험요인*	*'23. 4. 11 ~ 4. 16*	*'23. 5. 7 ~ 5. 8*	*'23. 5. 15 ~ 5. 18*	
지원기업2					
지원기업3					
지원기업4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
○

[서식 3]

2023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사전기술지원 보고서

2023.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사전기술지원 보고서(갑지)

1. 사업장 현황(모기업)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모기업 참여자			
2 기술지원 현황					
지원일자		기술지원 담당자			

3. 사전기술지원 내용

□ 사전기술지원 내용(요약)

○ *당 모기업은 2021년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사업장으로 당시에는 사내 협력업체 00개사와 함께 참여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으로써*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사전기술지원 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기타 특이사항

○ *예시) (사망사고 현황) 모기업 00건, 협력업체 00건*

- 사고 주요내용

○ *예시) (중상해 사고재해자 현황) 모기업 00건, 협력업체 00건*

- 특이사항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수행계획서

A.1 안전보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및 이익 공유

1. 상생협력활동 지원 업무 전담조직 설치·운영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조직 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부서, 팀 등 포함, 이하 같음)이 구성되어 있음		V	
○ 조직 내 협력업체 등에 대한「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음	V		
○ 협력업체 등에 대한「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이나 업무 담당자는 없으나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 등을 평가 또는 지원하는 조직(구매부서 등)이 있음			
○ 협력업체, 중소기업 등에 대한「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구성되지 않고 해당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음			

【참고사항】	
【평가기준】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이 본사에만 구성되어 있고 해당 본사 조직원이 각 지사/지점/사업장(공장)의 상생협력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인정 가능(사업장 내 담당 인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 외 환경, 소방업무 등을 병행하는 경우 전담조직으로 미인정 * **상생협력활동** :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활동 등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	【확인내용】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 모기업의 조직도, 업무분장표, 지침 또는 관련 내부문서 등을 반드시 확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 등의 평가 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또는 내부문서 등을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조직 설치 ○ (예시)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업무 담당자 배치	○ (예시)협력업체 지원 조직 설치 ○ (예시)지원 업무 담당자 배치 (1명)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2. 협력업체 등 안전보건 투자·지원 향상 노력도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전년 대비 편성 및 집행 예산의 규모가 **10%이상 증가**하였음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전년 대비 편성 및 집행 예산 규모가 **동일한 수준(±10%이내)**임		∨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편성 및 집행 예산의 규모가 **10%이상 감소**하였음	∨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음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평가 연도에 수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평가기간 전까지 집행 내역이 있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 ○ 예산편성 및 집행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감은 『전체 안전보건 관련 예산』 대비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 예산』비율의 증감 또는 지원 금액 단위의 비율 증감(ex. 1억 → 1억5천: 50%증가)으로 평가 ○ 예산 편성증감률과 집행증감률이 상이할 경우 집행증감률로 평가	○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서류* 확인 * 연간 지원사업계획, 투자계획 등 기업 내부 결재 문서 등 ○ 수시 편성 예산에 대한 관련 규정, 근거 또는 평가 연도 기준 집행한 내역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시 - 예산항목 : 1. 협력업체 안전보호구 구입, 2. 협력업체 컨설팅 지원 3.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등	○ (예시)안전보건예산 수립(1식) ○ (예시)당해연도 예산 집행율 (80%이상)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3.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른 이익 공유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근거(규정·지침 또는 추진계획 등)를 마련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음 ※ 평가시 평가년도 기준 운영 실적 건당 점수 배점		∨	
○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근거(규정·지침 또는 추진계획 등)를 마련하고 있음 ※ 평가시 이익 공유(인센티브 제공) 근거 건당 점수 배점	∨		
○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근거(규정·지침 또는 추진계획 등)는 없으나 이익을 공유한 실적이 있음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협력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활동성과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각종 지원 제도를 평가 ※「상생협력활동」참여 및 결과에 따른 이익공유(인센티브 제공) 사례 예시 ① 안전보건관련 상생펀드운영 ② 수급업체 선정·평가 시 우대 ③ 납품단가연동제 ④ 성과 우수 임직원(협력업체) 포상 등 ⑤ 협력업체 납품물량 조정 ⑥ 협력업체 현금·현물 지원 등	○ 해당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적격수급업체 선정·평가 기준, 계약지침 등) 및 내부품의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운영실적은 평가 연도의 실제 이익공유(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내부 규정 수립 - (제도안) 1. 수급업체 선정 시 우대(우대가점 등) 2. 참여 직원 성과 우수직원 포상(협력업체 포함) 3. 협력업체 납품물량 조정 (참여 시 전년대비 최대단가 최대 0.5% 상향조정)	○ (예시) 협력업체 이익공유 제도 수립(1식)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4.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의견청취 및 참여 지원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향상을 위해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규정, 지침, 계획 등 포함)를 마련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음 ※ 평가시 운영 건수 당 배점		∨	
○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향상을 위해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규정, 지침, 계획 등 포함)를 마련하고 있음 ※ 평가시 제도 건수 당 배점	∨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안전보건 의사소통 및 참여 활성화 지원 제도
① 종사자 접근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정보시스템(앱 또는 웹) 제공, 사용
② 안전행동관찰 제도 운영
③ 우수제안, 적극적 참여시 포상 등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④ 모기업 및 협력업체 종사자 안전보건 합동 캠페인 등 정기 행사(분기 1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
⑤ 아차사고사례 공유제도
⑥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도급 관련으로 모기업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점검 등)은 제외

【확인내용】
○ 해당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지침 및 내부품의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운영실적은 평가 연도의 실제 지원·제공 여부를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 소통 활성화 제도 수립 (추진계획) - (제도안) 1. 온라인 전산망 수립 2. 안전행동관찰 제도 운영 3. 우수제안 채택시 인센티브 부여(포인트 등) 4. 안전캠페인 실시(분기별 1회) ○ (예시)제도수립에 따른 협력업체 안내 실시(3회)	○ (예시) 안전보건 소통 활성화 제도 수립 (추진계획, 1식) ○ (예시) 안전캠페인 실행율(80%이상)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A.2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강화 지원

5. 협력업체 등 안전보건 수준향상 지원(컨설팅 분야)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 특성 및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평가시 컨설팅 분야 당 배점(평가 연도 기준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미흡	∨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분야*
* 모기업의 담당자가 직접 협력업체를 지원한 실적과, 모기업이 외부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협력업체를 지원한 실적 모두를 포함
①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컨설팅과제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 획득지원
③ 위험성평가 실시 또는 인정 지원
④ 직업 건강증진 프로그램(근골격계질환예방, 뇌심혈관질환예방, 직무스트레스 등)
⑤ 종사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
⑥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점검·발굴
⑦ 기타 분야

【확인내용】
○ 컨설팅 지원 계획서,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서 등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참여 협력업체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항목 추가(강화) - 1. 위험성평가 수준향상 컨설팅, 2.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 (예시)협력업체 컨설팅지원율 - 지원율 50%이상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6. 협력업체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활동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 등의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적인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평가시 개선지원 분야 당 배점(평가 연도 기준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미흡	∨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활동 분야 (소요 비용지원, 물품지원 등 현금·현물성 지원)

① 유해 · 위험요인 개선 비용(사내 제외)

② 근로자 건강검진 비용

③ 작업환경 측정비용(사내 제외)

④ 안전보건교육 및 교재 비용

⑤ 안전보건관리 인건비

⑥ 안전물품·보호구 구입 비용

⑦ 전산프로그램 개발(안전관련 프로그램 공유 포함) 비용

⑧ 안전신문, 안전관련 정보지, 도서 등 정기간행물 구입 비용

⑨ 기타

※ 분야별 총 소요비용 100만원 이상만 실적으로 인정(개소 무관)

【확인내용】

○ 개선 지원활동 계획서, 개선지원 결과보고서 등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참여 협력업체 유해위험요인 지원제도 수립(1식) - 지원활동분야 : OOO, OOO, OOO ○ (예시) 참여 협력업체 지원율 80% 이상	○ (예시)지원제도 수립(1식) ○ (예시)협력업체 지원율 (80% 이상)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A.3 협력업체 작업중지권 보장 및 활성화 노력

7.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운영

□ 자가진단

<Ⓐ-1> 작업중지권 지원제도 운영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등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제도나 절차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음		∨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등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제도나 절차가 있으나, 운영 실적이 없음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등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제도나 절차가 없음	∨		

<Ⓐ-2> 협력업체 작업중지 요청 대비 개선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작업중지 요청 대비 이행률(50% 이상)	미흡	∨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작업중지권 지원 제도 사례

① 모바일 기기활용 신고/접수 채널 확보

② 작업중지에 따른 협력업체 손실 보상

③ 신고자 포상 제도 등

【확인내용】

○ 협력업체 작업중지권 지원 제도 관련 근거(규정·지침 및 내부품의서, 활용 전산시스템 등) 확인

○ 지원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내역 확인(계약서류 및 TBM활동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작업중지권 홍보 및 참여 안내 실시 여부 확인)

○ 협력업체 작업중지 요청 및 개선 조치 관련 증빙자료(신고/접수 서류, 개선 조치 내역 및 활동 증빙서류(사진 등))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작업장내 작업중지권 제도(소속 종사자 포함) 수립(1식) ○ (예시) 지원제도 활성화 운영(1식) - 1. 모바일 어플, 2. 손실보상제도 운영, 3. 포상제도 ○ (예시) 작업중지권 조치율 모니터링 (80%이상)	○ (예시)제도수립(1시) ○ (예시)개선조치율 (80%이상)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A.4 협력업체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확보 노력

8. 도급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편성기준 운영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편성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비용 또는 요율 등이 전년도(직전 계약 등) 대비 확대·상향(5% 이상) 되었음		V	
○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편성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V		
○ 상기 내용의 편성기준 및 절차가 없음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시설비, 보호구 구입 비용 등) - 단, 산안법 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은 제외 (예) 도급금액의 10.0%에 대한 비용은 안전보건 비용으로 견적금액에 포함하여 계약 ○ 도급계약서 내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편성 비율 또는 금액이 확대되었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등 관련내용 확인 후 배점 적용	○ 도급계약서, 적격수급업체 선정 내부 평가지침, 규정 등 근거자료 확인 실시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도급계약시 편성기준절차에 "안전보건비용 포함"수립(1식) ○ (예시) 안전보건비용 예산 확대(전년대비 5% 상향, 수립 또는 확보기준)	○ (예시) 도급계약 기준절차 수립(1식)-안전비용 포함 ○ (예시) 예산확보율 증가 (전년대비, 5%)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A.5 지역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 활동

9. 2~3차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 활동(가점분야)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2~3차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규정·지침 또는 활동 계획 등)를 마련하고 운영 중임 ※ 평가시 제도 건당 배점(평가년도 기준 지원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미흡	V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2~3차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제도 ① 안전보건 분야 컨설팅 지원 * A.2 Ⓐ 협력업체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분야 ②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 A.2 Ⓑ 협력업체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활동 분야 ③ 공익 재단·단체를 통한 지원 < 사례 > - 국내 중소기업 부품제조업 등 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강화 지원 (○○안전상생재단) - 지역사회 근로자 직업성질환 예방 등 지원(○○○건강센터) ④ 기타 자체 추진 지원 활동	○ 지원활동 계획서, 지원 결과보고서 등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지역 중소기업 등(2-3차 협력업체 포함) 안전보건 지원제도 수립(1식)	○ (예시) 지원제도 수립 (1식) 및 담당직원 배치(1명)

□ 공단검토결과(개선의견)

A.6 기타 안전보건 상생활동

10. 안전문화실천추진단, Safety Contact 제도 등 안전보건 상생활동(가점분야)

□ 자가진단

<Ⓐ-1>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지역별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업종별 협의회 등을 통해 가입되어 있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한 실적이 있음	미흡	V	

<Ⓐ-2> Safety Contact 제도 운영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 등과 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미흡	V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 범국가적 안전문화 확산 활동 전개를 위한 전국 39개 지역 단위(지청)별 조직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예시: ① 안전문화 확산 합동 캠페인 ② 옥외광고(통근버스 등) ③ 홈페이지 온라인 배너 ④ 지역별 행사에 협업 홍보 ○ Safety Contact 제도 : 기업간 Mentor & Mentee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 노하우 제공 및 합동 현장 모니터링 등 실시	○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고 증빙자료 등 확인 ○ 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내부 규정, 문서, 활동실적 등을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지역 중소기업 등(2-3차 협력업체 포함) 안전보건 지원제도 수립(1식)	○ (예시) 지원제도 수립 (1식) 및 담당직원 배치(1명)

□ 공단검토결과(개선의견)

■ 모기업 자율 선정과제

11. 모기업 자율 선정과제

□ 자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조직 ○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 협력업체의 안전보
○ 협력업체의 안전보

■ 모기업 지원 컨설팅(매칭비용 미지원) 과제

12. 모기업 지원 컨설팅(매칭비용 미지원) 과제

□ 컨설팅과제(매칭비용 미지원) 지원일정

단 계	과제내용	수행일정계획			비고
		실태컨설팅	교육 (필요시)	확인컨설팅	
지원기업1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23. 4. 5 ~ 4. 10	'23. 5. 2 ~ 5. 3	'23. 5. 12 ~ 5. 14	
지원기업1	3대사고유형· 8대위험요인	'23. 4. 11 ~ 4. 16	'23. 5. 7 ~ 5. 8	'23. 5. 15 ~ 5. 18	
지원기업2					
지원기업3					
지원기업4					

□ 공단 검토결과(개선의견)

○
○

[서식 4]

2023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확인기술지원 보고서

2023.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확인기술지원 보고서(갑지)

1. 사업장 현황(모기업)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모기업 참여자			
2 기술지원 현황					
지원일자		기술지원 담당자			

3. 확인기술지원 내용

☐ 확인기술지원 내용(요약)

○ *당 모기업은 2023년 월 일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사전기술지원을 실시한 이후, 공단의 개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상생협력활동 계획서를 최종 확정한 사업장으로써,*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확인기술지원 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기타 특이사항

○ *예시) (매칭지원 컨설팅 실시 현황) 사내 협력업체 0개소, 사외 협력업체 0개소를 대상으로 총 00 과제 대한 매칭지원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과제 분야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예시) (안전보건 활동과제 실시 현황) 00개 협력사와 함께 000 주제의 안전보건 간담회 및 000 주제의 캠페인 실시*

- 특이사항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수행계획서

A.1 안전보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및 이익 공유

1. 상생협력활동 지원 업무 전담조직 설치·운영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조직 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부서, 팀 등 포함, 이하 같음)이 구성되어 있음		∨	
○ 조직 내 협력업체 등에 대한「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음	∨		
○ 협력업체 등에 대한「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이나 업무 담당자는 없으나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 등을 평가 또는 지원하는 조직(구매부서 등)이 있음			
○ 협력업체, 중소기업 등에 대한「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구성되지 않고 해당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음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이 본사에만 구성되어 있고 해당 본사 조직원이 각 지사/지점/사업장(공장)의 상생협력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인정 가능(사업장 내 담당 인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 외 환경, 소방업무 등을 병행하는 경우 전담조직으로 미인정 * **상생협력활동** :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활동 등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 모기업의 조직도, 업무분장표, 지침 또는 관련 내부문서 등을 반드시 확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 등의 평가 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또는 내부 문서 등을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조직 설치 ○ (예시)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업무 담당자 배치	○ (예시)협력업체 지원 조직 설치 ○ (예시)지원 업무 담당자 배치 (1명)

☐ 공단 확인기술지원 내용

2. 협력업체 등 안전보건 투자·지원 향상 노력도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전년 대비 편성 및 집행 예산의 규모가 **10%이상 증가**하였음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전년 대비 편성 및 집행 예산 규모가 **동일한 수준(±10%이내)**임		∨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편성 및 집행 예산의 규모가 **10%이상 감소**하였음	∨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음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평가 연도에 수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평가기간 전까지 집행 내역이 있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 ○ 예산편성 및 집행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감은 『전체 안전보건 관련 예산』 대비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 예산』비율의 증감 또는 지원 금액 단위의 비율 증감(ex. 1억 → 1억5천: 50%증가)으로 평가 ○ 예산 편성증감률과 집행증감률이 상이할 경우 집행증감률로 평가	○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서류* 확인 * 연간 지원사업계획, 투자계획 등 기업 내부 결재 문서 등 ○ 수시 편성 예산에 대한 관련 규정, 근거 또는 평가 연도 기준 집행한 내역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시 - 예산항목 : 1. 협력업체 안전보호구 구입, 2. 협력업체 컨설팅 지원 3.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등	○ (예시)안전보건예산 수립(1식) ○ (예시)당해연도 예산 집행율 (80%이상)

□ 공단 확인기술지원 내용

3.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른 이익 공유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근거(규정·지침 또는 추진계획 등)를 마련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음 ※ 평가시 평가년도 기준 운영 실적 건당 점수 배점		∨	
○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근거(규정·지침 또는 추진계획 등)를 마련하고 있음 ※ 평가시 이익 공유(인센티브 제공) 근거 건당 점수 배점	∨		
○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근거(규정·지침 또는 추진계획 등)는 없으나 이익을 공유한 실적이 있음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협력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활동성과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각종 지원 제도를 평가 ※「상생협력활동」참여 및 결과에 따른 이익공유(인센티브 제공) 사례 예시 ① 안전보건관련 상생펀드운영 ② 수급업체 선정·평가 시 우대 ③ 납품단가연동제 ④ 성과 우수 임직원(협력업체) 포상 등 ⑤ 협력업체 납품물량 조정 ⑥ 협력업체 현금·현물 지원 등	○ 해당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적격수급업체 선정·평가 기준, 계약지침 등) 및 내부품의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운영실적은 평가 연도의 실제 이익공유(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내부 규정 수립 - (제도안) 1. 수급업체 선정 시 우대(우대가점 등) 2. 참여 직원 성과 우수직원 포상(협력업체 포함) 3. 협력업체 납품물량 조정 (참여 시 전년대비 최대단가 최대 0.5% 상향조정)	○ (예시) 협력업체 이익공유 제도 수립(1식)

□ 공단 확인기술지원 내용

4.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의견청취 및 참여 지원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향상을 위해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규정, 지침, 계획 등 포함)를 마련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음 ※ 평가시 운영 건수 당 배점		∨	
○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향상을 위해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규정, 지침, 계획 등 포함)를 마련하고 있음 ※ 평가시 제도 건수 당 배점	∨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안전보건 의사소통 및 참여 활성화 지원 제도
① 종사자 접근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정보시스템(앱 또는 웹) 제공, 사용
② 안전행동관찰 제도 운영
③ 우수제안, 적극적 참여시 포상 등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④ 모기업 및 협력업체 종사자 안전보건 합동 캠페인 등 정기 행사(분기 1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
⑤ 아차사고사례 공유제도
⑥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도급 관련으로 모기업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점검 등)은 제외

【확인내용】
○ 해당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지침 및 내부품의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운영실적은 평가 연도의 실제 지원·제공 여부를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 소통 활성화 제도 수립 (추진계획) - (제도안) 1. 온라인 전산망 수립 2. 안전행동관찰 제도 운영 3. 우수제안 채택시 인센티브 부여(포인트 등) 4. 안전캠페인 실시(분기별 1회) ○ (예시)제도수립에 따른 협력업체 안내 실시(3회)	○ (예시) 안전보건 소통 활성화 제도 수립 (추진계획, 1식) ○ (예시) 안전캠페인 실행율(80%이상)

☐ 공단 확인기술지원 내용

A.2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강화 지원

5. 협력업체 등 안전보건 수준향상 지원(컨설팅 분야)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 특성 및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평가시 컨설팅 분야 당 배점(평가 연도 기준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미흡	∨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분야*
* 모기업의 담당자가 직접 협력업체를 지원한 실적과, 모기업이 외부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협력업체를 지원한 실적 모두를 포함
①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컨설팅과제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 획득지원
③ 위험성평가 실시 또는 인정 지원
④ 직업 건강증진 프로그램(근골격계질환예방, 뇌심혈관질환예방, 직무스트레스 등)
⑤ 종사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
⑥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점검·발굴
⑦ 기타 분야

【확인내용】
○ 컨설팅 지원 계획서,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서 등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참여 협력업체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항목 추가(강화) - 1. 위험성평가 수준향상 컨설팅, 2.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 (예시)협력업체 컨설팅지원율 - 지원율 50%이상

☐ 공단 확인기술지원 내용

6. 협력업체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활동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 등의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적인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평가시 개선지원 분야 당 배점(평가 연도 기준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미흡	V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활동 분야 (소요 비용지원, 물품지원 등 현금·현물성 지원)

① 유해 · 위험요인 개선 비용(사내 제외)

② 근로자 건강검진 비용

③ 작업환경 측정비용(사내 제외)

④ 안전보건교육 및 교재 비용

⑤ 안전보건관리 인건비

⑥ 안전물품·보호구 구입 비용

⑦ 전산프로그램 개발(안전관련 프로그램 공유 포함) 비용

⑧ 안전신문, 안전관련 정보지, 도서 등 정기간행물 구입 비용

⑨ 기타

※ 분야별 총 소요비용 100만원 이상만 실적으로 인정(개소 무관)

【확인내용】

○ 개선 지원활동 계획서, 개선지원 결과보고서 등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참여 협력업체 유해위험요인 지원제도 수립(1식) - 지원활동분야 : OOO, OOO, OOO ○ (예시) 참여 협력업체 지원율 80% 이상	○ (예시)지원제도 수립(1식) ○ (예시)협력업체 지원율 (80% 이상)

□ 공단 확인기술지원 내용

A.3 협력업체 작업중지권 보장 및 활성화 노력

7.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운영

□ 자가진단

<Ⓐ-1> 작업중지권 지원제도 운영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등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제도나 절차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음		V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등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제도나 절차가 있으나, 운영 실적이 없음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등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제도나 절차가 없음	V		

<Ⓐ-2> 협력업체 작업중지 요청 대비 개선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작업중지 요청 대비 이행률(50% 이상)	미흡	V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작업중지권 지원 제도 사례

① 모바일 기기활용 신고/접수 채널 확보

② 작업중지에 따른 협력업체 손실 보상

③ 신고자 포상 제도 등

【확인내용】

○ 협력업체 작업중지권 지원 제도 관련 근거(규정·지침 및 내부품의서, 활용 전산시스템 등) 확인

○ 지원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내역 확인(계약서류 및 TBM활동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작업중지권 홍보 및 참여 안내 실시 여부 확인)

○ 협력업체 작업중지 요청 및 개선 조치 관련 증빙자료(신고/접수 서류, 개선 조치 내역 및 활동 증빙서류(사진 등))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작업장내 작업중지권 제도(소속 종사자 포함) 수립(1식) ○ (예시) 지원제도 활성화 운영(1식) - 1. 모바일 어플, 2. 손실보상제도 운영, 3. 포상제도 ○ (예시) 작업중지권 조치율 모니터링 (80%이상)	○ (예시)제도수립(1시) ○ (예시)개선조치율 (80%이상)

□ 공단 확인기술지원 내용

A.4 협력업체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확보 노력

8. 도급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편성기준 운영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편성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비용 또는 요율 등이 전년도(직전 계약 등) 대비 확대·상향(5% 이상) 되었음		∨	
○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편성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 상기 내용의 편성기준 및 절차가 없음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시설비, 보호구 구입 비용 등) - 단, 산안법 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은 제외 (예) 도급금액의 10.0%에 대한 비용은 안전보건 비용으로 견적금액에 포함하여 계약 ○ 도급계약서 내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편성 비율 또는 금액이 확대되었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등 관련내용 확인 후 배점 적용	○ 도급계약서, 적격수급업체 선정 내부 평가지침, 규정 등 근거자료 확인 실시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도급계약시 편성기준절차에 "안전보건비용 포함"수립(1식) ○ (예시) 안전보건비용 예산 확대(전년대비 5% 상향, 수립 또는 확보기준)	○ (예시) 도급계약 기준절차 수립(1식)-안전비용 포함 ○ (예시) 예산확보율 증가 (전년대비, 5%)

□ 공단 확인기술지원 내용

A.5 지역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 활동

9. 2~3차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 활동(가점분야)

□ 자가진단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2~3차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규정·지침 또는 활동 계획 등)를 마련하고 운영 중임 ※ 평가시 제도 건당 배점(평가년도 기준 지원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미흡	∨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2~3차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제도 ① 안전보건 분야 컨설팅 지원 * A.2 Ⓐ 협력업체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분야 ②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 A.2 Ⓑ 협력업체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활동 분야 ③ 공익 재단·단체를 통한 지원 < 사례 > - 국내 중소기업 부품제조업 등 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강화 지원 (○○안전상생재단) - 지역사회 근로자 직업성질환 예방 등 지원(○○○건강센터) ④ 기타 자체 추진 지원 활동	○ 지원활동 계획서, 지원 결과보고서 등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지역 중소기업 등(2-3차 협력업체 포함) 안전보건 지원제도 수립(1식)	○ (예시) 지원제도 수립 (1식) 및 담당직원 배치(1명)

□ 공단 확인기술지원 내용

A.6 기타 안전보건 상생활동

10. 안전문화실천추진단, Safety Contact 제도 등 안전보건 상생활동(가점분야)

□ 자가진단

<Ⓐ-1>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지역별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업종별 협의회 등을 통해 가입되어 있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한 실적이 있음	미흡	V	

<Ⓐ-2> Safety Contact 제도 운영

평 가 내 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채택여부	
		반영	미반영
○ 협력업체 등과 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미흡	V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 범국가적 안전문화 확산 활동 전개를 위한 전국 39개 지역 단위(지청)별 조직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예시: ① 안전문화 확산 합동 캠페인 ② 옥외광고(통근버스 등) ③ 홈페이지 온라인 배너 ④ 지역별 행사에 협업 홍보 ○ Safety Contact 제도 : 기업간 Mentor & Mentee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 노하우 제공 및 합동 현장 모니터링 등 실시	○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고 증빙자료 등 확인 ○ 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내부 규정, 문서, 활동실적 등을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예시) 지역 중소기업 등(2-3차 협력업체 포함) 안전보건 지원제도 수립(1식)	○ (예시) 지원제도 수립 (1식) 및 담당직원 배치(1명)

□ 공단 확인기술지원 내용

■ 모기업 자율 선정과제

11. 모기업 자율 선정과제

□ 자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조직 ○	

□ 공단 확인기술지원 내용

○ 협력업체의 안전보
○ 협력업체의 안전보

■ 모기업 지원 컨설팅(매칭비용 미지원) 과제

12. 모기업 지원 컨설팅(매칭비용 미지원) 과제

□ 컨설팅과제(매칭비용 미지원) 지원일정

단 계	과제내용	수행일정계획			비고
		실태컨설팅	교육 (필요시)	확인컨설팅	
지원기업1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23. 4. 5 ~ 4. 10	'23. 5. 2 ~ 5. 3	'23. 5. 12 ~ 5. 14	
지원기업1	3대사고유형· 8대위험요인	'23. 4. 11 ~ 4. 16	'23. 5. 7 ~ 5. 8	'23. 5. 15 ~ 5. 18	
지원기업2					
지원기업3					
지원기업4					

□ 공단 확인기술지원 내용

○
○

[서식 5]

-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

상생협력지수 평가 지표

2023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평가 결과표

◎ 총 평가점수 : [점]

구 분	평가분야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노력도	안전보건 상생협력 성과 창출
총 점 (1,000점)	400점	600점
평가점수	점	점

【 평가 항목 】

분야	체계 요소	배점 (1,000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세부 배점
I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노력도(A) (400점)	1. 경영자 리더십	140	A.1 안전보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및 이익 공유	Ⓐ 상생협력활동 지원 업무 전담조직 설치·운영	30
				Ⓑ 협력업체 등 안전보건투자·지원 향상 노력도	20
				Ⓒ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른 이익 공유	20
				Ⓓ 경영자의 관심 및 실천의지(면담 평가)	30
	2. 근로자 참여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의견청취 및 참여 지원	40
	3. 위험요인 파악	200	A.2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강화 지원	Ⓐ 협력업체 등 안전보건 수준향상 지원 (컨설팅 분야)	100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협력업체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활동	100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30	A.3 협력업체 작업중지권 보장 및 활성화 노력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등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운영	30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30	A.4 협력업체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확보 노력	Ⓐ 도급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편성기준 운영	30
	7. 안전보건 지원·상생 활동	(가점) +100	A.5 지역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 활동	Ⓐ 2~3차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 활동	(가점) +100
		(가점) +100	A.6 기타 안전보건 상생활동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Safety Contact 제도 등 안전보건 상생활동	(가점) +100
II 안전보건 상생협력 성과창출(B) (600점)	8. 평가 및 개선	100	B.1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 협력업체 등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평가	100
		150	B.2 상생협력사업 추진 실적	Ⓐ 모기업-협력업체 상생협력사업 개선계획 수립 및 실적	150
		300 (가점 +200)	B.3 매칭지원 추진 실적	Ⓐ 모기업-협력업체 매칭지원 참여 및 실적	300 (가점 +200)
		50	B.4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 협력업체 등 만족도 조사 및 개선	50
		(가점) +150	B.5 정부사업 참여 및 성과	Ⓐ 정부사업에 대한 참여도 및 성과	(가점) +150
		(감점) -100	B.6 컨설팅 과제 추진 실적	Ⓐ 컨설팅과제[매칭지원 또는 모기업지원 (매칭 미지원)] 추진 실적	(감점) -100
		(감점) -250	B.7 재해발생 수준	Ⓐ 모기업 및 참여 협력업체 재해발생 수준	(감점) -250

[세부평가 내용]

Ⅰ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노력도 (400점)

지표명	1. 경영자 리더십	A.1 안전보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및 이익 공유	
	Ⓐ 상생협력활동 지원 업무 전담조직 설치·운영	배점	30점

□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30)	평가결과 확인
○ 조직 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부서, 팀 등 포함, 이하 같음)이 구성되어 있음 【가점】해당 조직 책임자를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 : 10점	30 (+10)	
○ 조직 내 협력업체 등에 대한「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음 【가점】 업무 담당자가 상생협력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 10점	20 (+10)	
○ 협력업체 등에 대한「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이나 업무 담당자는 없으나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 등을 평가 또는 지원하는 조직(구매부서 등)이 있음	10	
○ 협력업체 등에 대한「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구성되지 않고 해당 업무 담당자도 두고 있지 않음	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이 본사에만 구성되어 있고 해당 본사 조직원이 각 지사/지점/사업장(공장)의 상생협력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30점으로 평가(사업장 내 담당 인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외 환경, 소방업무 등을 병행하는 경우 전담조직으로 미인정 * **상생협력활동**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활동 등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공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여부와는 무관함]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 모기업의 조직도, 업무분장표, 지침 또는 관련 내부문서 등을 반드시 확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 등의 평가 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또는 내부 문서 등을 확인

지표명	1. 경영자 리더십	A.1 안전보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및 이익 공유	
	Ⓑ 협력업체 등 안전보건 투자·지원 향상 노력도	배점	20점

□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20)	평가결과 확인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전년 대비 편성 및 집행 예산의 규모가 **10%이상** 증가하였음	20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전년 대비 편성 및 집행 예산 규모가 **동일한 수준(±10%이내)**임	10	
○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편성 및 집행 예산의 규모가 **10%이상** 감소하였음	5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음	0	
【가점】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을 **다른 예산 항목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성한 경우**	+1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평가 연도에 수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평가기간 전까지 집행 내역이 있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 ○ 예산편성 및 집행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감은 『전체 안전보건 관련 예산』 대비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 예산』비율의 증감 또는 지원 금액 단위의 비율 증감(ex. 1억 → 1억5천: 50%증가)으로 평가 ○ 예산 편성증감률과 집행증감률이 상이할 경우 집행증감률로 평가	○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서류* 확인 * 연간 지원사업계획, 투자계획 등 기업 내부 결재 문서 등 ○ 수시 편성 예산에 대한 관련 규정, 근거 또는 평가 연도 기준 집행한 내역 확인

지표명	1. 경영자 리더십	A.1 안전보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및 이익 공유	
	Ⓒ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른 이익 공유	배점	20점

□ 평가항목

<Ⓒ-1> 제도 및 절차 마련

평 가 내 용	배점 (10)	평가결과 확인
○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근거(규정·지침 또는 추진계획 등)를 마련하고 있음 ※ 이익 공유(인센티브 제공) 근거 당 5점, 최대 10점	10	

<Ⓒ-2> 운영 실적

평 가 내 용	배점 (10)	평가결과 확인
○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근거(규정·지침 또는 추진계획 등)에 따라 운영한 실적이 있음 ※ 평가년도 기준 운영 실적 건당 5점, 최대 10점	10	
○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근거(규정·지침 또는 추진계획 등)는 없으나 이익을 공유한 실적이 있음 ※ 평가년도 기준 공유 실적 건당 2점, 최대 5점	5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확인내용】
○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협력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활동성과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각종 지원 제도를 평가 ※「상생협력활동」참여 및 결과에 따른 이익공유(인센티브 제공) 사례 예시 ① 안전보건관련 상생펀드운영 ② 수급업체 선정·평가 시 우대 ③ 납품단가연동제 ④ 성과 우수 임직원(협력업체) 포상 등 ⑤ 협력업체 납품물량 조정 ⑥ 협력업체 현금·현물 지원 등	○ 해당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적격수급업체 선정·평가 기준, 계약지침 등) 및 내부품의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운영실적은 평가 연도의 실제 이익공유(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확인

지표명	1. 경영자 리더십	A.1 안전보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및 이익 공유	
	Ⓓ 경영자의 관심 및 실천의지(면담평가)	배점	30점

□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30)	평가결과 확인
○ 「경영자」의 관심 및 실천의지 평가	3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경영자」필수 면담 항목 및 평가 기준

면담 항목	평가기준
1. 경영자의 리더십	❶ 작업장 내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총괄적이고 최종적인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❷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경영철학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조직의 대·내외적으로 공표 또는 공유하는가?
	❸ 작업장 내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구성원이 적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필요한 자원(물적, 인적)을 제공하고 있는가?
	❹ 조직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현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❺ 안전보건 예산이 편성, 집행되는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가?
2. 종사자의 참여	❻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에 종사자(협력업체 포함) 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3. 위험요인 파악 5. 비상조치 계획수립	❼ 작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만한 유해·위험요인을 알고 있으며, 비상시에 대비한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4.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❽ 위험성평가 실행 및 개선 조치와 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가?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❾ 도급·용역·위탁시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도급·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7. 평가 및 개선	❿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배 점	30점	20점	10점	0점
평가기준 적정 건수	10건	8-9건	7-6건	5건 이하

○「경영자」는 각 지사/지점/사업장(공장)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 : 공장장, 지사장, 지점장 등)

○ 면담평가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 "0점" 처리

○ 면담평가자는 가급적 3급 차장(차장대우 포함) 이상으로 수행

지표명	2. 근로자의 참여	A.1 안전보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및 이익 공유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의견청취 및 참여 지원	배점	40점

□ 평가항목

<Ⓔ-1> 제도 및 절차 마련

평 가 내 용	배점 (20)	평가결과 확인
○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향상을 위해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를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규정, 지침, 계획 등 포함)를 마련하고 있음 ※ 제도 당 10점, 최대 20점	20	

<Ⓔ-2> 운영 수준

평 가 내 용	배점 (20)	평가결과 확인
○ 제도의 운영 수준에 대한 평가 평가기준 / 점수 2개 이상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20점 1개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10점	2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등 안전보건 의사소통 및 참여 활성화 지원 제도 예시

① 종사자 접근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정보시스템(앱 또는 웹) 제공, 사용

② 안전행동관찰 제도 운영

③ 우수제안, 적극적 참여시 포상 등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④ 모기업 및 협력업체 종사자 안전보건 합동 캠페인 등 정기 행사(분기 1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

⑤ 아차사고사례 공유제도

⑥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도급 관련으로 모기업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점검 등)은 제외

【확인내용】

○ 해당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지침 및 내부품의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운영실적은 평가 연도의 실제 지원·제공 여부를 확인

지표명	3. 위험요인 파악	A.2 협력업체 등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강화 지원	
	Ⓐ 협력업체 등 안전보건 수준향상 지원 (컨설팅 분야)	배점	100점

□ 평가항목

<Ⓐ-1> 컨설팅 분야의 다양성

평 가 내 용	배점 (50)	평가결과 확인
○ 협력업체 특성 및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컨설팅 지원 분야 1개 당 10점(사외 및 지역중소기업은 1개 당 20점)	50	

<Ⓐ-2> 지원 규모의 적정성

평 가 내 용	배점 (50)	평가결과 확인
○ 상생협력활동 참여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율 【가점】 사외 및 지역중소기업 합동 캠페인, 세미나 등 1건당 10점, 최대 50점	50 (+50)	

□ 평가결과 【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분야*

* 모기업의 담당자가 직접 협력업체를 지원한 실적 및 모기업이 외부 컨설팅 기관을 활용하여 협력업체를 지원한 실적 모두를 포함(평가 기간내)

①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컨설팅과제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 획득 지원, ③ 위험성평가 실시 또는 인정 지원, ④ 직업 건강증진 프로그램, ⑤ 종사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 ⑥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점검·발굴, ⑦ 기타 분야

○ 상생협력사업 참여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율 평가 기준

평가점수 = 협력업체 지원율*별 배점(표1) + 참여 협력업체 수(최대 25점)**

* 지원율 : (컨설팅 지원 협력업체 수 ÷ 상생협력사업 참여 협력업체 수) × 100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참여 협력업체 1개소 당 10점(사외 및 지역중소기업은 1개소 당 15점)

[표1 : 협력업체 지원율별 배점표]

배점	25	20	15	10	0
지원율	80% 이상	50% 이상	30% 이상	20% 미만	지원실적 없음

【확인내용】

○ 컨설팅 지원 계획서,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서 등

지표명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A.2 협력업체 등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강화 지원	
	Ⓑ 협력업체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활동	배점	100점

□ 평가항목

<Ⓑ-1> 개선활동의 적정성

평 가 내 용	배점 (50)	평가결과 확인
○ 협력업체 등의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적인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분야 1개 당 10점(사외 및 지역중소기업은 1개 당 20점)	50	

<Ⓑ-2> 지원규모의 적정성

평 가 내 용	배점 (50)	평가결과 확인
○ 상생협력사업 참여 협력업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율	50	

□ 평가결과 【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활동 분야 (소요 비용지원, 물품지원 등 현금·현물성 지원)

①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사내 제외), ② 근로자 건강검진 비용, ③ 작업환경 측정비용(사내 제외), ④ 안전보건교육 및 교재 비용, ⑤ 안전보건관리 인건비, ⑥ 안전물품·보호구 구입 비용, ⑦ 전산프로그램 개발(안전관련 프로그램 공유 포함) 비용, ⑧ 안전신문, 안전관련 정보지, 도서 등 정기간행물 구입 비용, ⑨ 근로자 휴게시설, 지게차 안전장치, 비상용 응급구조키트 ⑩기타

※ 분야별 총 소요비용 100만원 이상만 실적으로 인정(개소 무관)

○ 상생협력사업 참여 협력업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율 평가 기준

평가점수 = 협력업체 지원율*별 배점(표1) + 참여 협력업체 수(최대 25점)**

* 지원율 : (개선 지원 협력업체 수 ÷ 상생협력사업 참여 협력업체 수) × 100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참여 협력업체 1개소 당 10점(사외 및 지역중소기업은 1개소 당 15점)

[표1 : 협력업체 지원율별 배점표]

배점*	25	20	15	10	0
지원율	80% 이상	50% 이상	30% 이상	20% 미만	지원실적 없음

【확인내용】

○ 개선 지원활동 계획서, 개선지원 결과보고서 등

지표명	5. 비상조치계획 수립	A.3 협력업체 등 작업중지권 보장 및 활성화 노력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등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운영	배점	30점

□ 평가항목

<Ⓐ-1> 작업중지권 지원제도 운영

평 가 내 용	배점 (20)	평가결과 확인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등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제도나 절차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음 【가점】 작업중지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음 : 20점	20 (+10)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등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제도나 절차가 있으나, 운영 실적이 없음	10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등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제도나 절차가 없음	0	

<Ⓐ-2> 협력업체 작업중지 요청 대비 개선율

평 가 내 용	배점 (10)	평가결과 확인
○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작업중지 요청 대비 이행률	1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 협력업체 작업중지권 지원 제도 사례
① 모바일 기기활용 신고/접수 채널 확보
② 작업중지에 따른 협력업체 손실 보상
③ 신고자 포상 제도

○ 협력업체 작업중지 요청 대비 이행률
- (작업중지 건수(개선완료포함) ÷ 요청건수) x 100

배점	10	7	5	0
이행률	100%	50%이상	30%이상	실적 없음

- 작업중지 요청 건이 없는 경우, 10점으로 처리

【확인내용】

○ 협력업체 작업중지권 지원 제도 관련 근거(규정·지침 및 내부품의서, 활용 전산시스템 등) 확인

○ 지원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내역 확인 (계약서류 및 TBM활동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작업중지권 홍보 및 참여 안내 실시 여부 확인)

○ 협력업체 작업중지 요청 및 개선완료 관련 증빙자료(신고/접수 서류, 개선 조치 내역 및 활동 증빙서류(사진 등))

* 개선완료 : 작업중지에 따라 관련 시설개선 또는 현장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지표명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A.4 협력업체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확보 노력	
	Ⓐ 도급계약 체결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편성기준 운영	배점	30점

□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30)	평가결과 확인
○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편성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비용 또는 요율 등이 전년도(직전 계약 등) 대비 확대·상향(5% 이상) 되었음	30	
○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편성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15	
○ 상기 내용의 편성기준 및 절차가 없음	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시설비, 보호구 구입 비용 등)

- 단, 산안법 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은 제외

(예) 도급금액의 10.0%에 대한 비용은 안전보건 비용으로 견적금액에 포함하여 계약

○ 도급계약서 내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편성 비율 또는 금액이 확대되었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등 관련내용 확인 후 배점 적용

【확인내용】

○ 도급계약서, 적격수급업체 선정 내부 평가지침, 규정 등 근거자료 확인 실시

지표명	7. 안전보건 지원 · 상생 활동	A.5 지역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 활동	
	Ⓐ 2~3차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 활동	가점	+100점

□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100점)	평가결과 확인
○ 2~3차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규정·지침 또는 활동 계획 등)를 마련하고 운영 중임 ※ 제도 건당 50점(평가년도 기준 지원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최대 100점	+10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 2~3차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제도 ① 안전보건 분야 컨설팅 지원 * A.2 Ⓐ 협력업체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분야 ②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 A.2 Ⓑ 협력업체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활동 분야 ③ 공익 재단·단체를 통한 지원 < 사례 > - 국내 중소기업 부품제조업 등 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강화 지원 (○○안전상생재단) - 지역사회 근로자 직업성질환 예방 등 지원(○○○건강센터) ④ 기타 자체 추진 지원 활동	【확인내용】 ○ 지원활동 계획서, 지원 결과보고서 등 확인

지표명	7. 안전보건 지원 · 상생 활동	A.6 기타 안전보건 상생활동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Safety Contact 제도 등 안전보건 상생활동	가점	+100점

□ 평가항목

<Ⓐ-1>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평 가 내 용	가점 (+50점)	평가결과 확인
○ 지역별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업종별 협의회 등을 통해 가입되어 있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한 실적이 있음	+50	

<Ⓐ-2> Safety Contact 제도 운영

평 가 내 용	가점 (+50점)	평가결과 확인
○ 협력업체 등과 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5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 범국가적 안전문화 확산 활동 전개를 위한 전국 39개 지역 단위(지청)별 조직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예시: ① 안전문화 확산 합동 캠페인 ② 옥외광고(통근버스 등) ③ 홈페이지 온라인 배너 ④ 지역별 행사에 협업 홍보 ○ Safety Contact 제도 : 기업간 Mentor & Mentee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 노하우 제공 및 합동 현장 모니터링 등 실시	【확인내용】 ○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고 증빙자료 등 확인 ○ 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내부 규정, 문서, 활동실적 등을 확인

[세부평가 내용]

Ⅱ 안전보건 상생협력 성과 창출 (600점)

지표명	7. 평가 및 개선	B.1 협력업체 등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 협력업체 등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평가	배점	100점

□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100)	평가결과 확인
○ 협력업체 등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평가 결과	10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 평가 대상 협력업체 선정 기준

[평가 대상 협력업체 수]

전체 참여 협력업체 수	평가 대상(수)
30개소 이상	4개소
10개소 이상 ~ 30개소 미만	3개소
5개소 이상 ~ 10개소 미만	2개소
5개소 미만	1개소

[평가 대상 협력업체 우선선정 기준]

① 고용부 기준에 따른 위험업종

② 2차 이하 및 사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 사외 협력업체(모기업과 작업공간이 분리된 사업장, 일시적 작업형태(단기간 보수작업 등), 납품 등 포함)

③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무작위 선정

※ 위험성평가 기 인정사업장은 가급적 제외(평가기간 내 인정사업장은 선정 가능)

※ 단순 용역(경비·청소·식당 등) 협력업체는 가급적 제외

○ 평가방법 및 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 평가 및 점수기준 : "고용부 고시 기준 변경예정"에 따라 절차간소화 및 근로자참여 확대를 중점 평가 (지표변경 예정)

【확인내용】

○ 평가지표별 주요 확인 사항

- 고용부 고시 기준 변경에 따라 지표 추후 변경 예정

※ 다수 협력업체 평가의 경우 평균값 적용(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지표명	7. 평가 및 개선	B.2 상생협력사업 추진 실적	
	Ⓐ 모기업-협력업체 상생협력사업 개선계획 수립 및 실적	배점	150점

□ 평가항목

<Ⓐ-1> 모기업의「상생협력사업 개선계획」수립률

평 가 내 용	배점 (50)	평가결과 확인
○ 모기업의「상생협력사업 개선계획」수립률	50	

<Ⓐ-2> 「상생협력사업 계선계획」의 목표 달성률

평 가 내 용	배점 (100)	평가결과 확인
○ 「상생협력사업 개선계획」의 목표 달성률	10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 참여 모기업의 「상생협력사업 개선계획」수립 비율을 평가

- 수립률 : [참여 모기업의 상생협력사업 개선계획 수립 건수 ÷ 상생협력지수 평가지표(9건)] x 100

※ 평가지표 중 수행계획서 점검결과가 양호하여 개선계획이 필요 없는 경우 모수에서 제외

배점	50	40	30	20	10	0
수립률	100%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없음

① 상생협력활동 지원 업무 전담조직 설치·운영, ② 협력업체 안전보건투자지원 향상 노력도, ③ 상생협력활동 참여 및 결과에 따른 이익 공유, ④ 협력업체(소속 종사자 포함) 의견 청취 및 참여 지원, ⑤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향상 지원(컨설팅 분야), ⑥ 협력업체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활동, ⑦ 협력업체(소속종사자 포함)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운영, ⑧ 도급계약 체결 시(안전보건에 관한비용) 편성기준 운영, ⑨ 2~3차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활동(가점)

○ 참여기업의「상생협력사업 개선계획」목표 달성률

- 달성율 : (개선계획별 목표 달성률* 총합 ÷ 개선계획 건수)

* (성과목표 추진실적 ÷ 성과목표(KPI)) x 100

배점	100	80	60	40	20	0
달성율	90% 이상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10% 이상	없음

【확인내용】

○ 모기업에서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의 성과목표(KPI) 및 실적 확인

지표명	7. 평가 및 개선	B.3 매칭지원 추진 실적	
	Ⓐ 모기업-협력업체 매칭지원 계획 수립 및 실적	배점	300점 (+200점)

□ 평가항목

<Ⓐ-1>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사업 참여

평 가 내 용	배점 (300)	평가결과 확인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컨설팅 과제) 분야」에 참여한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 개소당 50점(사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은 80점), 최대 300점	300	

<Ⓐ-2>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투자노력도

평 가 내 용	가점 (+200)	평가결과 확인
○【가점】모기업의 매칭 비용지원의 규모에 따른 투자노력도	+20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 모기업의 매칭 비용지원의 규모에 따른 투자노력도

배점	200	150	100	50	0
비용지원 규모* (모기업 분담금 기준)	5,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없음

- 컨설팅과제와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선정과제)의 모기업 지원 비용 합계

* 비용지원 규모 : 매칭지원의 총 소요비용 중 공단에서 지원하는 비용(50%)를 제외한 모기업 분담금(50%)의 규모임

지표명	7. 평가 및 개선	B.4 협력업체 등 만족도 조사	
	Ⓐ 협력업체 등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배점	50점

□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50)	평가결과 확인
○ 상생협력사업 참여 협력업체 등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공단 주관)	5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 공단 주관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규모 : 상생협력사업 참여 협력업체
- 조사방법 :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의 방문조사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이메일, 모바일 등)
- 평가기준 (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점수 적용)

배점	50	40	30	20	10
조사 점수	90점 이상	80~90점	70~80점	60~70점	60점 미만

【확인내용】

○ 공단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 점수는 본부에서 일괄 제공

지표명	7. 평가 및 개선	B.5 정부사업 참여 및 성과	
	Ⓐ 정부사업에 대한 참여도 및 성과(가점)	가점	+150점

□ 평가항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등 공단 사업 참여

평 가 내 용	배점 (+50)	평가결과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또는「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평가기간 내) ※ 1개 협력업체당 5점, 최대 50점 * 컨설팅 추진 중 중단 시 미인정,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현장 심사 완료 기준(최종 인정 및 인증 무관)	+50	

<Ⓐ-2> 참여 협력업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포함) 및 위험성평가 인정율

평 가 내 용	배점 (+30)	평가결과 확인
○ 상생협력 사업 참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위험성평가 인정율」	+30	

<Ⓐ-3>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및 성과

평 가 내 용	배점 (+70)	평가결과 확인
○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및 성과	+7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 참여 협력업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포함) 및 위험성평가 인정율 평가기준(평가 기간내)

$$※ \ 인정율 = \frac{인정 \ 협력업체수}{참여 \ 협력업체수}$$

배점	30	25	15	7	5
인정율	50%이상	40이상~50%미만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20%미만

○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 대회 평가 기준 (평가 연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포함)

배점	70	50	30	20	10
참여 성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서류심사 통과	참여신청

○ <Ⓐ-1>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매칭지원과 중복인 경우 미인정

지표명	7. 평가 및 개선	B.6 컨설팅과제 지원 추진 실적	
	Ⓐ 컨설팅 과제[매칭지원 또는 모기업지원(매칭 미지원)] 추진 실적	감점	-100점

□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100)	평가결과 확인
○ 컨설팅 과제[매칭지원 또는 모기업지원(매칭 미지원)] 지원 목표 달성률	-10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 컨설팅 7대 과제[매칭지원 또는 모기업지원(매칭 미지원)] 지원 목표 달성률

- 달성율 : [컨설팅과제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건수 ÷ 신청 시 참여사업장현황에 작성된 과제 건수] x 100

※ 분야 별 복사·붙이기 수준의 보고서는 건수 미인정

감점	0	-50	-75	-100
수립률	100%	80% 이상	40% 이상	40% 미만

①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실행력 향상, ② 3대사고유형·8대위험요인 발굴, ③ 폭발장소 위험성평가 및 예방, ④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⑤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⑥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⑦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인내용】

○ 모기업에서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컨설팅 과제 건수 대비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건수 확인

지표명	7. 평가 및 개선	B.7 재해발생 수준	
	Ⓐ 모기업 및 참여 협력업체 재해발생수준 (감점)	감점	- 250점

□ 평가항목

<Ⓐ-1> 참여 기업 사고사망 발생 여부

평 가 내 용	배점 (-200)	평가결과 확인
○ 모기업 및 참여 협력업체 사고사망 발생 여부	-200	

<Ⓐ-2> 참여 협력업체 중상해 재해율

평 가 내 용	배점 (-50)	평가결과 확인
○ 참여 협력업체 중상해 재해율	-50	

□ 평가결과【득점 : 점】

평가 내용	
증빙	

【참고사항】

【평가기준】

○ 모기업 및 참여(사내·외)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의 업무상 사고사망 발생 여부 평가 기준 (평가자료는 본부에서 제공)

- 적용기준 : 11.30 기준 고용부 조사기준 (사고사망 발생일 기준, 평가 연도 발생 재해만 반영)
- 적용제외 : 업무상 질병, 사업장밖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방화, 폭력행위에 의한 재해는 제외

업무상 사고 발생여부	배점	
❶ 당해연도 모기업 및 참여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발생(1명 이상) - 4대 고위험요인(추락, 끼임, 충돌, 질식)에 의한 사고사망 재해	-200점	최대 -200점
❷ 당해연도 모기업 및 참여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발생(1명 당) - 4대 고위험요인(추락, 끼임, 충돌, 질식)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재해	-50점	

※ 사외 협력업체 중 비정형 작업(정비·보수, 납품·물류 등)의 경우 모기업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재해로 한정

○ 참여(사내·외) 협력업체 중상해 재해율 평가 기준 (평가자료는 본부에서 제공)

- 적용기준 : 11.30 기준 확정 승인 재해 건으로 근로손실일수 90일 이상인 업무상 재해(평가 연도 발생)

※ 산출식 = $\frac{\text{참여 협력업체 중상해 재해율}}{\text{동종업종 중상해 재해율}}$

배점	-50	-30	-10
중상해 재해율	2배 초과	1.5배 초과	1배 초과

[별지]

Ⅲ 참여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평가 기준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 기준 활용)

참여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평가 항목 및 기준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상 사업장용>

1.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1. 활동체계 구축	ㅇ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 수립	10	
	ㅇ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2. 교육	ㅇ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30	
	ㅇ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 실시	30	
3. 예산	ㅇ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10	
4. 재해예방노력	ㅇ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1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1. 계획(P)	ㅇ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관리	10	
	ㅇ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ㅇ 평가대상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20	
2. 이행(D)	ㅇ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 결정	5	
	ㅇ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30	
3. 이행확인(C)	ㅇ 개선활동 수행 감시 및 이행여부 확인	10	
4. 지속적개선(A)	ㅇ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 실시	10	
5. 공유 및 기록	ㅇ 위험성평가의 공유 및 기록·보존	1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1.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포함)	ㅇ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와 지원 등	40	
2. 관리자층 (관리감독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등	40	
3. 근로자(파견 근로자 포함) 및 이해관계자 (협력업체 관계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등	20	

2.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가.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평가 결과

구 분		만점 (X)	분야별 득점 (Y)	가중치(α)	종합점수 (Y/X×α=Z)
합 계				100	
분야별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2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5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30	

나.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 평가범례(정성평가 적용)
- 미실시 및 미이행(1점),
- 5점 척도(매우미흡: 1점, 미흡: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우수: 5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세부점수	득점
A. 사업주의 관심도		100점 만점	총 점
1. 활동체계 구축 (20점)	1.1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의사소통 하였는가? - 방침과 목표 미수립(1점) - 방침과 목표 수립 후 일부 특정장소에만 대표자 명의로 게시(5점) - 방침과 목표 수립 후 사무실, 작업현장 등의 장소에 대표자명의로 게시하고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1.2 위험성평가를 위한 조직구성 및 역할을 업무분장 하였는가? - 위험성평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음(1점) - 위험성평가 조직구성이 사업장 안전보건조직과 일치하고 있으나 공단에서 제공자료 위주로 업무분장 작성 등 형식적으로 작성(5점) - 위험성평가 업무분장에 대해 자체회의를 거쳐 조직구성 및 역할 등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잘 되어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2. 교육 (60점)	2.1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 하였는가? - 사업주 교육 미이수(1점), - 사업주 교육 이수(10점) * 현장평가일 기준 3년 이내 교육이수 여부 확인(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은 유효기간 1년에 한함)	미이수 이수 1점 10점	
	2.2 평가담당자가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 하였는가? - 평가담당자 교육 미이수(1점), -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20점) * 현장평가일 기준 3년 이내 교육이수 여부 확인	미이수 이수 1점 20점	
	2.3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1점)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실시결과 등을 일부 포함하여 실시(15점)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실시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실시(30점) * 위험성평가 방침·목표, 실시규정, 운영계획, 실시결과 등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교육 실시여부 등을 확인 후 배점	미실시 보통 실시 1점 15점 30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세부점수	득점
3. 예산 (10점)	3.1 안전보건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 연간 설비개선 및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예산집행 없음(1점) - 연간 설비개선 예산집행 실적이 있으나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구입비, 교육비용 등의 위주로 예산을 집행(5점) - 안전보건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설비개선 및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10점) * 예산금액은 업종과 규모,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평가자가 설비개선과 개인보호구 사용여부 등을 확인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4. 재해예방 노력 (10점)	4.1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종업종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전파를 하였는가? - 재해예방 노력 없음(1점) -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으나 기록유지가 미흡하고 일부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는 재해사례 수집·전파, 포스터 게시 등을 실시(5점) - 위험성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실시한 작업 전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0점) * 재해예방노력은 앗차사고, 동종업종·작업에 대한 재해사례 수집·전파, 포스터 게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점 만점	총 점
(공통적용) 사고사망 핵심 위험요인(추락·끼임·충돌·질식)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행이 미흡할 경우, 심사항목 중 계획(P), 이행(D), 이행확인(C)의 각 세부심사기준에 대하여 최하 점수 부여			
1. 계획(P) (35점)	1.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 실시규정 미작성(1점) - 실시규정을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검토 및 결재 절차에 따라 작성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게 작성(3점) -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검토 및 결재 절차에 거쳐 실시규정을 사업장에 맞게 작성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5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7조~제15조를 참고하여 실시규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1.2 위험성평가팀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팀 미구성(1점) - 위험성평가팀 구성 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부 인원이 누락되어 있으나, 주기적으로 평가 회의 등 실시(3점)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현장 근로자, 감독자 포함)를 고려하여 위험성평가팀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회의 실시(5점) *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지정해야 할 안전보건 구성원 포함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1.3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을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는가? - 공정(작업) 미분류 및 안전보건정보 미수집(1점) -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일부 안전보건정보 누락(3점) -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활용(5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9조제3항에 명시한 안전보건정보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1.4 위험성평가 대상별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고 있는가? - 유해위험요인 파악 없음(1점) - 관리감독자 등이 위험성평가 대상별로 사업장 순회점검 등 여러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나 일부 유해위험요인 누락(10점) - 관리감독자 등 근로자가 참여하여 위험성평가 대상별로 사업장을 순회점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잘 파악하고 있다(2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5점 10점 15점 20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세부점수	득점
2. 이행(D) (35점)	**2.1 파악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을 사전에 마련한 위험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가?**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파악 미실시(1점)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과 허용가능 기준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위험성 결정내용 불합리(3점) - 위험성 결정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위험성을 결정하고 허용가능 위험인지 판단하고 결정(5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9조, 제11조에 명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위험성 결정 기준 적정성을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2.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을 수행하고 있는가? -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미실행(10점) - 위험성 감소대책을 설비개선보다는 관리적 대책 및 개인용 보호구 등의 위주로 수립하고 있으며, 실행계획에 따라 70%이상 수행(20점) -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범위 이내가 되도록 감소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실행계획에 따라 90%이상 수행하고 있다(30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12조에 명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담당자, 개선완료일, 감소대책의 적정성, 실행율 등을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3. 이행 확인(C) (10점)	**3.1 위험성평가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이행여부 미확인(1점) - 감소대책 등에 대하여 이행 상태를 감소대책 개선완료일부터 2개월 경과하여 파악·보완하고 기록유지를 잘하고 있다(5점) - 감소대책 등에 대하여 이행 상태를 감소대책 개선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파악·보완하고 기록유지를 잘하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4. 지속적 개선(A) (10점)	**4.1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 미실시(1점) -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규정에 명시한 평가시기 및 절차를 일부 생략(5점) -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를 실시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10점) * 최초평가의 경우 실시규정 내용을 참고하여 점수 부여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5. 공유 및 기록 (10점)	**5.1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기록 및 보존하고 있는가?** - 공유 및 기록 미실시(1점)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의 근로자 공유와 기록 및 보존이 일부 누락됨(5점) -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실시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및 보존함(10점) * 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고시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및 고시 제14조(기록 및 보존)에 따른 기록 확인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점 만점	총 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세부점수	득점
(공통적용)	① 사업장 여건에 따라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복 업무를 인정하고 각 항목별 점수 배점 ② 작업유형별, 공정별로 근로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근로자 면담 추가 실시		
1.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40점)	**1.1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 조직구성원과 구성원의 역할, 예산을 알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팀의 조직과 역할 및 예산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위험성평가팀의 조직과 역할 및 예산에 대하여 50% 정도 알고 있음(5점) - 위험성평가팀의 조직과 역할 및 예산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1.2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및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할 사항을 알고 있는가? - 평가주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5점) -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1.3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거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임원 및 근로자의 동기부여에 힘쓰고 있는가? - 사업주(임원 등 포함)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동기부여를 위한 방안 미실행(1점) - 사업주(임원 등 포함)가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동기부여를 위한 제안제도 등 2개 이하 실행하고 있다(5점) - 사업주(임원 등 포함)이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동기부여를 위한 제안제도 등의 2개 이상 실행하고 있다(10점) * 예 : 사업주/임원의 직접 참여, 개선제안제도 시행, 우수근로자 시상, 인센티브 부여 등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1.4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보건 목표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안전보건 목표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알고 있으며, 안전보건 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5점) -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동종업종의 재해사례 등을 알고 있으며, 안전보건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10점) * 예 : 산재발생 건수, 예방대책, 수시평가, 산재감소 목표 부여 등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2. 관리자층 (관리감독자) (40점)	**2.1 부여된 안전보건 책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5점) -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2.2 위험성평가에 관한 절차와 내용, 실시 시기 및 개선할 사항을 알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 절차·내용 및 평가주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위험성평가 절차·내용 및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5점) - 위험성평가 절차·내용 및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세부점수	득점
2. 관리자층 (관리감독자) (40점)	2.3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사업주/임원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 담당업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등) 보고 및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음(1점) - 담당업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등) 보고 및 근로자에게 전달을 50% 실시(5점) -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등)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있다(10점) * 위험성평가 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명시된 업무분장에 따라 수행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2.4 안전보건 회의(조회, 미팅, 모임 등 포함)에 참여하고 결과 등을 이행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 회의(위험성평가 회의 포함) 미참여(1점) - 안전보건 회의(위험성평가 회의 포함)에 50% 참여 및 이행(5점) - 안전보건 회의(위험성평가 회의 포함)에 참여하고 결과에 따라 전부 이행(10점) * 안전보건 회의 및 이행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3. 근로자 (파견 근로자 포함) 및 이해관계자 (20점)	3.1 위험성평가 활동(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결정, 감소대책수립, 개선제안 등 전단계) 에 참여하고 있는가?(건설업은 협력업체 포함) - 위험성평가 활동(유해위험요인 등)에 미참여(1점) - 위험성평가 활동에 50% 참여하고 있음(3점) - 위험성평가 활동에 전체 참여하고 있음(5점) *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3.2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위험성평가 내용을 알고 있는가? - 담당업무의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안전보건수칙 등)에 알지 못함(1점)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안전보건수칙 포함)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3점)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안전보건수칙 포함)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5점) *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3.3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정보에 알지 못함(1점) -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정보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3점) -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정보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5점) *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3.4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게시판 공지 등을 통해 전달받고 있는가? - 게시, 주지 등을 통해 결과를 전달받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함(1점) - 게시, 주지 등을 통해 결과를 전달받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중 50%를 알고 있음(3점) - 게시, 주지 등을 통해 결과를 전달받아 위험성평가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5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상시 근로자 수 20명 미만 사업장용>

1.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1. 활동체계 구축	ㅇ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 수립	20	
2. 교육	ㅇ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ㅇ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 실시	50	
3. 예산	ㅇ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10	
4. 재해예방 노력	ㅇ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2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1. 계획(P)	ㅇ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관리	10	
	ㅇ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ㅇ 평가대상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20	
2. 이행(D)	ㅇ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 결정	5	
	ㅇ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30	
3. 이행확인(C)	ㅇ 개선활동 수행 감시 및 이행여부 확인	10	
4. 지속적개선(A)	ㅇ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 실시	10	
5. 공유 및 기록	ㅇ 위험성평가의 공유 및 기록·보존	1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1.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포함)	ㅇ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와 지원 등	40	
2. 관리자층 (관리감독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등	40	
3. 근로자(파견 근로자 포함) 및 이해관계자 (협력업체 관계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등	20	

2.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가.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평가 결과

구 분		만점 (X)	분야별 득점 (Y)	가중치(α)	종합점수 (Y/X×α=Z)
합 계				100	
분야별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2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5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30	

나.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 평가범례(정성평가 적용)
- 미실시 및 미이행(1점),
- 5점 척도(매우미흡: 1점, 미흡: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우수: 5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세부점수	득점
A. 사업주의 관심도		100점 만점	총 점
1. 활동체계 구축 (20점)	1.1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의사소통 하였는가? - 방침과 목표 미수립(1점) - 방침과 목표 수립 후 일부 특정장소에만 대표자 명의로 게시(10점) - 방침과 목표 수립 후 사무실, 작업현장 등의 장소에 대표자명의로 게시하고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다(2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5점 10점 15점 20점	
2. 교육 (50점)	2.1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 하였는가? - 사업주 교육 미이수(1점), - 사업주 교육 이수(20점) * 현장평가일 기준 3년 이내 교육이수 여부 확인(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은 유효기간 1년에 한함)	미이수 이수 1점 20점	
	2.2 평가담당자가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 하였는가? - 평가담당자 교육 미이수(1점), -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10점) * 현장평가일 기준 3년 이내 교육이수 여부 확인	미이수 이수 1점 10점	
	2.3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1점) - 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실시결과 등을 일부 포함하여 실시(10점) - 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실시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실시(20점) * 위험성평가 방침·목표, 실시규정, 운영계획, 실시결과 등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교육 실시여부 등을 확인 후 배점	미실시 보통 실시 1점 10점 20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세부점수	득점
3. 예산 (10점)	3.1 안전보건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 연간 설비개선 및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예산집행 없음(1점) - 연간 설비개선 예산집행 실적이 있으나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구입비, 교육비용 등의 위주로 예산을 집행(5점) - 안전보건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설비개선 및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10점) * 예산금액은 업종과 규모,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심사원이 설비개선과 개인보호구 사용여부 등을 확인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4. 재해예방 노력 (20점)	4.1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종업종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전파를 하였는가? - 재해예방 노력 없음(1점) -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으나 기록유지가 미흡하고 일부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는 재해사례 수집·전파, 포스터 게시 등을 실시(10점) - 위험성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실시한 작업 전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0점) * 재해예방노력은 앗차사고, 동종업종·작업에 대한 재해사례 수집·전파, 포스터 게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5점 10점 15점 20점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점 만점	총 점
(공통적용) 사고사망 핵심 위험요인(추락·끼임·충돌·질식)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행이 미흡할 경우, 심사항목 중 계획(P), 이행(D), 이행확인(C)의 각 세부심사기준에 대하여 최하 점수 부여			
1. 계획(P) (35점)	1.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 실시규정 미작성(1점) - 실시규정을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검토 및 결재 절차에 따라 작성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게 작성(3점) -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검토 및 결재 절차에 거쳐 실시규정을 사업장에 맞게 작성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5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7조~제15조를 참고하여 실시규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1.2 위험성평가자(팀)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팀 미구성(1점) - 위험성평가팀 구성 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부 인원이 누락되어 있으나, 주기적으로 평가 회의 등 실시(3점)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현장 근로자, 감독자 포함)를 고려하여 위험성평가팀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회의 실시(5점) *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지정해야 할 안전보건 구성원 포함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1.3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을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는가? - 공정(작업) 미분류 및 안전보건정보 미수집(1점) -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일부 안전보건정보 누락(3점) -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활용(5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9조제3항에 명시한 안전보건정보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세부점수	득점
1. 계획(P) (35점)	**1.4 위험성평가 대상별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고 있는가?** - 유해위험요인 파악 없음(1점) - 관리감독자 등이 위험성평가 대상별로 사업장 순회점검 등 여러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나 일부 유해위험요인 누락(10점) - 관리감독자 등 근로자가 참여하여 위험성평가 대상별로 사업장을 순회점검 등 여러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잘 파악하고 있다(2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5점 10점 15점 20점	
2. 이행(D) (35점)	**2.1 파악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을 사전에 마련한 위험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가?**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파악 미실시(1점)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과 허용가능 기준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위험성 결정내용 불합리(3점) - 위험성 결정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위험성을 결정하고 허용가능 위험인지 판단하고 결정(5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9조, 제11조에 명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위험성 결정 기준 적정성을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2.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을 수행하고 있는가? -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미실행(10점) - 위험성 감소대책을 설비개선보다는 관리적 대책 및 개인용 보호구 등의 위주로 수립하고 있으며, 실행계획에 따라 70%이상 수행(20점) -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범위 이내가 되도록 감소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실행계획에 따라 90%이상 수행하고 있다(30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12조에 명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담당자, 개선완료일, 감소대책의 적정성, 실행율 등을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3. 이행 확인(C) (10점)	**3.1 위험성평가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이행여부 미확인(1점) - 감소대책 등에 대하여 이행 상태를 감소대책 개선완료일부터 2개월 경과하여 파악·보완하고 기록유지를 잘하고 있다(5점) - 감소대책 등에 대하여 이행 상태를 감소대책 개선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파악·보완하고 기록유지를 잘하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4.지속적 개선(A) (10점)	**4.1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 미실시(1점) -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규정에 명시한 평가시기 및 절차를 일부 생략(5점) -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를 실시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10점) * 최초평가의 경우 실시규정 내용을 참고하여 점수 부여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5. 공유 및 기록 (10점)	**5.1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기록 및 보존하고 있는가?** - 공유 및 기록 미실시(1점)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의 근로자 공유와 기록 및 보존이 일부 누락됨(5점) -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실시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및 보존함(10점) * 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고시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및 고시 제14조(기록 및 보존)에 따른 기록 확인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점 만점	총 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세부점수	득점
(공통적용)	사업장 여건에 따라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복 업무를 인정하고 각 항목별 점수 배점 예시) 사업주가 관리자(담당자)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각각 인정		
1.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40점)	**1.1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및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할 사항을 알고 있는가?** - 평가주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10점) -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2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5점 10점 15점 20점	
	1.2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보건 목표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안전보건 목표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알고 있으며, 안전보건 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10점) -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동종업종의 재해사례 등을 알고 있으며, 안전보건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20점) * 예 : 산재발생 건수, 예방대책, 수시평가, 산재감소 목표 부여 등	미흡 보통 우수 1점 5점 10점 15점 20점	
2. 관리자층 (관리감독자) (40점)	**2.1 위험성평가에 관한 절차와 내용, 실시 시기 및 개선할 사항을 알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 절차·내용 및 평가주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위험성평가 절차·내용 및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10점) - 위험성평가 절차·내용 및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2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5점 10점 15점 20점	
	2.2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사업주/임원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 담당업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등) 보고 및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음(1점) - 담당업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등) 보고 및 근로자에게 전달을 50% 실시(10점) -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등)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있다.(20점) * 위험성평가 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명시된 업무분장에 따라 수행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5점 10점 15점 20점	
3. 근로자 (파견 근로자 포함) 및 이해관계자 (20점)	**3.1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위험성평가 내용을 알고 있는가?** - 담당업무의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안전보건수칙 등)에 알지 못함(1점)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안전보건수칙 포함)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5점)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안전보건수칙 포함)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10점) *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3.2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게시판 공지 등을 통해 전달받고 있는가? - 게시, 주지 등을 통해 결과를 전달받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함(1점) - 게시, 주지 등을 통해 결과를 전달받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중 50%를 알고 있음(5점) - 게시, 주지 등을 통해 결과를 전달받아 위험성평가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서식 6]

보안유지각서

기 관 명 :

대 표 자 :

본인은 20 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의 보안사항을 위반시에는 공단과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물론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면서 이에 보안유지각서를 제출합니다.

☞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장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상생협력사업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정보제공의 범위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명, 대표자명, 소재지, 근로자수, 전화번호, 재해발생현황 및 내용

☞ 사업장 기술지원 및 평가시 취득한 사업장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상생협력사업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PART.II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운영 매뉴얼

'23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운영 매뉴얼

2023. 8.

목 차

1 용어의 정의 ····· 152
2 매칭지원 사업개요 ····· 155
3 추진절차별 사업수행 기준 ····· 161
4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관련 서식 ····· 210
1. 매칭지원 컨설팅기관 수시 등록 신청서 ····· 211
2. 매칭지원 참여 신청서 ····· 215
3. 매칭지원 계획서 ····· 217
4. 매칭지원 계획서 사전검토 결과서(총괄) ····· 226
5.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 회의록 ····· 234
6. 매칭지원 협약서 ····· 239
7. 매칭지원 선금/정산금 지급 요청서 ····· 242
8. 매칭지원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 243
9. 매칭지원 변경요청서 ····· 245
10.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 ····· 246
11.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 사전검토 결과서(총괄) ·· 253
12. 매칭지원 수행완료 심사위원회 회의록 ····· 256
#별지 서식1.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양식 ····· 262
#별지 서식2. 근로자 휴게실 설치완료 점검확인서 ····· 303

Ⅰ. 용어의 정의

○ 『**상생협력활동**』이라 함은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체계 및 활동 등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업과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포함)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이하 매칭지원)』이라 함은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이하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등 분야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소요비용을 "모기업"과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말한다.

○ 『**모기업**』이라 함은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원기업"의 매칭지원을 주관하는 "원청" 또는 "도급사"를 말한다.

○ 『**지원기업**』이라 함은 "모기업"과 함께 "매칭지원"에 참여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을 말한다.

○ 『**협력업체**』라 함은 본 지원사업의 수행대상으로서 "모기업"으로부터 도급, 위탁, 용역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 『**지역 중소기업**』이라 함은 "모기업"과의 협력관계 또는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컨설팅기관**』이라 함은 "매칭지원"에 참여하여 "모기업"과 "지원기업"에서 희망하는 컨설팅 과제를 수행하는 안전보건 관련기관*을 말한다.

* ①고용노동부 지정기관[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업 제외)], ②산업안전(보건)지도사 법인, ③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④기타 컨설팅 업무 참여 희망기관

○ 『**컨설팅과제**』라 함은 “지원기업”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공단”이 지정한 안전보건 관련 과제를 말한다.

○ 『**안전보건 활동과제**』라 함은 “모기업”과 “지원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세미나, 캠페인, 안전보건물품 제공 등의 “컨설팅과제” 외에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말한다.

○ **『컨설팅 과제 등』**이라 함은 “컨설팅 과제”와 “안전보건 활동과제”를 총칭한다.

○ 『**지원계획**』이라 함은 “컨설팅기관”이 “모기업” 및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지원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수립한 컨설팅 과제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말한다.

○ 『**지원계획서**』라 함은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추진 과제에 대하여 “컨설팅기관” 또는 “모기업”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컨설팅 과제 등의 세부 추진계획 등)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 『**심사위원회**』라 함은 “모기업”의 “매칭지원 계획서” 및 “수행완료 보고서”의 검토를 통해 매칭지원 내역과 최종 수행내용을 심의·의결하고 사업비 정산 등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 『**실태 컨설팅**』이라 함은 모기업이 선정한 지원기업의 컨설팅 과제별 유해·위험요인 발굴,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이행 모니터링**』이라 함은 “컨설팅기관”의 실태 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행과정의 충실성, 참여기업의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사업 만족도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확인 컨설팅**』이라 함은 실태 컨설팅 및 이행 모니터링에서 제시된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완료 상태 점검 및 추가적인 위험요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수행완료 보고서**』라 함은 지원계획서에 의하여 “모기업”과 “컨설팅기관”이 실시한 컨설팅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 『**심사위원**』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칭지원 계획” 및 “수행완료 평가” 등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다.

○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과 관련 공단으로부터 사업관리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 사업자로서 “지원계획” 및 “수행완료” 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이행 모니터링”, 사업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Ⅱ. 매칭지원 사업개요

1 참여신청

○ **(신청대상)** '23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상에 선정된 모기업 중 매칭지원 참여 희망기업

○ **(신청기간)** 사업 대상 선정일~9월 중(기간 내 수시 접수, 필요시 연장 가능)

○ **(접 수 처)** 광역본부 등 안전보건체계지원부

○ **(접수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

* 매칭 컨설팅지원 신청서 및 지원계획서(협력업체 현황, 참여 유형 및 소요비용 등)

2 지원개요

<참여 유형별 지원 내용>

○ **(1유형) 컨소시엄 자체 필요분야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 **(유형 내용)** 컨소시엄*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상생협력활동에 대해 지원

* 컨소시엄: 100인 이상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 그룹

- **(신청기업)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모기업**(100인 이상)

- **(지원대상)**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u>규모 제한 없음</u>)

《 지원대상 제외 협력업체 》

❶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❷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❸ 국세·지방세·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❹ 보조금 부정수급자로서 제재대상인 기업
❺ 공단의 국고지원 위탁사업** 해당분야를 지원받은 기업(당해연도)
* 소규모 사업장 민간위탁,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탁, 근골격계질환 예방(위탁), 질식재해예방(위탁) 등

※ ❹ 보조금 부정수급자로서 제재대상인 기업 현황의 경우, 본부 재정지원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해당 요건 발생 시 명단 수시 제공(본부 자율안전사업부 → 광역본부별 안전보건체계지원부)

- **(지원 한도)** 모기업과 정부가 상생협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칭하여 분담 지원(모기업 50% : 정부 50%)

다만, 정부 지원한도는 <u>**컨소시엄 당 최고 2억원 한도**</u>로 지원

※ (예시1) 매칭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5억원인 경우: 정부지원액 2억원(최고 한도액까지 지원), 모기업 분담액 3억원

※ (예시2) 매칭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2억원인 경우: 정부지원액 1억원, 모기업 분담액 1억원

- **(지원 필요분야 선정방법)** 컨소시엄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자유롭게 선정

《 상생협력활동 필요분야 내용(예시) 》

• 모기업-협력업체 간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활동계획서에 반영·시행)
• 컨설팅 과제 및 안전보건 활동과제*
* 세미나, 캠페인, 안전보호구 등 안전보건물품 구입 등 포함(다만, 안전보호구 등 안전보건물품 구매는 매칭비용 총액(정부 지원금+모기업 분담금)의 50% 한도로 사용 가능)
※ 안전보건물품 단일항목 신청 시 정부지원금 한도액 : 5천만원

※ 컨설팅 과제의 경우 2-02(컨설팅 과제)에서 기본과제, 자율과제 구분 없이 선정 가능

○ **(2유형) 컨설팅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 **(유형내용)** 컨소시엄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컨설팅 과제(2-02) 중에서 정한 상생협력활동에 대해 지원

- **(신청기업)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모기업**(100인 이상)

- **(지원대상)** 사내 협력업체(50인 미만), 사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u>규모제한 없음</u>)

※ 단, 모기업의 업종이 조선업종(선박건조 및 수리업)인 경우 협력업체 규모제한 없음

《 지원대상 제외 협력업체 》

❶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❷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❸ 국세·지방세·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❹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모기업의 "사내 협력업체"
❺ 보조금 부정수급자로서 제재대상인 기업
❻ 공단의 국고지원 위탁사업* 해당분야를 지원받은 기업(당해연도)
* 소규모 사업장 민간위탁,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탁, 근골격계질환 예방(위탁), 질식재해예방(위탁) 등

※ ❺ 보조금 부정수급자로서 제재대상인 기업 현황의 경우, 본부 재정지원 사업부와 연계하여 해당 요건 발생 시 명단 수시 제공(본부 자율안전사업부 → 광역본부별 안전보건체계지원부)

- **(지원 한도)** 모기업과 정부가 상생협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칭하여 분담 지원(모기업 50% : 정부 50%)

  다만, 정부 지원한도는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1개소 당 최고 3,000만원 한도(컨소시엄당 최고 4억원까지 지원)**로 지원

  ※ (예시1) 협력업체 20개소의 컨설팅 비용이 각각 5,000만원인 경우: 상생협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0억원이고, 이 중 정부지원액은 4억원(최고 한도액까지 지원), 모기업 분담액은 나머지 6억원

  ※ (예시2) 협력업체 15개소의 컨설팅 비용이 각각 1,000만원인 경우: 상생협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억 5천만원이고, 이 중 정부지원액은 7.5천만원, 모기업 분담액은 나머지 7.5천만원

- **(과제선정 방법)** 모기업이 컨설팅과제(2-02) 지원분야 중에서 **기본과제(필수)**와 **자율과제(자율)**를 **선정***

  * 자율과제 복수선택 가능, 사업 참여 후 추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가능

< 컨설팅 지원 과제(2-02 참고) >

과제구분	지원분야			주요 내용
기본과제(필수)				①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및 실행력 강화
자율과제(자율)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산업안전분야		②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③ 폭발 위험성 장소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예방
		산업보건분야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④ 화학물질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와 건강장해 예방
			근골격계질환 작업 개선	⑤ 근골격계부담작업 대상 유해요인 조사 및 예방
			밀폐공간작업 위험 예방	⑥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 등 예방
	안전관리 역량향상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⑦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대 항목 진단 및 개선
각 과제별 포함	안전의식 확산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⑧ CEO 인식개선,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 **(3유형)** 상생협력활동 비용 매칭지원 선택없음(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만 참여)

□ 추진 체계

고용노동부·공단(본부)	모기업	컨설팅기관	공단(광역본부 등)
○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추진지침 및 운영 매뉴얼 마련 ○ 사업 공고, 설명회 ○ 이행 모니터링 ○ 성과분석	○ 컨설팅기관 선정 ○ 지원계획 수립 ○ 사업참여 신청 (모기업→공단) ○ 모기업 분담금 지급 (선금)	○ 협력업체 현황분석 ○ 지원계획 수립 지원 ○ 컨설팅 수행 ○ 수행완료 보고 (모기업, 컨설팅기관 → 공단)	○ 참여 접수 ○ 모기업 선정 ○ 협약 체결 ○ 수행완료 평가 ○ 공단 분담금 지급

□ 추진 절차

① 사업공고, 설명회 (공단)	② 지원계획 수립 (모기업, 컨설팅기관)	③ 참여 신청 (모기업)	④ 모기업 선정(공단)
○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등 ○ 컨설팅기관 풀 구성	○ 컨설팅기관 선정(모기업) ○ 지원계획서 작성	○ 컨설팅 지원계획서 제출	○ 지원계획서 사전검토 (위탁관리기관) ○ 지원계획서 평가·승인 (심사위원회)
⑤ 협약체결 (공단, 모기업 등)	**⑥ 컨설팅 수행 (컨설팅기관)**	**⑦ 수행완료 평가 (공단)**	**⑧ 성과분석 (공단)**
○ 3자 협약 체결 (공단-모기업-컨설팅기관) ○ 착수금(공단 및 모기업 지원금의 80%까지)지급 (요청시)	○ 컨설팅 실시 ○ 수행일지 작성 ○ 이행 모니터링(공단 본부, 성과관리기관)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모기업, 컨설팅기관) ○ 보고서 사전검토·평가 (위탁관리기관, 심사위원회) ○ 공단 분담금 지급	○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사업성과 분석 (위탁관리기관)

□ 매칭지원 흐름도

○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용역) 지원을 지원 계획서에 따라 추진하고 협약에 따라 소요비용을 분담(공단50%, 모기업50%)

<참고> 소요비용 매칭 지원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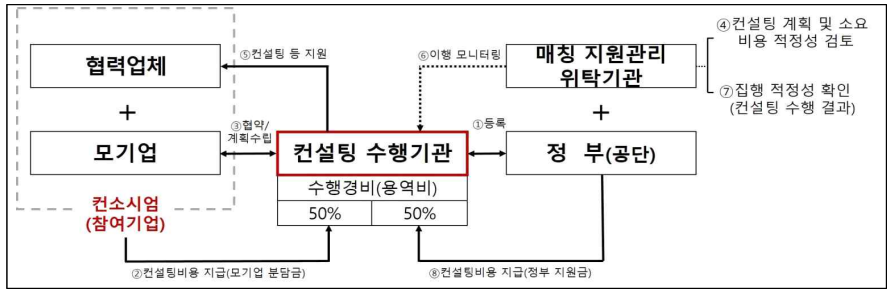

첨부1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추진절차별 수행업무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추진절차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① **사업 공고, 설명회** (공단)	○ 인터넷 사이트 등 매체 공지 - 공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 모집공고 ○ 사업 대상(기업, 컨설팅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광역권역별)
② **컨설팅기관 풀 (Pool) 구성** (공단)	○ 사업공고 시 컨설팅기관 풀(Pool) 구성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단계부터 컨설팅기관 관련 정보를 조기 제공 ○ 기본 등록(고용부 지정) 기관 외 사업참여 희망 컨설팅기관 수시 등록
③ **지원계획 수립** (모기업)	○ 모기업이 컨설팅기관을 자율 선정 → 지원계획서 작성 - 지원분야 선정 및 컨설턴트 투입규모, 소요비용 등 자율설계
④ **참여 신청** (모기업)	○ 사업 참여신청 (접수 : 광역본부별(경기본부 포함)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참여신청서 및 지원계획서 제출
⑤ **지원기업 선정** (공단)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 승인 - 지원기업, 컨설턴트 등급 적격 여부, 수행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신청서(지원계획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심의·선정
⑥ **협약체결 및 착수금(선금)지급** (요청시)	○ 3자(공단-모기업-컨설팅기관) 간 협약서 작성 ○ 컨설팅기관 희망 시 공단 과 모기업은 협약금액의 최대 40% 까지 착수금(선금) 지급 가능(하반기는 각각 35%) : 공단, 모기업 → 컨설팅기관 입금
⑦ **컨설팅 수행** (컨설팅기관)	○ 착수확인서 제출, 지원계획에 따른 수행일지 작성 ○ 지원계획 변경 사항 보고(필요시)
⑧ **이행 모니터링** (공단,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실태 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행 모니터링(중간점검) 실시
⑨ **수행완료 평가** (공단)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모기업, 컨설팅기관 → 공단 - 확인 컨설팅 실시 후 15일 이내(협약기간 내 제출) ○ 수행완료 보고서 평가 : 심사위원회 - 지원계획과 수행내용 일치 여부, 수행 충실성, 지원성과 등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공단 및 모기업 분담금(잔금) 지급
⑩ **분담금(잔금) 지급** (공단, 모기업)	○ 평가결과 통보 : 공단 → 모기업, 컨설팅기관 ○ 분담금(잔금) 지급 요청 : 컨설팅기관 → 공단, 모기업 - 지급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컨설팅기관에 확정 분담금을 지급
⑪ **성과분석** (공단)	○ 사업효과성 분석, 우수사례 발굴 ○ 참여기업(모기업,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조사(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첨부2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추진절차별 제출서류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추진절차별 제출서류

구 분	대상	제출서류
① **컨설팅기관 풀 (Pool) 구성**	공단	수시등록 희망 기관 : 사업자 등록증, 컨설팅기관 등록 신청서, 컨설턴트 등록현황, 개인정보 동의서,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② **매칭지원 참여 신청**	모기업, 컨설팅기관	1. 매칭지원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2. 매칭지원 계획서 1부
③ **지원기업 선정** **(협력업체 등)**	공단(심사위원회)	지원계획 심사표,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확인서, 평가지침 준수 각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④ **협약체결 및 착수금(선금)지급(요청시)**	컨설팅기관, 모기업, 공단	1. 컨설팅기관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완납증명원, 수입인지 2만원(협약금액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 모기업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3. 공단, 모기업 착수금(선금) 입금확인서(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⑤ **컨설팅 수행**	컨설팅기관	1. 수행일지, 보고서 및 증빙자료(필요시 수행사진 등) 2. 컨설팅 지원계획 변경요청서(지원계획 변경 시)
⑥ **이행 모니터링**	공단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1. 컨설팅기관 : 실태 컨설팅 보고서 2. 공단(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⑦ **컨설팅 완료**	컨설팅기관	수행완료 보고서 및 제출 공문, 완료 확인서, 수행일지, 정산자료 등
⑧ **수행완료 평가**	공단(심사위원회,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1. 수행완료 평가표,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확인서, 평가지침 준수 각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2. 만족도 조사서(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⑨ **공단, 모기업 분담금 지급 신청**	컨설팅기관	정산금 지급 요청서, 입금통장 사본, 세금계산서(청구용),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원

Ⅲ. 추진절차별 사업수행 기준

< 목 차 >

1. 컨설팅기관 등록 및 컨설턴트 교육 절차

1. 컨설팅기관 풀(Pool) 구성 및 운영 ····· 163
2. 컨설팅기관 수시 등록 절차 ····· 164
3. 컨설턴트 교육 절차 및 내용 ····· 165

2. 매칭지원 계획수립 및 참여 신청

1. 컨설팅기관 선정 ····· 166
2.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서 작성 ····· 167
   - 매칭지원 계획서 작성 기준 ····· 167
   -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별 세부내용 ····· 169
   - 매칭지원 컨설팅 등급 기준표 ····· 170
   -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선정과제) 세부내용 ····· 171
   -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선정과제) 지원단가 산정기준 ····· 174
3.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참여 신청 및 계획서 제출 ····· 184

3. 매칭지원 결정 · 통보

1.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 사전검토 ····· 185
2. 상생협력활동 매칭 지원기업(모기업) 선정·통보 ····· 186

4. 협약체결 및 착수금(선금)지급 요청

1. 협약체결 및 착수금(선금) 지급 ····· 188
2. 협약의 해지 등 ····· 190

5. 컨설팅 수행

1. 컨설팅 수행 ····· 191
2. 컨설팅 이행 모니터링(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195

6. 매칭지원 계획의 변경

1. 매칭지원 계획의 변경 ····· 196

7. 매칭지원 최종완료 및 검토

1.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198
2. 매칭지원 수행완료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200
3. 매칭지원 비용(정산금) 지급 ····· 202

8. 기타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3
2. 국고위탁 등 타 사업 중복 확인 및 배제 ····· 205
3. 사업 관련 Q&A ····· 207

1-01 컨설팅기관 풀(Pool) 구성 및 운영

▶ 컨설팅기관 풀(Pool) 등록 요건

○ **(기본 등록)** 아래의 기관은 별도 절차없이 컨설팅기관 풀(Pool)에 등록

①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른 안전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②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③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분야 제외]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4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건설안전분야 제외) 법인
⑤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컨설팅기관 간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 가능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당해연도 참여를 배제함

① 공단 '민간위탁사업평가'의 전년도 평가에서 부적합등급(N등급) 기관

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 신청일 현재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

○ **(수시 등록)** 기본 등록 기관 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 사업자로서 공단에서 지정한 등록요건(아래표 참조)을 모두 갖춘 자

※ 대표자가 아래표의 컨설턴트 자격을 가진 1인 사업자도 컨설팅기관으로 등록 가능

등록요건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적용 내용
인력구성	○ 해당분야 **컨설턴트 1명 이상** [인정기준] - 상근 여부는 4대보험 직장 가입자명부 등 확인(대표자 제외) - 컨설턴트의 경력 및 실적 증명 서류
수행실적 또는 인력기준	○ (수행실적) 최근 3년내 매칭 컨설팅 과제 관련 실적 **5건 이상** ○ (인력기준) 안전보건 분야 **경력 3년 이상** [인정기준] 상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 - 현 소속 컨설턴트 수행실적 또는 타 소속 실적 인정

○ 컨설팅기관 등록 및 확인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2097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공지사항 # 36

1-02 컨설팅기관 수시 등록 절차

▶ 컨설팅기관 수시 등록

○ **(등록 신청)**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에 신청

※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사업관리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 사업자로서 "지원계획" 및 "수행완료"의 사전검토, "이행 모니터링", "기타 행정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

○ **(신청 대상)** 컨설팅 수행 기본등록 기관(1-01) 외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컨설팅 참여 희망기관

○ **(신청 방법)** 등록 희망 컨설팅기관이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Fax, E-mail 신청

○ **(제출 서류)** 등록신청서(서식1) 및 첨부서류*

* ①컨설턴트 등록현황(서식1-1) 1부, ②분야별 컨설팅 수행실적(서식1-2) 1부, ③개인정보동의서(서식1-3) 1부, ④사업자등록증 1부, ⑤산재보험 완납증명서 및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접수처**

① 전 화 :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자비스) 02-457-0002
※ 공단문의 : 052-7030-631,635

② 우 편 : 0850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12, 14층 1405호 상생협력사업 담당자

③ E-mail : koshainfo@naver.com

④ Fax : 02-455-0090

○ **수시 등록 컨설팅기관의 등록 기준일**

- **(등록 기준일)** 컨설팅기관 수시 등록 확정·통보일(공단 문서 시행일)

○ **등록 절차**

❶ 컨설팅기관 수시 등록 신청(컨설팅기관→위탁기관) → ❷ 수시 등록 신청 접수 및 자격요건(인력구성 및 수행실적 등) 검토·확인(위탁기관) → ❸ 컨설팅기관 수시 등록 적격성 검토결과 보고(위탁기관→공단본부) → ❹ 수시 등록기관 검토결과 통보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공단본부)

1-03 컨설턴트 교육 절차 및 내용

▶ 컨설턴트 사전교육

○ **(대상)** 매칭지원 참여 컨설팅기관의 컨설턴트

○ **(방법)** 온라인 비대면 영상교육 또는 교육용 동영상 제작·배포

※ 책자형/PDF 교재 배포(컨설턴트 수 이상)

○ **(주관)**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공단 본부)

○ **(교육일시)** 매월 2회(2, 4주차 수요일, 14:00~16:00) 예정

○ 교육일정 및 주요내용

시 간(120′)		목 차	교육내용
14:00~14:10	10′	인사말씀	
14:10 ~ 14:30	20′	매칭지원 사업의 이해와 절차	· 23년 매칭지원 사업 개요 · 세부지원내용, 컨설팅 수행 절차 등
14:30 ~ 14:50	20′	매칭지원 계획서 작성	· 컨설팅 비용, 투입일정 등 ·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등급 · 매칭지원 계획서 작성
15:00 ~ 15:10	10′	휴식	
15:10 ~ 15:25	15′	컨설팅 수행기준	· 과제별 컨설팅 수행내용 · 수행일지 작성법, 중간이행 모니터링 기준 · 만족도 조사(중간/최종 컨설팅수행, 사업개선) 등
15:25 ~ 15:30	15′	수행완료 보고서 작성	· 완료 보고서 평가 기준 · 우수사례 발굴, 인센티브 등
15:30 ~ 15:40	10′	정산 및 사업비 지급	· 컨설팅 비용 정산기준 · 사업비 지급 방법 등
15:40 ~ 15:50	10′	주요 유의사항	
15:50 ~ 16:00	10′	질의 및 응답	

○ 교육 절차

❶ 매칭지원 계획서 송부(공단 광역본부 등→위탁기관) → ❷ 컨설팅기관에 대한 교육안내(위탁기관→컨설팅기관) → ❸ 교육실시(위탁기관, 공단본부) → ❹ 교육실시 결과 보고(위탁기관→공단본부, 광역본부 등)

2-01 컨설팅기관 선정

▶ 컨설팅기관의 선정

○ 모기업이 공단 『컨설팅기관 풀(Pool)*』에서 자율 선정

* 컨설팅기관 풀(Pool) 구성 및 운영(1-01) 참고

- 사업공고 시 컨설팅기관 풀(Pool) 구성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단계부터 컨설팅기관 관련 정보를 조기 제공

《 컨설팅기관(컨설턴트) 역할(수행사항) 》

①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의 컨설턴트 교육 참여
② 모기업의 매칭지원 계획서 작성 지원
③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팅 수행(단계별* 컨설팅 보고서, 수행일지 등 작성)
* 실태 컨설팅→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확인 컨설팅
④ 컨설팅 수행완료 보고서 작성 지원
⑤ 상생협력활동 우수사례 발굴·협조 등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서 작성 기준

① 컨설팅 과제

○ 모기업과 컨설팅기관이 협의하여 지원기업 업종 및 수준을 고려, 지원 분야 및 컨설턴트 투입 규모, 수행기간 등 자율 설계*

* 매칭지원 계획 수립(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지원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진단 필요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계획 상 실태 컨설팅 소요일수에 포함 가능. 단, 지원계획 심사 결과 미승인(탈락)시 현장방문 진단 수행에 따른 사업비 미지급

(1단계) 컨설팅 과제 선정	
◇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o 산업안전분야 o 산업보건분야
◇ **안전관리 역량 향상**	o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중처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의식 확산**	o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각 과제별 포함)

⇩

(2단계) 컨설팅 절차별 컨설턴트 투입계획 수립 (총 소요비용 산정)		
1 **실태 컨설팅**	컨설턴트 투입[1),2)]	o 등급 × 인원(2인1조) × 일수(3~5일)
2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 - CEO인식개선 -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강사 투입[3)]	o 등급 × 시간(최대 2시간/회) ※ **(50인 미만) 협력업체 당 최대 2회 이내** **(단, 관리감독자 이상(관리자,CEO 등) 50%이상 참석)** ※ **(50인 이상) 협력업체 당 최대 3회 이내** **(단, 관리감독자 이상(관리자,CEO 등) 30%이상 참석)**
3 **확인 컨설팅**	컨설턴트 투입	o 등급 × 인원(2인1조) × 일수(2~3일)

※ **컨설턴트 투입 기준 특례(**컨설턴트가 "기술사 또는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명 투입 가능)
- 실태 컨설팅 : 1인 × 5~8일, 확인컨설팅 : 1인 × 3~4일 실시 가능
  * 컨설턴트를 2인1조로 구성시에는 상기 표의 기준 적용

※ **협력업체 당 컨설팅 소요비용 :** 인원 × 투입일수 × 컨설턴트 등급별 단가(컨설턴트 등급 기준표 참조)

※ **컨설팅 수행기간은 3월 ~ 10월까지 약 8개월 한도 내 설정**(~11.10까지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2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과제별 각각 실시**(2개 이상 과제 또는 2개사 이상 통합교육 불가)

※ **투입계획 수립 기준**
1) 컨설팅 1회 당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의 "고급기술자" 등급 이상 1인 필수 참여
2) 컨설팅 1회(1일) 컨설턴트 투입시간 : 5시간 기준(1개소)
3) 교육 강사는 반드시 "실태 컨설팅" 참여 컨설턴트 중에서 지정

②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선정과제)

○ 모기업이 참여기업(협력업체 등)과 협의하여 컨설팅 과제 이외 안전보건 활동 또는 안전보건물품 지원 등 자율 설계

(1단계) 안전보건 활동 과제 선정	
1.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o 컨소시엄 별 추진 주제, 장소 및 대상 등 선정
2. 안전보건 캠페인	o 컨소시엄 별 추진 내용, 장소, 참석자 등 선정
3. 안전보건물품 구매 지원	o 협력업체 별 지원 품목 및 범위 등 선정
4. 안전보건 자료 제작·배포	o 컨소시엄(협력업체) 별 제작 내용 및 범위 등 선정
5.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	o 협력업체 별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과정 등 선정
6.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전용 프로그램 S/W(플랫폼) 구축·운영	o 프로그램 S/W(플랫폼) 종류, 설치범위, 운영비용 등 선정
7. 기타(상기 1~5 외에 안전보건 활동)	o 활동과제명, 추진내용, 참석대상 등 선정

⇩

(2단계) 활동과제 세부내역 작성(추정액 산정)	
1 **활동과제명**	모기업이 선정한 활동과제명 기입(상기 1~6번)
2 **실시시기**	선정한 활동과제에 대한 추진일정(장소 등) 기입
3 **추진내용**	선정과제에 대한 주요 활동 주제 등 기입
4 **지원품목**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품목 및 안전보건물품 등 기입
5 **참여 협력업체 수**	활동과제 참여 협력업체수 및 근로자수 기입
6 **산출내역**	소요 비용에 대한 **추정금액**을 기입
7 **기타**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 안전보건 활동과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소요비용 추정금액은 모기업에서 제출한 내역으로 결정(별도의 적성성 검토(산출) 불필요)]

※ **(수행완료 심사위원회)** 안전보건 활동과제 수행의 적정성 및 소요비용을 모기업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등으로 평가하여 최종 사업비 정산 실시

▶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별 세부내용

구분	지원분야		세부내용
위험성 평가 실행력 강화	산업 안전 분야	기본과제 위험성평가 기법의전수	○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실행력 향상**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방법 등 - 위험성평가 적정성에 대한 현장 확인 -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사용법 및 시현 - 위험성평가 연계 TBM 활용법 등
		자율과제 3대사고유형·8대위험요인	○ **협력업체** 중대재해 **취약분야(3대사고 유형・8대요인)** 중점으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지원 - 추락사다리・지붕・고소작업대・비계, 끼임방호장치・LOTO,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자율과제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폭발위험(인화성・분진 등) 장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개선대책 제시(폭발위험장소 구분 등) - ① 공정설계도서 파악 ② 공정조사(누출원의 종류, 수, 위치) ③ 누출원 계산 ④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⑤ 방폭 전기기기 선정 및 관리 ⑥ 폭발위험장소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산업 보건 분야	자율과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화학물질(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 - ① 공정선정 ②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③ 노출수준 빈도 결정 ④ 유해성 강도 결정 ⑤ 위험성 계산・결정 ⑥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⑦ 예방조치 실행 등
		자율과제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①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②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기본조사표(공정별) ③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설문지) ④ 유해요인조사 증상조사표(통계) ⑤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작성 ⑥ 작업환경 개선 실시 ⑦ 유해성 주지(교육) 및 조사방법 교육 등
		자율과제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 **사업장 내 밀폐공간 조사, 유해가스 측정** 등 - ① 밀폐공간 조사 ② 밀폐공간프로그램 수립절차 ③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④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대책 ⑤ 보호구 ⑥ 밀폐공간 표지부착 및 교육 등
안전관리 역량향상	자율과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 중심의 체계구축 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요소 *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③ 경영자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안전의식 확산	각 과제별 포함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 CEO 인식개선,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근로자 위험 인지 향상 등

▶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

○ 컨설팅 소요비용 = 투입일수 × 투입컨설턴트 등급별 단가

※ `22년 엔니지니어링 노임단가(기타분야) 기준 적용(1인, 1일 기준)/교육은 1시간 기준

○ 컨설턴트(강사) 등급 및 자격기준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지원단가(원) (부가세 포함)
현장 점검 및 컨설팅	기술사	・**관련분야 기술사*·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 * 기계, 전기, 화공, 인간공학, 안전분야, 보건분야 등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800,000
	특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650,000
	고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간호사**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60,000
	중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50,000
	초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00,000
교육	(가)군	・ 박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300,000
	(나)군	・ 그 외		240,000

※ 출장여비 추가 계상 : 관내(2만원), 관외(8만원)/ 공단 예산 편성시의 기준 적용
- 컨설팅기관 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관내·관외 판단

▶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선정과제) 세부내용

*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 이외에 모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안전보건 활동과제
(사업비 정산 : 총 소요비용의 50%를 공단 → 모기업에 정산·입금 예정)

1.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7개) 관련 , ② 산안법 및 중대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2) 대상 : 사업 참여 모기업 및 지원기업* CEO, 근로자 등
   * 지원기업 : 사내·외 협력업체 및 미거래 지역 중소기업
3) 예산지원 범위 : ① 장소 임차료, ② 참석자 식대(1일 최대 3식), ③ 출장 여비, ④ 강사료, ⑤ 안전보건 홍보물(참석자 당 1개), ⑥ 세미나 물품(현수막, 다과, 발표용 프로젝트 일체(임차), 필기류 등) 등

2. 안전보건 캠페인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7개) 관련, ②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관련 등
2) 대상 : 사업 참여 모기업 및 지원기업 CEO, 근로자 등
3) 예산지원 범위 : ① 참석자 식대(1일 최대 2식), ② 캠페인 필요 물품(현수막, 피켓 등) 등

3. 안전보건 물품(지원한도 : 1유형 매칭비용 총액의 50%, 최종 확정금액에 따라 조정)

※ 안전보건물품 단일항목 신청 시 정부지원금 한도액 : 5천만원

(지원품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①항3호에 따른 개인보호구(안전인증 대상품) 등
   ①안전모, ②안전화, ③안전장갑, ④방진마스크, ⑤방독마스크, ⑥송기(送氣) 마스크, ⑦전동식 호흡보호구, ⑧보호복, ⑨안전대, ⑩보안경, ⑪용접용 보안면, ⑫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⑬폭염대비 예방물품(쿨-키트), ⑭방한키트
2) ①자동제세동기(AED), ②가스농도측정기, ③산소농도측정기, ④공기치환용 환기팬, ⑤검전기, ⑥접지저항측정기, ⑦절연저항측정기, ⑧클램프미터, ⑨만능회로측정기, ⑩열화상카메라, ⑪누전차단시험기, ⑫소음측정기, ⑬혈압계, ⑭조도계, ⑮위험물보관저장설비, ⑯지게차 안전장치,
3) 안전보건표지(스티커 등), 소화기, 비상용 응급구조키트(구급함) 등

(지원대상) 사업 참여 지원기업 및 근로자(모기업 제외)

(예산지원 범위)

○ 지원품목 1) : ❶소모품(방진마스크, 보호복)의 경우 근로자 1명 당 3개월 수량(60개 내외), ❷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은 근로자 1명 당 1개 (단, 쿨-키트 및 방한키트는 근로자 1명당 5개 이하), ❸그 외 품목은 필요 작업조건(공정별)에 따라 근로자 1명당 1개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 지원품목 2) : 지원기업 당 1대
- 단, 고정설치형의 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측정기, 공기치환용 환기팬, 위험물보관저장설비는 필요공정 수량만큼 지원하되, 지원기업 당 최대 3대 이하 – 공정개요 설명서 등 관련자료 제출
- 근로자 개인 휴대형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는 필요 근로자수 만큼 지원 –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 지게차 안전장치
  ▲(지원기준) 자가 소유, 지게차 등록증 및 차대번호 확인 설비(임대 지게차 제외)
  ▲(지원대상) ①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케빈 등), ②운적석안전벨트(연동장치 포함),
  ▲(지원수량) 지원기업 보유 대수

○ 지원품목 3) : 지원기업 당 필요수량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7개) 관련 , ② 산안법 및 중대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2) 제작범위 : 사업 참여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모기업 제외)
3) 예산지원범위 : 자료 제작·배포 비용 등

5.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7개) 관련, ② 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등
2)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지원기업 CEO, 부서장급 이상 또는 관리감독자(또는 이에 준하는 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모기업 제외)
3) 예산지원범위 : ① 교육비, ② 교육출장 여비 등

6.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전용 프로그램 S/W(플랫폼) 구축·운영

1) 주제 : 산안법 및 중대법 관련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 등
2) 대상 : 사업 참여 협력업체 등(지역 중소기업 포함)

7. 안전보건진단 ※진단의 종류 : 별첨1 참고

1) 주제 :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
2) 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3) 중복지원제외 : ①안전분야 또는 체계구축 컨설팅과제 참여 시 → 종합진단, 안전진단 참여 불가
   ②보건분야 컨설팅과제 참여 시 → 종합진단, 보건진단 참여 불가
4) 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분야 제외)
5) 매칭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안전보건진단 추진계획(내용, 일정, 참여 진단기관 등 자율양식)

8. 근로자 휴게시설

1) 지원종류(TYPE) :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

※ 지원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별첨2 참고)를 충족**하여야 함

2) 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 등(지역 중소기업 포함)

3) 매칭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설치계획(설치 예정 장소 명단 및 주소, 내부 구성품목 등 자율 양식)
- 지원기업의 공정별 근로자수 현황

9.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1) 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 등(지역 중소기업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별표21「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보유 사업장에 한함

2) 측정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10. 기타(상기 과제·물품 외)

1) 지원결정 :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및 물품

2) 기타 :

-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지원 범위 및 사업비 정산 제출 자료 등 통보(공단→신청 모기업)
- 상기 1~5번 활동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활동수행에 필요한 사항(항목)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승인내역에 따른 추진 결과 및 예산관련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교육 이수증,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 제출

- 단, 안전보건물품의 경우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물품의 해당 협력업체 불출 사진 및 수령증 제출(일부 품목은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공정개요 설명서 등 관련자료 포함 제출)

※ 부가세는 기업의 매입·매출세액 환급에 따라 지원금에서 제외함

▶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 선정과제) 지원단가 산정기준

1.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1) 예산지원 범위 : ① 장소 임차료, ② 참석자 식대, ③ 출장 여비 , ④ 강사료, ⑤ 안전보건 홍보물, ⑥ 세미나 물품(현수막, 다과, 발표용 프로젝트 일체(임차), 필기류 등) 등

2) 지원단가

① 장소 임차료 : 시간당 최대 300,000원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 기준)

② 참석자 식대(1일 최대 3식) : 최대 1.5만원 /1인, 1식

③ 출장 여비(교통비, 숙박비) :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름

※ ❶교통비는 자차를 이용하더라도 KTX 등 대중교통 운임 적용, ❷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을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상한액의 30% 가산 가능

*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100,000원), 광역시(80,000원), 기타지역(70,000원)

④ 강사료 :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에 따른 교육강사 단가 기준 준용

⑤ 안전보건 홍보물(참석자 당 1개) : 1개당 최대 20,000원

⑥ 세미나 물품 등 : 실비 정산(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2. 안전보건 캠페인

1) 예산지원 범위 : ① 참석자 식대, ② 캠페인 필요 물품(현수막, 피켓 등) 등

2) 지원단가

① 참석자 식대(1일 최대 2식) : 최대 1.5만원 /1인, 1식

② 캠페인 필요 물품(현수막, 피켓 등) 등 : 실비 정산(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3. 안전보건 물품(지원한도 : 1유형 매칭비용 총액의 50%, 최종 확정금액에 따라 조정)

※ 안전보건물품 단일항목 신청 시 정부지원금 한도액 : 5천만원

<아래 중 1가지의 방법으로 지원금액 적용>

1) 실거래 세금계산서에 의한 지원금액 산정

- 실거래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거래비용 적용**(일반세금계산서 적용 불가)**

2) 물가정보자료 또는 조달청 조달등록 가격에 의한 지원금액 산정

- 실제 구매한 물품과 동일한 규격의 물가정보자료 또는 조달등록가격 자료 적용

3) 시장가격 조사에 의한 지원금액 산정(부가세 포함)

- 온라인 시장 판매가격 등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을 확인하여 지원 단가 인정
  · (조사방법)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인터넷 검색(모델명, 품목종류, 제조사 등)

㉮ 4개 이상 검색되는 경우,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가격 적용

㉯ 3개 이하 검색되는 경우, 평균가격 적용

㉰ 조사가격이 1개인 경우, 조사가격 적용

▶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 선정과제) 지원단가 산정기준

4.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

1) 예산지원 범위 : ① 교육비, ② 교육출장 여비 등

2) 지원단가

① 교육비 : 교육생 1명 당 1백만원 한도(고용보험 환급과정의 경우, 환급액을 제외한 실 소요비용)

② 교육출장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름

※ ❶(교통비) 자차를 이용하더라도 KTX 등 대중교통 운임 적용, ❷(식비) 25,000원/1인, 1일, ❸(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상한액의 30% 가산 가능

*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100,000원), 광역시(80,000원), 기타지역(70,000원)

5.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1) 예산지원 범위 : ① 자료 제작비, ② 자료 배송비 등

2) 지원단가 : 실비 정산(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 배송비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시 별도 계상

6.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전용 프로그램 S/W(플랫폼) 구축·운영(1식)

1) 예산지원 범위 : ①프로그램 S/W(플랫폼) 구입, ②프로그램 S/W(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서버구입, ③프로그램 S/W(플랫폼) 설치, ④프로그램 S/W(플랫폼) 운영비용*(예: 월 사용료)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월 까지의 운영비용)

2) 지원단가 : 3번항목의 안전보건 물품 지원단가 산정기준 적용

7. 안전보건진단

1) 예산지원 범위 및 단가 : ❶공단(내부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 지침" 적용), ❷민간진단기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적용*)

* 적용항목 : ①직접인건비**, ②직접경비, ③제경비, ④기술료

** 적용분야 노임단가 : 기타엔지니어링사업 분야

2) 진단일수 및 진단반 : 공단 지침에 따른 최소 진단 M/D 와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 참여일수 이상

3) 수행완료 보고 시 제출서류 : 진단보고서

8. 근로자 휴게시설

1) 예산지원 범위 : 휴게실 및 냉·난방기 등 휴게시설 품목

2) 지원한도 : **<u>휴게시설 1대당 최대 3천만원 한도</u>**(공단 지원금과 모기업 분담금의 총액 기준)

※ 지원 대수는 지원 기업의 근로자수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 선정과제) 지원단가 산정기준

3) 지원단가 : 지원기준(별첨3) 참조

4) 제출서류 : 지원기준(별첨3) 참조

9.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1) 예산지원범위 : 작업환경측정 소요 비용

2) 중복제외 : 참여기업 중 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작업환경측정분야)"지원사업장은 지원제외

3) 수행완료 보고 시 제출서류 :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 수행완료 보고 시 작업환경측정의 적정성 확인* 후 지원금액 최종 결정(측정결과의 확인 방법과 금액 정산은 건강디딤돌 사업의 기준을 준용)

* 적정성 확인은 수행완료 심사위원회 상정 전 일선기관별 산업보건센터에 검토 협조 요청

10. 기타(상기 과제·물품 외)

1) 예산지원 범위 :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2) 지원단가 및 제출서류 등 :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 안전보건 활동과제 중 세미나, 캠페인 등은 공단 또는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에서 샘플링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방법 : 임차료, 식대 등의 지원가격 적정성을 현장방문하여 확인

※ 실비 정산 및 지원단가의 상한이 정해져 있더라도 소요비용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등)가 제출되어야 함

- 소요비용 증빙자료(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가 없을 경우, 사업비 미인정을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최저가, 물가정보자료, 조달가격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별첨 1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진단 내용

종 류	진 단 내 용
종 합 진 단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 예방조치의 적정성 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다.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라.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 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자.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차.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안전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제4호 내지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및 제8호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제4호.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및 제6호 내지 제8호

별첨 1-1 안전보건진단 최소 진단일수(M/D)

종합진단 최소 진단일수(M/D)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MD = 50 + \frac{근로자수 - 50}{20}$	$MD = 40 + \frac{근로자수 - 40}{30}$	$MD = 30 + \frac{근로자수 - 30}{40}$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 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사 업 종 류	
고위험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별첨 1-2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인쇄・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별첨 2 휴게실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 근로자 휴게실(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

[예시]

- **(최대지원한도)** : 100만원/1㎡ (바닥면적 기준)
- **(수량)** 제한없음(단,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
- **(지원조건)** 사업장 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충족**

□ **지원 기준**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으로 함
- 별도의 배송.설치비가 소요되는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금액을 매칭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가능(수행완료 보고 시 확인)
- 화장실, 샤워실,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
- 건축법,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인허가 등)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에는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원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

□ **수행완료 보고 시 제출서류**

- **❶예산집행 증빙자료**(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❷상품상세정보**(카달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❸설치완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❹휴게시설 설치완료 점검 확인서**(별지 서식2, 휴게실 지원조건의 충족여부를 모기업에서 확인·서명하여 제출)

■ 휴게시설 비품.설비

① 냉.난방기(벽걸이 및 스탠드형)

[예시]

- **(최대지원한도)** : 200만원/1EA
- **(수량) 휴게실 당 1대**로 제한
- **(지원조건)** 적정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이동식 제외)

※ 온·습도 확인이 불가한 제품일 경우 온·습도계 개별 설치

□ **지원 기준**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실내기, 실외기 및 배송·설치비용 포함 가격(미 포함 시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 할 경우 인정)**

□ **수행완료 보고 시 제출서류**

- **❶예산집행 증빙자료**(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❷상품상세정보**(카달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❸설치완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등 제출, **❹휴게시설 설치완료 점검 확인서**(별지 서식2, 휴게실 지원조건의 충족여부를 모기업에서 확인·서명하여 제출)

② 쇼파(의자) [근로자 휴게용]

[예시]

- **(최대지원한도)** : 50만원/1인용
- **(수량)** 휴게실 면적과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배치도 확인)

□ **지원 기준**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별도 배송비가 소요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수행완료 보고 시 제출서류**

- **❶예산집행 증빙자료**(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❷상품상세정보**(카달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❸설치완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등 제출, **❹휴게시설 설치완료 점검 확인서**(별지 서식2, 휴게실 지원조건의 충족여부를 모기업에서 확인·서명하여 제출)

■ 휴게시설 비품.설비

③ 테이블 [근로자 휴게용]

[예시]

- **(최대지원한도)** : 100만원/1EA
- **(수량)** 휴게실 면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배치도 확인)

□ 지원 기준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별도 배송비가 소요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수행완료 보고 시 제출서류

- **❶예산집행 증빙자료**(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❷상품상세정보**(카달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❸설치완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등 제출, **❹휴게시설 설치완료 점검 확인서**(별지 서식2, 휴게실 지원조건의 충족여부를 모기업에서 확인·서명하여 제출)

▶ 매칭지원 참여 신청 및 계획서 제출

○ **(제출대상)** 상생협력사업 참여 모기업 중 매칭지원 희망 기업

○ **(제 출 처)** 공단 광역본부 등 안전보건체계지원부

※ (권장) "광역본부 등"은 업무용 공용 이메일을 개설하고 그 내용을 "모기업", "컨설팅기관",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등에 안내 → 개설한 업무용 이메일을 통한 업무처리 및 정보 공유

○ **(제출시기)** 상생협력사업 대상 선정 이후 수시

○ **(제출서류)** 매칭지원 참여 신청서(서식2) 및 첨부서류*

* ①개인정보 동의서(모기업,컨설팅기관)(서식2-1,3-3) 각 1부, ②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서(서식3) 1부, ③매칭지원 참여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현황(서식3-1,3-2) 각1부, ④사업자등록증 사본(모기업,지원기업) 각 1부, ④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모기업,지원기업) 각 1부, ⑤산재보험 완납 증명원(모기업,지원기업) 각 1부

○ **(접수방법)** 방문, 우편 또는 E-mail 신청

○ **접수 및 문의처**

- **(일선기관)**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안전보건체계지원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광역본부	02-6711-2965 gudrms89@kosha.or.kr	(우 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봉래동, 우리빌딩)7층
부산광역본부	051-520-0531 pdong@kosha.or.kr	(우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4층
광주광역본부	062-949-8745 dhkim8889@kosha.or.kr	(우 6236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무역회관 9층)
대구광역본부	053-609-0524 jsh@kosha.or.kr	(우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1층
인천광역본부	032-5100-608 kys@kosha.or.kr	(우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15 brainers@kosha.or.kr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2층
경기지역본부	031-259-7172 paran44@kosha.or.kr	(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7층

- **(본부)** 산업안전실 자율안전사업부 : 052-7030-631,633

3-01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 사전검토

▶ **매칭지원 계획서 사전검토**

○ **(검토 요청)** "광역본부 등"이 "매칭지원 위탁기관"에 사전검토 요청
↳ 신청서류는 "광역본부 등"이 원본을 접수·보관하고 "위탁기관"에는 사본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제공

※ 2유형 참여 사내 협력업체의 경우 공단 ERP 상의 근로자수(고용보험 기준) 확인 화면 포함 송부

○ **(검토결과 송부)** "위탁기관"은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아래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광역본부 등"에 "지원계획 사전검토 결과서(서식4) 송부(※송부일은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계획서 사전검토 사항 》

<공통>
① 모기업에서 제출한 지원기업의 적격 여부 확인
※ 지원대상 요건(상시근로자수, 지원제외 대상 등), 지원기업의 형태(사내, 사외, 지역중소기업) 및 매칭지원 유형별 지원 대상 등
② 컨설팅 총 소요비용의 적정성(지원한도 준수 등) 확인 등

<컨설팅 과제>
① 투입 컨설턴트 등급 및 등급별 단가의 적정 여부 확인
② 컨설턴트 투입 기준(등급, 지원 횟수, 컨설팅 수행절차, 교육실시 기준 등) 준수 여부 확인

<안전보건 활동과제>
① 활동과제의 주제, 대상 등 지원 적정성 여부
② 활동과제의 지원품목 및 내역 적정성 여부 등(추정가격에 대한 검토는 제외)

▶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 상정(8-01)**

○ "광역본부 등"은 "위탁기관"에서 제출한 "사전검토 결과서" 내용 확인 및 매칭지원 계획을 심사위원회에 상정

○ **매칭지원 계획 사전검토 및 심사위원회 절차**

❶ 신청서 및 지원계획서 제출(모기업→광역본부 등) → ❷ 제출서류 접수 및 검토 요청(광역본부 등→위탁기관) → ❸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검토 결과서 송부(위탁기관→광역본부 등) → ❹ 심사위원회 상정 및 지원기업 선정(광역본부 등) → ❺ 지원기업 선정결과 통보(광역본부 등→모기업)

3-02 상생협력활동 매칭 지원기업(모기업) 선정 · 통보

▶ **심사위원회 결정 및 지원기업(대상 모기업) 선정**

○ **(지원기업 선정)** 매칭지원 계획서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의 지원내용을 심의·결정

* 신청서(지원계획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칭지원 계획의 적정성 결정(심사위원회는 광역본부 등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

※ 모기업 사정으로 심의 연기를 요청 시 1회에 한해 차기 심의일정으로 연기 가능

-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 규칙』 제7조 ②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 심의 결과에 따라,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 승인 및 지원기업(모기업)"을 선정

※ 매칭지원 계획 소요비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심사위원에게 사전검토 결과를 제공**

○ **(선정통보)** "매칭지원 계획서 승인 및 지원기업 선정" 통보(광역본부 등 → 모기업)

- 지원기업(모기업)명, 심의 결과, 지원내역 및 결정금액 등

○ **(사업예산 초과 시의 조치사항)** 권역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 권역 배정 예산을 추가 배정(필요 시, 별도 지침 마련 시행)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 승인 및 지원기업 공문(예시)

사고사망 ZERO 부정부패 ZERO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은 권리입니다

수신자
(경유)
제목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승인 알림

1. 관련
   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시험운영 참여 안내』(서비스재해예방부-652, 2022.10.7.)
   나. 『2022년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시험운영 참여 신청서』(롯데쇼핑㈜롯데마트중계점, 2022.10.12.)

2. 위 관련하여 귀 사에서 제출하신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의결과(`22.10.14)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22.10.25(화)까지 협약서(안) 및 수행계획서에 대하여 수정 ·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구분	신청내역	심의결과	권고사항
추진 과제	① 협력업체 작업환경컨설팅 ② CEO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지원	승 인	① 참여 협력업체 추가 (미화, 식당, 파지압축) ※ 추가 비용 발생 시 모기업에서 부담 ②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명확화 및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추가 실시 ③ CEO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시 중처법, 산안법, 화관법 등 사업주 의무 포함 교육 실시
수행 예산	2,420,000원	승 인 (좌동)	-

붙임 :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시험운영 협약서(안) 1부. 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차장 정민찬 서비스재해예방부전결 10/21
팀장 이승욱
협조자
고객결재
시행 서비스재해예방부-696 (2022. 10. 21.) 접수 ( )

우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성안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http://www.kosha.or.kr
전화 052-7030-632 /전송 052-7030-314 / jmch94@kosha.or.kr / 공개
대표번호 052)703-0500 1644-4544 http://www.kosha.or.kr /고객참여
○ 공단 업무 관련 인권침해, 갑질,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신고(전화 052-2458-114, 공단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

▶ 협약체결

○ **(체결시기)** 매칭지원 기업 선정 통보일 이후

○ **(체결서류)**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협약서(서식6) 및 첨부서류*

* ①협약일반조건(서식6-첨부1) 1부, ②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계획서(서식3) 1부, ③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운영 매뉴얼(공단본부에서 책자형태로 일괄 제공 예정), ④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⑤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컨설팅기관), ⑥사용인감계(필요시, 컨설팅기관) 1부, ⑦수입인지(컨설팅기관)

**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은 계약금액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계약일~계약종료일 이후로 함

○ **(협약대상)** 공단 - 모기업 - 컨설팅기관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10월 30일 이내(협약기간 내, 연장 1회 가능)

○ **(컨설팅)** 컨설팅기관은 협약체결 후 지원계획에 따라 즉시 컨설팅 실시

▶ 착수금(선금) 지급(컨설팅기관 요청 시, 협약체결 이후 신청 가능)

○ **(착수금(선금) 지급 범위)** 컨설팅 과제(안전보건 활동과제 제외)

- 모기업과 공단은 각각 40%(하반기는 35%)까지 선금 지급 가능

○ **착수금(선금) 지급 요청 시 제출서류**

① 착수금(선금)지급 요청서(서식7)	④ 세금계산서(청구용)
② 선금 보증보험증권	⑤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4대보험 완납증명원	⑥ 입금통장 사본

※ 선금 금액은 **천원미만 절사**

※ 컨설팅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선금 신청은 희망하는 컨설팅기관 각각 신청

○ **착수금(선금) 신청 및 지급 절차**

❶ 착수금(선금) 지급 신청(컨설팅기관→모기업, 광역본부 등) → ❷ 지급 신청 접수(모기업, 광역본부 등) → ❸ 착수금(선금) 지급(광역본부 등, 모기업→컨설팅기관)

※ [참고] 선금 지급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필요

4-01 협약체결 및 착수금(선금) 지급

○ 착수금(선금) 지급 시 주의사항

① 선금 보증보험증권 확인

- (보험금액) 선금액 보증 또는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보증보험사 자동계산)
- (보험기간) 개시일(선금지급일 이전)~종료일(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

  * (예) 계약종료일(2023.10.30.)인 경우 : [2023.10.30. + 60일이상 = 2023.12.29. 이후]
- (계약명칭) 「매칭지원 협약서」 명칭과 동일하게 작성

② 4대보험 납부사실 확인

- 개인사업장 대표는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 증명서 제출
-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납부 증명서 제출
- 납부 증명서 발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기일(매월 10일)을 경과하면 효력 상실
  - 2023. 3. 10일에 발급된 납부 증명서 → 2023. 3. 10일까지 유효
  - 2023. 3. 11일에 발급된 납부 증명서 → 2023. 4. 10일까지 유효

③ 세금계산서

- 지급금액 : 공급가액 및 부가세* 포함 (*면세기관 해당없음)

④ 기타서류(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입금통장 사본)

- 발행일 확인 : 유효기간 이내(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여부 확인 등

4-02 협약의 해지 등

▶ 협약 해지 등의 조건

○ "광역본부 등"은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정산은 "협약서 일반조건"에 따름

- "컨설팅기관"이 컨설팅 사업 수행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사실 내용 확인 후 즉시 해지)

  ※ 상기 사유로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사업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협약서 일반조건"에 따라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공단)"의 이행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당 컨설팅기관에 1차 경고 등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 1차 경고* 이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심의위원회(광역본부 등)를 개최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이행 모니터링 실시 결과 사업 추진이 상당히 부실한 경우 등

○ 명백하게 부당한 이유로 계약 해지를 발생시킨 "컨설팅기관"은 향후 "공단"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 제한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컨설팅 실시 기준**

○ **(컨설팅 기준)** 실태 컨설팅(2명×3~5일), 확인 컨설팅(2명×2~3일)

- 컨설팅 1회(1일) 기준 투입시간은 협력업체 1개소 당 5시간 이상

○ **(컨설턴트 기준)**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2-02)』의 기준 적용

- 컨설팅은 "고급기술자" 등급 이상 1인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교육 기준)** "실태 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를 교육 강사 필수 지정

- ▲**(50인 미만)**협력업체 당 최대 2회 이내(단, 관리감독자(관리자, CEO 등) 50% 이상 참석), ▲**(50인 이상)** 협력업체 당 최대 3회 이내(단, 관리감독자(관리자, CEO 등) 30%이상 참석)

-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과제별 각각 실시(2개 이상 과제 또는 2개사 이상 통합교육 불가)

○ **(컨설팅 보고서 양식)** 각 과제별 컨설팅 보고서(양식)은 공단 본부에서 작성·제공

▶ **주요 컨설팅 내용**

○ **(컨설팅 중점)** 컨설팅 과제별 세부내용(2-02)에 따라 참여 협력업체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중점 실시

- "매칭지원 계획서"에 따라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제시

  * 각 컨설팅 과제별 경영층(CEO 등) 면담(강평 포함)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컨설팅 보고서 총평부분에 기입

- 매칭 컨설팅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실시로 재해예방에 기여

○ **(교육연계)**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은 컨설팅 과제와 내용적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경영층(CEO 등),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재정지원 연계)** 위험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시 공단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토록 안내

  * 고위험요인 시설개선(클린), 안전투자 혁신, 건강일터 조성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확산, 융자금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함을 안내(안내 리플렛 등 제공)

○ **(자료보급 등 지원)**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고사망·중상해 재해예방 등 안전보건자료 제작·보급

○ **(상생협력활동 우수사례 발굴)** 컨설팅 지원 사업장 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우수사례 발굴 적극 협조

▶ **실태 컨설팅**

○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의 컨설팅 과제별 유해·위험요인 발굴,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시

▶ **확인 컨설팅**

○ 실태 컨설팅에서 제시된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완료 상태 점검 및 추가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컨설팅 실시

  * 실태 컨설팅 및 추가 위험요인에 대한 재해예방 정보 제공 포함

▶ **컨설팅 결과물(보고서 등) 송부(컨설팅기관)**

○ **(컨설팅 보고서)** 컨설팅기관은 실태 및 확인 컨설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컨설팅 보고서(공단제공 양식), 관련자료 등을 **모기업 및 협력업체에 송부**

  ※ 컨설팅 보고서는 한글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송부 가능

○ **(컨설팅 결과물)** 컨설팅기관은 확인 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 수행일지(서식10-2), 교육실시 결과물* 및 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모기업에 제출**

  * (교육실시 결과물) ①교안(실태 컨설팅 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 ②방명록, ③교육실시 사진 등

- 컨설팅기관은 모기업의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서식10) 작성 시 컨설팅 과제 부분의 결과 작성 협조

▶ **컨설팅(1유형 추가선정과제 포함) 조기 착수(Quick Start)**

○ **(정상)**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 및 협약체결 이후 컨설팅 실시

○ **(Quick Start))**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 결정 전 컨설팅(1유형 추가선정과제 포함) 추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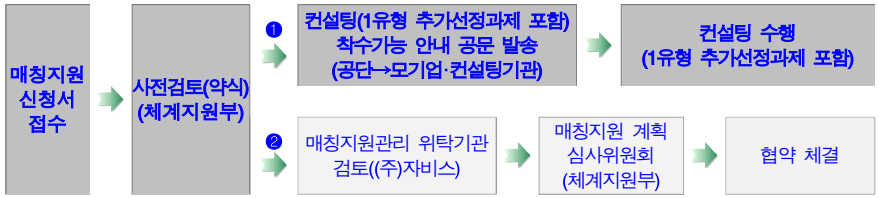

❶ **매칭지원 신청서(매칭지원 계획서 포함) 접수 후, 컨설팅(1유형 추가선정과제 포함) 실시 가능(심사위원회 사후 개최)**

❷ 심사위원회 결정 전 컨설팅(1유형 추가선정과제 포함) 착수에 따른, 계획서 검토 및 심사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병행 추진
↳ 매칭지원 금액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모기업·컨설팅 기관에 안내

※ (참고) 모기업/컨설팅기관 송부용 안내 문구

제목: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컨설팅 착수 가능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참여 신청(모기업 문서번호, 시행일 기재)과 관련하여, 귀 사에서 신청하신 매칭지원 계획에 따라 컨설팅 착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제출하신 매칭지원 계획의 컨설팅 소요비용은 심사위원회 승인 전 컨설팅이 실시되는 사유로 인하여, 향후 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최종 비용이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실태 컨설팅**

○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의 컨설팅 과제별 유해·위험요인 발굴,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시

▶ **확인 컨설팅**

○ 실태 컨설팅에서 제시된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완료 상태 점검 및 추가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컨설팅 실시

* 실태 컨설팅 및 추가 위험요인에 대한 재해예방 정보 제공 포함

▶ **컨설팅 결과물(보고서 등) 송부(컨설팅기관)**

○ **(컨설팅 보고서)** 컨설팅기관은 실태 및 확인 컨설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컨설팅 보고서(공단제공 양식), 관련자료 등을 **모기업 및 협력업체에 송부**

※ 컨설팅 보고서는 한글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송부 가능

○ **(컨설팅 결과물)** 컨설팅기관은 확인 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 수행일지(서식10-2), 교육실시 결과물* 및 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모기업에 제출**

* (교육실시 결과물) ①교안(실태 컨설팅 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 ②방명록, ③교육실시 사진 등

- 컨설팅기관은 모기업의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서식10) 작성 시 컨설팅 과제 부분의 결과 작성 협조

▶ **이행 모니터링**

○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은 실태 컨설팅 결과에 대한 현장 이행 모니터링* 실시

* 컨설팅기관의 실태 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

- **(대상)** 협력업체 300개소
- **(선정방법)** 매칭 컨설팅지원 참여 협력업체를 우선 선정하되, 컨설팅 지원 미참여 협력업체 후순위 선정(필요 시)

  ↳ 이행 모니터링은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되 필요 시* 공단(본부) 참여

  * 공단 이행 모니터링 대상 : 컨설팅 수행이 상당히 미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모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공단본부 수행)

- **(내용)** 실태 컨설팅 보고서 또는 모기업의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이행의 충실성 과 운영실태* 점검 및 수행 완료보고서 작성 컨설팅

  * 컨설팅 과제별 진행율, 지원 내용 및 자료 제공, 향후 계획 등

- **(권장 모니터링 시기)** ▲(매칭지원 컨설팅 참여) 실태 컨설팅(1단계) 및 인식개선 교육(2단계) 완료 후 실시, ▲(매칭지원 컨설팅 미참여)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약 3개월 경과 후 실시
- **(결과 보고)** 모니터링 완료 후 모니터링 실시 결과 요약 보고(위탁기관 → 공단 본부), 매칭지원관리 위탁용역 보고서에 모니터링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최종 결과 작성

  ※ 단, 컨설팅 수행이 상당히 미진하거나, 모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공단 모니터링 대상은 공단 본부에 즉시 보고

▶ **매칭지원 계획 변경 신청**

○ **(제출서류)**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변경요청서(서식9)

○ **(변경요청 내용)** 협약기간 연장, 컨설팅 지원분야, 컨설턴트 투입계획, 안전보건 활동과제 수행계획 변경 등

○ **(신청방법)** 변경사항 발생 시 "모기업"이 "광역본부 등"에 방문, 우편 또는 E-mail 로 제출

○ **(매칭지원 계획 사전검토 요청)** "광역본부 등"이 "매칭지원 위탁기관"에 사전검토 요청

↳ 신청서류는 "광역본부 등"이 원본을 접수·보관하고 "위탁기관"에는 사본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제공

○ **변경 내용 사전검토 및 검토결과서 송부**

-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은 매칭지원 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검토 요청일 기준 3일 이내 검토 결과서(지원계획 사전 검토결과서 양식 이용)를 "광역본부 등"에 송부

○ **(변경 승인 및 통보)** "광역본부 등"은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변경 내용에 대한 소요비용(협약금액) 등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모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통보

※ 협약기간 연장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 불필요

○ **매칭지원 계획 변경 절차**

❶ 매칭지원 계획 변경 신청(모기업→광역본부 등) → ❷ 변경내역 사전검토 요청(광역본부 등→위탁기관) → ❸검토결과 작성 및 송부(위탁기관→광역본부 등) → ❹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광역본부 등) → ❺ 심사결과 통보(광역본부 등→모기업)

6-01 매칭지원 계획의 변경

▶ **동등이상의 단순 변경의 경우**

○ **(적용의 범위)** 협약금액(지원사업 수행예산)의 변경 없는 동등 이상의 컨설턴트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①매칭지원 계획 변경 신청 공문, ②매칭지원 변경 요청서(서식9), ③매칭지원 계획서(수정본), ④변경 컨설턴트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⑤4대보험 가입명단

○ **(신청방법)** 변경사항 발생 시 "모기업" 이 "광역본부 등"에 방문, 우편 또는 E-mail 로 제출

○ **(변경내용 검토)** "광역본부 등"에서 매칭지원 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접수일 기준 3일 이내 검토 결과서(양식 참조)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 실시

- **(검토사항)** 변경 컨설턴트 등급의 적정성(컨설털트 등급별 지원단가 참조)

○ **(변경 승인 및 통보)** "광역본부 등"은 검토결과에 대한 승인 내용을 "모기업"과 "컨설팅 기관"(공문),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이메일)에 통보

⇒ **심사위원회 심의 불필요**

○ **(서류편철)** 최초 작성된 협약서 와 매칭지원 계획서 다음에 변경승인 공문과 매칭지원 계획서 일체를 편철(이력관리 추진)

7-01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23. 11. 10(금)까지

① **컨설팅 과제**

○ **(보고서 제출)** 컨설팅 및 안전보건 활동과제 수행 완료 시 모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이 "광역본부 등"에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컨설팅기관은 수행완료 보고서의 컨설팅 과제 관련 수행결과를 작성한 후 모기업에 제출

○ **(제출시기)** 확인 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협약기간 내 제출)

※ 모기업의 요청에 의해 1회에 한해 7일 이내 연장 가능

○ **(제출서류)** 수행완료 보고서(서식10) 및 첨부서류*

* ①매칭지원 수행완료 확인서(서식10-1) 1부, ②매칭지원 수행일지(서식10-2) 1부, ③매칭지원 수행 정산자료(서식10-3) 1부④컨설팅 결과 보고서 및 교육 실시 자료(한글파일, PPT, PDF 등 자유로운 형태로 첨부) 각 1부

② **안전보건 활동과제**

○ **(보고서 제출)** 안전보건 활동과제 수행완료 시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안전보건 활동과제 수행 결과는 활동을 수행한 모기업에서 작성

○ **(제출시기)** 안전보건 활동과제 수행 완료 후 15일 이내

※ 컨설팅 과제가 함께 있을 경우, 모든 과제의 수행 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 모기업의 요청에 의해 1회에 한해 7일 이내 연장 가능

○ **(제출서류)** 안전보건 활동과제 수행결과* 및 소요비용 증빙자료**

* 세미나, 캠페인, 제작·배포한 안전보건자료 등의 결과물(자료집, 배포내역, 사진 등)

** 2-02(안전보건 활동과제 지원단가 산정기준)에 근거한 소요비용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포함)

7-01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수행완료 보고서 사전 검토**

○ **(검토 요청)** "광역본부 등"이 "위탁기관"에 보고서 사전검토 요청

↳ 완료서류는 "광역본부 등"이 원본을 접수·보관하고 "위탁기관"에는 사본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제공

○ **(검토결과 송부)** "위탁기관"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아래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수행완료 사전검토 보고서(서식11)를 "광역본부 등"에 송부(※송부일은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 수행완료 보고서 사전검토 사항 》

① 지원 금액의 적정성
가. 컨설팅 과제 : 참여 컨설턴트 등급, 지원 횟수, 수행절차 준수 등의 검토를 통한 지원 금액의 적정성 확인
나. 안전보건 활동과제 : 활동내역과 소요비용 증빙자료 검토를 통한 지원금액의 적정성 확인
② 과제 수행의 충실성 : 컨설팅 과제 및 안전보건 활동과제의 수행 산출물(보고서, 결과물 등)의 적정성과 충실성 등에 대한 정성적 검토

▶ **수행완료 심사위원회 상정(8-01)**

○ "광역본부 등"은 심사위원회 개최 전 위탁기관의 "수행완료 사전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상정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및 결과통보 절차**

❶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모기업 또는 컨설팅기관→광역본부 등) → ❷ 제출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요청(광역본부 등→위탁기관) → ❸ 사전검토 및 보고서 송부(위탁기관→광역본부 등) → ❹ 심사위원회(광역본부 등) → ❺ 결과 통보(광역본부 등→모기업, 컨설팅기관)

7-02 매칭지원 수행완료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매칭지원 수행완료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와 동일(~11월 말, 수시)

※ 수행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담금 정산 실시

○ **(평가내용)** ①지원금액의 적정성, ②수행내용의 충실성

※ 안전보건 활동과제의 경우 "지원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만 실시

- **(지원금액의 적정성)** 위탁기관에서 사전검토한 컨설팅 과제 등의 수행 내용에 대한 지원금액의 적정성 평가
- **(수행내용의 충실성)** 컨설팅기관별로 컨설팅 과제 수행 결과물(컨설팅 보고서, 교육내용 및 교안 등)에 대해 사업수행 내용의 충실성 평가

○ **수행내용의 충실성 평가**

- **(평가방법)** 컨설팅기관별로 평가항목(5개)*에 대한 수행완료 적정성을 검토(서식12-1 작성)하여, 평가위원별 점수의 평균값으로 평가결과 최종 확정

* ① 세부추진과제 달성도(20), ② 추진방법의 타당성(20), ③ 수행요원 구성 및 수행능력(20), ④ 수행내용 충실성(20), ⑤ 공헌도(20)

- **(평가결과 활용)** 공단 및 모기업의 분담금(잔금) 지급금액 확정
  - **60점 이상 : 승인**(각 주체별 분담비율(50%) 전액 지급)
  - **60점 미만 : 득점에 따른 공단 및 모기업 분담금 차등 지급**(최대 20% 삭감)

* (50~59점) 10% 삭감(50→40%), (50점 미만) 20% 삭감(50→30%) 지급 및 차기년도 참가 제한(컨설팅기관)

↳ (50~59점) 10% 삭감(모기업 5%, 공단 5%), (50점 미만) 20% 삭감(모기업 10%, 공단 10%) 단, 모기업 분담금의 경우 특약조건 등에 따라 삭감률 조정(삭감 미실시 등) 가능

○ **(평가결과 통보)** 분담금 차등 지급 사유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안내(광역본부 등 → 모기업, 컨설팅기관)

* 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며,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한 경우 차기 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1회 한)

↳ 공단의 사업비 정산 기간을 고려하여 이의제기 기간 및 심사위원회 일정 조정 가능

▶ 매칭지원 수행완료 평가 결과 공문(예시)

사고사망 ZERO 부정부패 ZERO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은 권리입니다

수신자
(경유)
제목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수행완료 평가 결과 알림

1. 관련
가.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승인 알림』(서비스재해예방부-696, 2022.10.21.)
나.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수행결과 평가위원회 결과보고』 서비스재해예방부-815, 2022.12.8.)

2. 위 관련하여 귀 사에서 제출하신 **『상생협력활동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의결과**(`22.12.7)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정산 금액의 50%를 컨설팅기관에 입금**하고 **그 결과(입금내역서)**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구분	수행내역	심의결과 및 최종정산 내역	
추진과제	① 협력업체 작업환경컨설팅 ② CEO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지원	승 인	① 협력업체 작업환경컨설팅 ② CEO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지원
소요비용	2,420,000원		2,420,000원
		최종정산 (분담금내역)	2,662,000원(VAT포함) (공단 1,331,000원, 모기업 1,331,000원)

. 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차장 정민찬 서비스재해예방부전결 12/12 상 이승욱
협조자
고객결재
시행 서비스재해예방부-817 (2022. 12. 12.) 접수 ( )
우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성안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http://www.kosha.or.kr
전화 052-7030-632 /전송 052-7030-314 / jmch94@kosha.or.kr / 비공개(5)
대표번호 052)703-0500 1644-4544 http://www.kosha.or.kr /고객참여
o 공단 업무 관련 인권침해, 갑질,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신고(전화 052-2458-114, 공단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

▶ 매칭지원 비용(정산금) 지급

○ 심사위원회 최종 결정 내역에 따라 매칭지원 비용 분담금 지급

- **(컨설팅 과제)** "컨설팅기관"은 확정된 분담금을 "광역본부 등" 및 "모기업"에 지급 요청

↳ **(제출서류)** ①정산금 지급 요청서(서식7) 1부, ②입금통장 사본 1부, ③세금계산서(청구용) 1부, ④국세 ·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⑤4대보험 완납증명원 1부

※ 지급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광역본부 등" 및 "모기업"은 "컨설팅기관"에 확정 분담금을 지급

※ "모기업"의 경우 입금내역을 지급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 "광역본부 등"으로 제출

- **(안전보건 활동과제)** "모기업"은 확정된 분담금을 "광역본부 등"에 지급 요청

↳ **(제출서류)** ① 정산금 지급 요청서 1부(서식7), ② 입금통장 사본 1부

※ 지급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광역본부 등"은 "모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확정 분담금 지급

정산총액(예시)	58,790천원	입금흐름
컨설팅 과제(부가세 포함)	48,790천원	공단 24,395천원 → 컨설팅기관 모기업 24,395천원 → 컨설팅기관
안전보건 활동과제(부가세 제외)	10,000천원	공단 5,000천원 → 모기업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사업비 정산 : ~ '23. 12. 5(화) 까지

○ 정산금 지급절차

❶ 매칭지원 수행완료 심사결과 통보(광역본부 등→모기업, 컨설팅기관) → ❷ 정산금 지급 요청(컨설팅기관, 모기업→모기업, 광역본부 등) → ❸ 정산금 지급(광역본부 등, 모기업→컨설팅기관, 모기업)

▶ 매칭지원 비율조정(차기년도)

○ 동일한 지원기업(협력업체 등)이 동 사업에 재참여 하는 경우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 비율 하향* 조정(예정)

* (1차 년도) 50% → (2차 년도) 40%(모기업이 60% 지원) → (3차 년도) 30%(모기업이 70%지원)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

○ **(구성)** "광역본부 등"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수시)

*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6조, 제7조, 제7조의2를 준용

- 심사위원은 심사 전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확인서(서식5-1)", "심사지침 준수 각서(서식5-2,12-3)" 및 "청렴서약서(서식5-3,12-4)" 작성

구분	운영 기준		
위원회 구성	◇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광역본부장(경기지역본부장 포함)(위원장), 담당 부서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또는 겸직과장) - 위촉직 위원 :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가* *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6조의 위촉직 위원중 에서 선정		
구성 인원	5 ~ 9명	심사 방법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구성 비율	◇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		
의결 요건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운영)** 대면심사 원칙(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타 사업(재정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등)과 관련한 위원회와 공동 개최 가능

② 매칭지원 수행완료 심사위원회

○ **(구성 및 운영)**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와 동일(수시)

※ 수행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담금 정산 실시

▶ **심사위원회 주요 심의 내용**

1. 매칭지원 계획서의 컨설팅 소요비용의 적정성 여부

- 지원대상인 "협력업체 등"의 자격 확인(상시근로자 수, 지원 제외 대상 등)

- 컨설턴트 투입 기준(참여등급, 지원 횟수, 컨설팅 수행절차 및 교육 실시 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컨설팅 총 소요비용의 적정성(지원한도 준수 등) 확인

↳ (안전보건 활동과제) : 세미나, 캠페인, 안전물품 구매 등 제출내역 및 매칭지원 가능여부의 적정성 확인(추정금액 적정성 확인은 불필요)

2.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컨설팅 추진계획 및 소요비용의 조정

3. 지원기업(모기업)의 사업대상 우선순위 결정(사업예산 초과 신청 시)

4.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에 대한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수행내용의 충실성 등

- 컨설팅 과제 수행 총 소요비용의 적정성 검토·확인
- 지원계획 대비 수행완료 내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참여 컨설턴트 등급, 지원 횟수, 수행절차 및 안전보건 활동과제 수행 등)
- 컨설팅 과제 수행 결과물(컨설팅 보고서, 교육내용 및 교안 등) 등에 대한 컨설팅 수행내용의 충실성 평가
- 안전보건 활동과제 수행 총 소요비용의 적정성 검토·확인

5. 기타 "광역본부장등"이 본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사결과의 기록·유지**

○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에 대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 회의록(서식5), 매칭지원 수행완료 심사위원회 회의록(서식12)

- 컨설팅 과제의 경우, 컨설팅기관별 과제 수행의 충실성을 평가표(서식12-1,12-2)에 따라 평가 실시

▶ **국고위탁 등 타 사업과의 중복 확인 및 배제**

○ **(중복 배제 대상 사업)** 소규모 사업장 민간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탁, 보건분야 국고 위탁(근골격계질환 예방, 질식재해 예방) 등

- **(소규모 사업장 민간위탁**-안전,화학,서비스분야**)**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 ①, ②, ③, ⑦과 중복 배제
- **(소규모 사업장 민간위탁**-보건분야**)** 컨설팅 과제 ④, ⑤, ⑥과 중복 배제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위탁)** 컨설팅 과제 ①, ②, ⑦과 중복 배제
- **(보건분야 국고 위탁**-근골격계질환 예방**)** 컨설팅 과제 ⑤와 중복 배제
- **(보건분야 국고 위탁**-질식재해 예방**)** 컨설팅 과제 ⑥과 중복 배제

* **컨설팅 과제** : ①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및 실행력 강화, ② 3대 사고 유형·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③ 폭발 위험성 장소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예방, ④ 화학물질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와 건강장해 예방, ⑤ 근골격계부담작업 대상 유해요인 조사 및 예방, ⑥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 등 예방, ⑦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대 항목 진단 및 개선

○ **중복 배제 확인 절차**

- 매칭 컨설팅 지원기업(협력업체 등) 현황 확인 후(매칭지원 계획 신청서류 접수 전), 타 국고위탁 사업 운영부서와 사업수행 중복 여부 확인 실시(광역본부 등 및 일선기관)
  ↳ 중복 확인 완료 후, 매칭지원 계획 신청서류 접수 및 위탁기관 사전검토 요청
- 해당 국고위탁 사업 운영 부서에 문서 송부 등의 방법으로 확인 요청

※ 가급적 사업비 정산 및 지원금 미지급(삭감지급) 등 발생 시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문서 통보 권장

○ **중복 확인 시 조치**

- "지원기업(협력업체 등)"이 상기 타 국고위탁 사업과 중복이 확인된 경우, 관계 "모기업"과 "지원기업"의 참여의사를 확인(지원받고자 하는 사업 선택)하여 "참여배제" 또는 "지속참여" 여부 결정
  ↳ 관계 기업들이 동 사업의 참여를 우선하는 경우, 기 지원중인 국고위탁 사업 등에 대하여 공단 내부 조정(해당 참여사업의 진행 취소 등) 실시(광역본부 등 및 일선기관)
  ↳ 관계 기업들이 타 국고위탁 사업의 참여를 우선하는 경우, 상생협력 사업 매칭지원 컨설팅 미실시
- 공단 내부 조정된 결과에 대해 해당 기업에 대한 안내 실시

※ 매칭지원 컨설팅 진행중인 지원기업에 대해 중복 배제 및 공단 내부 조정 등의 사유로 컨설팅을 중단해야 할 경우, 해당 컨설팅기관에 안내 병행 실시

1. 근로자수 판단기준

☞ 모기업 기준 100인 이상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후에 근로자수가 변동되어 100인 미만이 되는 경우의 사업수행 가능 여부는?

[답변] 신청일 기준 ERP 사업장 근로자수로 사업대상 여부를 판단함. 최종 사업장 실적 제출시도 신청일 기준 근로자수로 작성하여 제출.

☞ 계획수립 당시 지원하기로 했던 협력업체가 50인 미만이었다가 근로자수가 늘어나 50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 매칭 지원 가능 여부는?

[답변] 신청일 기준 ERP 사업장 근로자수로 매칭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함. 최종 사업장 실적 제출시도 신청일 기준 근로자수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제외 대상 협력업체 중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신청한 협력업체 중에서 공단에서 제외시켜야 할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공단 본부에서 일산기관에 일괄 배포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고.

3. 인센티브 중 자율실천기간 부여(감독대상 미포함)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감독대상 중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일반감독은 자율실천 기간 부여(감독대상 미포함). 단, 특별감독은 제외됨.

4. 안전보호구 등 안전보건물품 구매를 할 때 비상시 대응용품(예: AED, 비상대응키트, 구조용품 등) 포함 가능 여부는?

[답변] 안전보건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칭지원 운영 매뉴얼 참고(사업수행 기준 2-02)

5. 사외협력업체나 지역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모기업과 동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업체도 가능한지? 거리와 상관이 있는지?

[답변] 모기업이 선정한 사외 협력업체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권역·거리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음.

6. 사업계획에 따라 협약금액의 50%를 모기업이 부담한 후 실행하는 과정 중에 금액이 감소하여 전체 실행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비용분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지원계획 변경이 발생한 경우, 컨설팅기관은 승인된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해 모기업의 확인을 거쳐 공단(광역본부 등)에 변경요청 하여야 함. 또한, 공단(광역본부 등)은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 시 소요비용(협약금액) 등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를 모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7. 모기업에서 컨설팅기관 공개입찰로 인한 금액이 공단 기준과 상이한 경우 지급 기준은?

[답변] 공단에서 공지한 지원단가(사업수행 기준 2-02)에 따라 인정 가능함. 그 이상으로 체결되는 비용은 모기업 자부담으로 진행.

<지급예시>

모기업 신청금액	공단 인정금액	지급기준(별도삭감 없을시)
650만원 (130만원*5일(특급기준))	600만원 (120만원*5일)	공단→컨설팅기관 : 300만원 모기업→컨설팅기관 : 350만원

8. 컨설턴트 지원단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답변] 컨설턴트 지원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9. 매칭지원 내용에서 과제⑧의 교육인원은 20명 이상도 가능한지?

[답변] 교육 실시 기준은 아래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50인 미만) 협력업체 당 최대 2회 이내

(단, 관리감독자 이상(관리자, CEO 등) 50%이상 참석)

▸(50인 이상) 협력업체 당 최대 3회 이내

(단, 관리감독자 이상(관리자, CEO 등) 30%이상 참석)

※ 교육은 매칭지원 과제별로 각각 실시함(2개 이상 과제 또는 2개사 이상 통합교육 불가)

Ⅳ.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관련 서식

[서식 1] 매칭지원 컨설팅기관 수시 등록 신청서

[서식 2] 매칭지원 참여 신청서

[서식 3] 매칭지원 계획서

[서식 4] 매칭지원 계획서 사전검토 결과서(총괄)

[서식 5]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 회의록

[서식 6] 매칭지원 협약서

[서식 7] 매칭지원 선금/정산금 지급 요청서

[서식 8] 매칭지원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서식 9] 매칭지원 변경요청서

[서식 10]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

[서식 11]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 사전검토 결과서(총괄)

[서식 12] 매칭지원 수행완료 심사위원회 회의록

<# 별지 서식 1>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양식

<# 별지 서식 2> 휴게시설 설치완료 점검 확인서 양식

[서식 1]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컨설팅기관 수시 등록 신청서

컨설팅기관명			대표자	
주 소	(본사 또는 사업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업무연락 담당자	성 명		직책	
	연락처		이메일	
컨설팅 가능분야 ☑ 해당분야 선택	❶ 산업안전분야 (☐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 3대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폭발위험장소 위험성 평가) ❷ 산업보건분야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 밀폐공간 작업 위험예방) ❸ 안전보건 시스템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7대 항목 진단 및 개선)			
설립년도				
인력 현황 *4대보험적용기준	총_____명[컨설턴트 : 명, 관리직 등 : 명]			
'20, 21, '22년도 컨설팅 수행실적	참여분야	컨설팅 수행내용	수행건수(년도)	
	※ 컨설팅 수행 실적 세부내용 [서식1-2] 활용 작성			

상기와 같이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참여 컨설팅기관 으로서 수시(신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컨설턴트 등록 현황(서식1-1) 1부
☐ 분야별 컨설팅 수행실적(서식1-2) 1부
☐ 개인정보 동의서(서식1-3)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산재보험 완납 증명서(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분)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분) 각 1부

[서식 1-1]

상싱협력활동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록 현황

구분	성 명	직 위	자격사항 (또는 학력사항)	안전보건분야 경력(년 월)	비고
1	김컨설	차장	산업안전 기사	3년 6월	
2					
3					
4					
5					
6					
7					
8					
9					
10					

* 자격사항 :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명 기입(자격증사본 첨부)
* 안전보건경력 : 매칭 컨설팅 과제 분야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경력 기입(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1-2]

분야별 컨설팅 수행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컨설팅 수행사업명	발주기관 (기업)	참여 컨설턴트	연도
산업안전 분야				
산업보건 분야				
안전보건 시스템구축				
기타				

* 각 건별 컨설팅 실적 증명(활동분야 계약서 사본 등) 제출 건에 한 함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기업의 선정 및 완료 평가, 컨설팅 수행 업무, 성과관리 업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직장, 휴대폰),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	소속, 직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는 신청 등 절차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보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제공목적 :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 이용기간 : **1년**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컨설팅기관 대표 성명 :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참여 신청서

모기업명			근로자수(모기업)			
매칭지원 참여 협력업체수	□ 사내 (개) □ 사외 (개) □ 지역중소기업 (개)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 수	총 개		(1유형) 추가 선정 과제 수	총 개		
담 당 자	소속부서		성 명		직 책	
	유선전화		휴대폰		이메일	

신청현황	참여분야	□ 1 유형 □ 2 유형
	참여분야 (협력업체 지원 분야 모두 표시)	

<컨설팅과제> ※ ☑ 해당분야 선택 / 중복 선택 가능

분야		선택	지원내용
①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산업안전분야	□	①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	②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	③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
	산업보건분야	□	④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⑤ 근골격계질환 작업 개선
		□	⑥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② 안전관리 역량향상		□	⑦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대 항목 진단·개선
③ 안전의식 확산			⑧ CEO 인식개선,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추가 선정과제> **※ 1유형 참여 모기업에 한함**

□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 (합동) 캠페인 □ 안전물품 구매
□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교육 참석 지원 □ 안전보건진단
□ 근로자 휴게시설, □ 작업환경측정 □ 기타( )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1) 1부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서(서식3) 1부 □ 상생협력활동 매칭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현황(서식3-1,3-2)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모기업, 지원기업)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모기업, 지원기업/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분) 1부 □ 산재보험 완납 증명서(모기업, 지원기업/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분) 1부

2023년도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제출 자료는 사실과 틀림 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모기업 : 대표자 :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2-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기업의 선정 및 완료 평가, 컨설팅 수행 업무, 성과관리 업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직장, 휴대폰),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	소속, 직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등 절차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컨설팅기관,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제공목적 :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 이용기간 : **1년**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모기업 대표 성명 : (인/서명)

상생협력 담당자 성명 :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3]

2023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서

2023 . . .

모기업	**대표자**	(인/서명)
컨설팅기관 1	**대표자**	(인/서명)
컨설팅기관 2	**대표자**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서

1. 매칭 컨설팅 지원 실행예산 현황(모든 지원기업의 컨설팅 비용 합산 기재)

■ 1유형 (컨소시엄 당 최고 2억원 한도)
■ 2유형 (협력업체 당 최고 3,000만원, 컨소시엄 당 4억원 한도)

소요비용	■ 1유형 : *192,000,000 원 (미 신청시 작성 불필요)* * 안전보건활동과제 포함 ■ 2유형 : *34,600,000 원 (미 신청시 작성 불필요)*		
소요비용 총액	*226,600,000* 원	모기업 분담금	*100,800,000* 원
		공단 분담금	*125,800,000* 원

■ 1유형 (컨설팅 과제)

(미 신청시 작성 불필요)

추진과제	투입 인원수	컨설턴트 등급(강사)	단가(원)	투입횟수 (일, 회) 실태 컨설팅	투입횟수 (일, 회) 확인 컨설팅	세부내역 (투입인원수×단가×투입횟수)	계(원)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1명* *1명*	*기술사* *특급기술자*	*800,000* *650,000*	*3일* *3일*	*2일* *2일*	*1명 × (800,000+80,000+) × 5일 = 4,400,000원* *1명 × (650,000+80,000) × 5일 = 3,650,000원*	*9,250,000*
교육	*1명*	*(가)군*	*300,000*	*2회, 2H*		*1명 × 300,000 × 2H × 2회 = 1,200,000원*	
지원기업 1 소계 ("지원기업1"에는 협력업체명 기재)							*9,250,000*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1명* *1명*	*기술사* *특급기술자*	*800,000* *650,000*	*5일* *5일*	*3일* *3일*	*1명 × (800,000+80,000) × 8일 = 7,040,000원* *1명 × (650,000+80,000) × 8일 = 5,840,000원*	*14,080,000*
교육	*1명*	*(가)군*	*300,000*	*2회, 2H*		*1명 × 300,000 × 2H × 2회 = 1,200,000원*	
지원기업 2 소계							*14,080,000*
교육							
지원기업 3 소계							
산출금액 합계(부가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23,330,000*

* 단가에는 출장여비를 포함한 단가기재(관내 ⟶ +20,000원/일, 관외 → +80,000원/일)

※관내,관외 기준은 컨설팅기관 소재지 기준임,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은 출장비 계상 제외

■ 1유형 (추가 선정과제-세미나, 캠페인, 안전물품 구매 등) (미 신청시 작성 불필요)

※ 일부항목의 지원기업(협력업체 등)별 지원내역이 상이한 경우, 지원기업별로 작성

추진과제	단위	세부내역	추정금액(원)
안전보건 세미나	1식	• 참여 협력업체 안전보건 세미나 2회 - 내용 : ① 안전보건체계 구축지원 방법, ② 실태 컨설팅 시 발굴된 위험요인 공유, ③ 중대법 관련 내용 세미나 등 - 대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CEO 10명 - 장소: OO 세미나실 - 일정(예정) : '23 .4. 5.	5,000,000
안전보건 캠페인	1식	• 참여 협력업체 합동 안전보건 캠페인 1회 - 내용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 사고사망만인율 0.37‰ 달성을 위한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대중소 상생 안전캠페인 - 대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 30명 - 일정(예정) : '23. 4. 5 - 장소 : OO 협력업체 제 1공장	1,000,000
안전보건물품 구매	1식	•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물품 구매 - 구매품목: 안전화, 안전모, 자동제세동기(AED), 송기마스크 안전보건 표지판, 스티커, 가스농도측정기, 검전기, 위험물보관저장설비 등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물품의 해당 협력업체 불출 사진 및 수령증 제출(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현황 포함 제출) **※ 안전보건물품의 경우 매칭비용 총액의 50% 한도내 인정** **※ 안전보건물품 단일항목 신청 시 정부지원한도금액 : 5천만원** ※ 최대한도 : (예시) 34,330천원*0.5=17,165천원	3,000,000
안전보건 자료 제작 배포	1식	• 안전보건 자료 제작배포 - 중대법의 이해 (100부), 위험성평가의 이해(100부) - 배포 : 모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 1명 당 각 1부	1,000,000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	1식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교육지원 - 중대법의 이해 1명(5일) : 500,000원 - 위험성평가의 이해 1명(4일) : 500,000원	1,000,000
안전보건진단	3개소	• 사외협력업체 안전보건 진단(진단 추진 계획 별도 첨부) -> 진단상대역, 일정, 내용, 견적가 등 - 종합진단 2개소 : 1,000만원*2개소 - 보건진단 1개소 : 500만원*1개소 ※지원비율: 진단 총소요비용의 100%	25,000,000
근로자 휴게시설 (컨테이너식)	5EA	• 사외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견적서 등 첨부) - 수량 : 5EA*3,000만원 - 대상 : OO기업, OO2기업, OO3기업, OO4기업, OO5기업	150,000,000
작업환경 측정	3개소	• 사외협력업체 3개소 (접수증 등 첨부) : 200만원*3개소	6,000,000
산출금액 합계(부가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192,000,000

※ ① **추가선정과제의 지원결정 :** 지원기업 선정 시 상기 내용에 대한 지원내역, 대상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② **추가선정과제의 사업비 정산 : (모기업)**_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결정내역에 따른 추진 결과 및 예산관련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교육 이수증,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 제출 → **(공단)**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제 투입된 비용을 정산 → **(모기업)** 모기업 분담금(50%) 공단에 지급 요청 → **(공단)** 분담금 지급

③ 사외협력업체 등 안전보건 진단시 정부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100%

■ 2유형 (컨설팅 과제) (미 신청시 작성 불필요)

추진과제	투입 인원수	컨설턴트 등급(강사)	단가(원)	투입횟수 (일, 회) 실태 컨설팅	투입횟수 (일, 회) 확인 컨설팅	세부내역 (투입인원수×단가×투입횟수)	계(원)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1명 1명	기술사 특급기술자	800,000 650,000	3일 3일	2일 2일	11명 × (800,000+80,000*) × 5일 = 4,400,000원 1명 × (650,000+80,000) × 5일 = 3,650,000원	9,250,000
교육	1명	(가)군	300,000	2회, 2H		1명×300,000×2H×2회=1,200,000원	
3대사고유형·8대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1명 1명	기술사 특급기술자	800,000 650,000	3일 3일	2일 2일	1명 × (800,000+80,000) × 5일 = 4,400,000원 1명 × (650,000+80,000) × 5일 = 3,650,000원	9,250,000
교육	1명	(가)군	300,000	2회, 2H		1명×300,000×2H×2회=1,200,000원	
지원기업 1 소계 ("지원기업1"에는 협력업체명 기재)							18,500,000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1명 1명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650,000 560,000	3일 3일	2일 2일	1명 × (650,000+80,000)× 5일 = 3,650,000원 1명 × (560,000+80,000) × 5일 = 3,200,000원	8,050,000
교육	1명	(가)군	300,000	2회, 2H		1명×300,000×2H×2회=1,200,000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1명 1명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650,000 560,000	3일 3일	2일 2일	1명 × (650,000+80,000)× 5일 = 3,650,000원 1명 × (560,000+80,000) × 5일 = 3,200,000원	8,050,000
교육	1명	(가)군	300,000	2회, 2H		1명×300,000×2H×2회=1,200,000원	
지원기업 2 소계							16,100,000
지원기업 3 소계							
지원기업 4 소계							
산출금액 합계(부가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34,600,000

2. 매칭지원 수행계획

■ (1,2유형) 컨설팅 과제

단 계	과제명	주요내용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수행일정계획		
			실태컨설팅	교육	확인컨설팅
지원기업1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및 실행력 강화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검토 - 기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검토(현장 확인 병행) - 위험성평가 기법 안내 및 적정 실시 가이드 제공 -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2개 공정) - 인식개선 교육(20명)	'23. 4. 5 ~ 4. 10	'23. 5. 2 ~ 5. 3	'23. 5. 12 ~ 5. 14
	3대사고유형·8대위험요인	- 현장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인식개선 교육(15명)	'23. 4. 11 ~ 4. 16	'23. 5. 7 ~ 5. 8	'23. 5. 15 ~ 5. 18
지원기업2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	- 현장 공정 및 사용 화학물질의 위험성 분석 - 폭발위험장소 구분 필요성 검토 - 현재의 폭발위험 예방조치 사항 파악 -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적정한 방폭설비 설치 안내 - 인식개선 교육(25명)			
지원기업3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 밀폐공간 작업안전지침 작성(1식) - 밀폐공간 작업 여부 점검 - 밀폐공간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2개 공정) - 현재의 질식재해 예방조치 적정성 검토 - 인식개선 교육(15명)			
지원기업4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체계구축 매뉴얼 검토 및 공동 작성(1식) - 7대 핵심요소 이행상태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 인식개선 교육(15명)			

■ (1유형) 추가 선정 과제

과제내용	수행일정계획	주요내용	비고
안전보건세미나	'23. 7. 1 ~ 7. 2	- (장소) OO 세미나실 - (참석) OO 등 35명	지원기업이 한정되는 경우, 지원기업명 기재
안전보건캠페인	'23. 7. 5	- (장소) OO 협력업체 1공장 - (참석) OO 등 35명	
안전보건자료제작	'23. 7. 5	- 자료제작 200부	
외부 전문가 교육	'23. 7. 5 ~ 7. 6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2명 외부 교육 지원	
사외협력업체 안전보건진단	별도추진계획 첨부	-	
근로자 휴게시설	'23. 9. 1 ~ 10. 30	- 사협력업체 5개소 설치대상: 1,2,3,4,5 업체	
작업환경 측정	'23. 9. 1 ~ 10. 30	- 사협력업체 5개소 작업환경 측정 실시	대한산업보건협회

3. 컨설팅기관의 컨설턴트별 과제 수행 현황

- 투입 컨설턴트별 수행내용 및 과제 기재

컨설팅 기관명	컨설턴트(강사)	컨설팅 과제명 (과제번호)	모기업 담당자 (지정시)
컨설팅기관 1	김컨설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①)	김안전
	최컨설	3대사고유형·8대위험요인(②)	최안전
	정컨설	폭발장소 위험성평가(③)	정안전
컨설팅기관 2	우컨설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⑤)	모안전
	현컨설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⑤)	이안전

[서식 3-1]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참여 컨설팅기관 현황				
컨설팅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본사 또는 사업소)			
업무담당자	성 명		직책	
	연락처	(사무실) (H·P)	이메일	
참여분야 ☑ 해당분야 모두선택	❶ 산업안전분야 (☐ ①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 ②3대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 ③폭발위험장소 위험성 평가) ❷ 산업보건분야 (☐ ④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⑤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 ⑥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❸ 안전보건 시스템구축(☐ ⑦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7대 항목 진단 및 개선)			
인력 현황 *4대보험적용기준	총_____명[컨설턴트 : 명, 관리직 등 : 명]			

상기와 같이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참여 컨설팅기관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3 년 월 일

컨설팅기관 대표자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 첨부서류

☐ 컨설턴트 등록현황(서식3-2) 1부
☐ 개인정보 동의서(서식3-3)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분) 각 1부
☐ 산재보험 완납 증명서(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분) 1부

[서식 3-2]

컨설턴트 등록 현황(매칭지원 컨설팅 참여 컨설턴트에 한함)

구분	성 명	직 위	자격사항	안전보건경력 (년 월)	컨설팅 과제명(또는 번호)	비고
1	*김컨설*	*차장*	*산업안전 기사*	*3년 6월*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①)*	
2						
3						
4						
5						
6						
7						
8						
9						
10						

* 자격사항 :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명 기입(자격증사본 첨부)
* 안전보건경력 : 매칭 컨설팅 과제 분야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경력 기입(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3-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기업의 선정 및 완료 평가, 컨설팅 수행 업무, 성과관리 업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직장, 휴대폰),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	소속, 직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는 신청 등 절차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제공목적 :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 이용기간 : **1년**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컨설팅기관 대표자 :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4]

매칭지원 계획서 사전검토 결과서(총괄)_모기업

모기업명		근로자수(모기업)	
매칭지원 지원기업 수	□ 사내 (개) □ 사외 (개) □ 지역중소기업 (개)		

신청현황 (참여분야)

<컨설팅과제> ※ ☑ 해당분야 선택 / 중복 선택 가능

분야		선택	지원내용
①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산업안전분야	□	①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	②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	③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
	산업보건분야	□	④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⑤ 근골격계질환 작업 개선
		□	⑥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② 안전관리 역량향상		□	⑦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대 항목 진단·개선
③ 안전의식 확산			⑧ CEO 인식개선,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모기업의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 선정과제)>

□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 (합동) 캠페인 □ 안전물품 구매
□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교육 참석 지원 □ 안전보건진단
□ 근로자 휴게시설 □ 작업환경측정 □ 기타( )

1. 모기업의 컨설팅 총 소요비용 적정성 확인

■ 1유형 (컨소시엄 당 최고 2억원 한도)
■ 2유형 (협력업체 당 최고 3,000만원, 컨소시엄 당 4억원 한도)

소요비용	컨설팅과제	□ 1유형 : *33,400,000 원* , □ 2유형 : *5,000,000 원*
	활동과제	□ 1유형 추가 선정과제(추정금액) : *4,000,000 원*

컨설팅과제 소요비용 총액	*38,400,000* 원	모기업 분담금	*19,200,000* 원
소요비용 총액 (컨설팅과제 검토금액+ 안전보건 활동과제 추정금액)	*42,400,000원*	공단 분담금	*19,200,000* 원

검토의견

○ "OO기업"에서 신청한 매칭지원 계획서 검토결과 삭감내역이 발생하지 않아 신청금액 38,400천원 (컨설팅분야)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총 소요비용은 42,400천원으로 판단됨
↳ 컨설팅분야 검토 금액 384,00천원 + 활동과제 추정금액 4,000천원 합산 금액임
- (삭감의 경우) 1유형 OO항목에 대하여 단가 미산정등에 따라 000천원 삭감함
○ "안전보건활동과제"의 경우 안전보건세미나 1식, 합동캠페인 1식, 안전보건 물품 1식으로 추진계획을 구성하여 신청 하였으며, "지원내역 및 대상"등에 대하여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 기타...특이사항 기업

2. 제출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	검토항목 (적합 : ○, 부적합 : X)	검토의견 (적합 / 부적합 사유)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서 1부		
상생협력활동 매칭 컨설팅기관 현황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모기업, 지원기업) 각1부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모기업, 지원기업) 각1부		
산재보험 완납 증명서(모기업, 지원기업) 각1부		

3. 참여유형별 요건 확인			검토항목 (적합 : ○, 부적합 : X)	검토의견 (적합 / 부적합 사유)
지원한도 (지원금 기준)	1유형	컨소시엄 당 2억원 한도		
	2유형	협력업체 당 3천만원 한도 (컨소시엄 당 4억원 한도)		
사업대상 모기업 (인원 기준)	1유형 2유형	100인 이상 모든 모기업		
지원대상 협력업체	1유형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규모 제한 없음)		
	2유형	사내 협력업체(50인 미만), 사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규모 제한 없음) ▸단, 모기업의 업종이 조선업종(선박건조 및 수리업)인 경우 협력업체 규모제한 없음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모기업의 사내협력업체 제외		

4. 컨설팅기관 제출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	검토항목 (적합 : ○, 부적합 : X)	검토의견 (적합 / 부적합 사유)
컨설턴트 등록현황(서식3-2)		
개인정보 동의서(서식3-3)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완납 증명서(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분)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분)		

5.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등록 현황 확인			검토항목 (적합 : ○, 부적합 : X)	검토의견 (적합 / 부적합 사유)
컨설팅기관명1		인력현황	총 명[컨설턴트 : 명, 관리직 등 : 명]	
인력구성	상근 컨설턴트 수 (1명 이상)	총 명		
	기술사 (800,000원)	명		
	특급기술자 (650,000원)	명		
	고급기술자 (560,000원)	명		
	중급기술자 (450,000원)	명		
	초급기술자 (400,000원)	명		
인력기준	안전보건 분야경력 (3년 이상)	년		
수행실적	안전보건 분야실적 (5건 이상)	건		

컨설팅기관명2		인력현황	총 명[컨설턴트 : 명, 관리직 등 : 명]	
인력구성	상근 컨설턴트 수 (1명 이상)	총 명		
	기술사 (800,000원)	명		
	특급기술자 (650,000원)	명		
	고급기술자 (560,000원)	명		
	중급기술자 (450,000원)	명		
	초급기술자 (400,000원)	명		
인력기준	안전보건 분야경력 (3년 이상)	년		
수행실적	안전보건 분야실적 (5건 이상)	건		

컨설팅기관명3		인력현황	총 명[컨설턴트 : 명, 관리직 등 : 명]	
인력구성	상근 컨설턴트 수 (1명 이상)	총 명		
	기술사 (800,000원)	명		
	특급기술자 (650,000원)	명		
	고급기술자 (560,000원)	명		
	중급기술자 (450,000원)	명		
	초급기술자 (400,000원)	명		
인력기준	안전보건 분야경력 (3년 이상)	년		
수행실적	안전보건 분야실적 (5건 이상)	건		

6. 과제 유형별 검토의견

■ 지원기업별 1유형 (컨설팅 과제)

지원기업명	추진과제	신청금액 (원)	검토금액 (원)	검토의견 (적합 / 부적합 사유)
합계	33,400,000원			
지원기업 1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7,850,000		컨설턴트 등급산정 부적합
	폭발장소 위험성평가	7,850,000		적합
지원기업 2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1,000,000		적합
지원기업 3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1,000,000		적합
지원기업 4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7,850,000		적합
	폭발장소 위험성평가	7,850,000		부적합

■ 모기업의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 선정과제) : 안전보건 세미나, 캠페인, 안전보건진단 등

추진과제	단위	세부내역	(추정) 금액(원)	검토의견 (적합 / 부적합 사유)
합계 (추정금액)	1식	4,000,000원		
안전보건 세미나	1식	• 참여 협력업체 안전보건 세미나 2회 - 내용 : ① 안전보건체계 구축지원 방법, ② 실태 컨설팅 시 발굴된 위험요인 공유, ③ 중대법 관련 내용 세미나 등 - 대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CEO 10명 - 장소: OO 세미나실 - 일정(예정) : `23 .4. 5.	3,000,000	
안전보건 캠페인	1식	• 참여 협력업체 합동 안전보건 캠페인 1회 - 내용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 사고사망만인율 0.37‰ 달성을 위한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대중소 상생 안전캠페인 - 대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 30명 - 일정(예정) : `23. 4. 5 - 장소 : OO 협력업체 제 1공장	1,000,000	

■ 지원기업별 2유형 (컨설팅 과제)

지원기업명	추진과제	신청금액 (원)	검토금액 (원)	검토의견 (적합 / 부적합 사유)
합계	5,000,000원			
지원기업 1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3,000,000		적합
지원기업 2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1,000,000		적합
지원기업 3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1,000,000		적합

[서식4-1]

매칭지원 계획서(변경요청, 동등이상) 사전검토 결과서(총괄)_모기업

모기업명		근로자수(모기업)	
매칭지원 지원기업 수	☐ 사내 (　　개)　☐ 사외 (　　개)　☐ 지역중소기업 (　　개)		

신청현황 (참여분야)

<컨설팅과제>　※ ☑ 해당분야 선택 / 중복 선택 가능

분야		선택	지원내용
①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산업안전분야	☐	①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	②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	③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
	산업보건분야	☐	④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⑤ 근골격계질환 작업 개선
		☐	⑥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② 안전관리 역량향상		☐	⑦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대 항목 진단·개선
③ 안전의식 확산			⑧ CEO 인식개선,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모기업의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 선정과제)>

☐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 (합동) 캠페인　☐ 안전물품 구매
☐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교육 참석 지원　☐ 안전보건진단
☐ 근로자 휴게시설　☐ 작업환경측정　☐ 기타(　　)

1. 모기업의 컨설팅 총 소요비용 적정성 확인

■ 1유형 (컨소시엄 당 최고 2억원 한도)
■ 2유형 (협력업체 당 최고 3,000만원, 컨소시엄 당 4억원 한도)

소요비용		
	컨설팅과제	☐ 1유형 : *33,400,000 원*　,　☐ 2유형 : *5,000,000 원*
	활동과제	☐ 1유형 추가 선정과제(추정금액) : *4,000,000 원*

컨설팅과제 소요비용 총액	*38,400,000* 원	모기업 분담금	*19,200,000* 원
소요비용 총액 (컨설팅과제 검토금액+안전보건 활동과제 추정금액)	*42,400,000원*	공단 분담금	*19,200,000* 원

검토의견

○ A컨설팅기관의 투입 컨설턴트 변경요청은 예산변경없이 동급이상으로 변경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됨
- 동급변경 (기존) 홍길동 : 기술사 800,000원 → (변경) 박길동 : 기술사 800,000원
- 동급이상 변경 (기존) 김길동 : 특급기술자 650,000원 → (변경) 이길동 : 기술사 650,000원 (컨설턴트 지원 단가 변동없음)
○ 매칭지원 계획서(수정본), 변경된 컨설턴트 등급/자격기준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재직/경력증명서 등) 이상없음

2.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등록 현황 확인			매칭계획	변경요청	검토의견 (적합 / 부적합 사유)
컨설팅기관명1	A컨설팅기관	인력현황	*2명*	*2명*	
인력구성	상근 컨설턴트 수 (1명 이상)	총　명	*명*	*명*	
	기술사 (800,000원)	명	*1명*	*1명*	*동급으로 변경하여 적합함*
	특급기술자 (650,000원)	명	*명*	*명*	
	고급기술자 (560,000원)	명	*1명*	*1명*	*동급으로 변경하여 적합함*
	중급기술자 (450,000원)	명	*명*	*명*	
	초급기술자 (400,000원)	명	*명*	*명*	

2.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등록 현황 확인			매칭계획	변경요청	검토의견 (적합 / 부적합 사유)
컨설팅기관명2	B컨설팅기관	인력현황	*2명*	*2명*	
인력구성	상근 컨설턴트 수 (1명 이상)	총　명	*명*	*명*	
	기술사 (800,000원)	명	*명*	*1명*	*동급이상으로 변경하여 적합함 (특급기술자 단가 적용)*
	특급기술자 (650,000원)	명	*1명*	*명*	
	고급기술자 (560,000원)	명	*1명*	*1명*	*동급으로 변경하여 적합함*
	중급기술자 (450,000원)	명	*명*	*명*	
	초급기술자 (400,000원)	명	*명*	*명*	

[서식4-2]

매칭지원 계획서(사전검토, 약식) 사전검토 결과서(총괄)_모기업

모기업명		근로자수(모기업)	
매칭지원 지원기업 수	☐ 사내 (　　개)　☐ 사외 (　　개)　☐ 지역중소기업 (　　개)		

신청현황 (참여분야)

<컨설팅과제>　※ ☑ 해당분야 선택 / 중복 선택 가능

분야		선택	지원내용
①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산업안전분야	☐	①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	②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	③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
	산업보건분야	☐	④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⑤ 근골격계질환 작업 개선
		☐	⑥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② 안전관리 역량향상		☐	⑦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대 항목 진단·개선
③ 안전의식 확산			⑧ CEO 인식개선,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모기업의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 선정과제)>

☐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 (합동) 캠페인　☐ 안전물품 구매
☐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교육 참석 지원　☐ 안전보건진단
☐ 근로자 휴게시설　☐ 작업환경측정　☐ 기타(　　)

■ 모기업의 컨설팅 총 소요비용 적정성 확인

■ 1유형 (컨소시엄 당 최고 2억원 한도)
■ 2유형 (협력업체 당 최고 3,000만원, 컨소시엄 당 4억원 한도)

소요비용		
	컨설팅과제	☐ 1유형 : *33,400,000 원*　,　☐ 2유형 : *5,000,000 원*
	활동과제	☐ 1유형 추가 선정과제(추정금액) : *4,000,000 원*

컨설팅과제 소요비용 총액	*38,400,000* 원	모기업 분담금	
소요비용 총액 (컨설팅과제 검토금액+안전보건 활동과제 추정금액)	*42,400,000원*	공단 분담금	

검토의견

○ (예시) 당 사업장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컨설팅 추진계획 및 금액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1. 컨설팅 과제 38,400천원
- 2. 안전보건 활동과제 : 추진계획 적정함(추정금액 4,000천원)
○ 매칭지원 계획서 따른 컨설턴트 투입 계획 및 과제 선정 등 적정함
○ 심사위원회 결정 전 사전검토 내용으로, 향후 사후 결정을 통하여 컨설팅 소요비용은 최종 확정될 예정임

[서식 5]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 회의록

심사일시		심사장소	
심사안건	▸ 지원기업(대상 모기업) : *OOO 등 OO 개소* - 매칭지원 결정금액: *OO 억원*		

■ 심사내용 및 결과

○ 지원기업(대상 모기업) : *OOO 등 OO 개소*

○ 매칭지원 결정 금액 : *OOO 억원*

이상의 내용으로 결정 함/승인 함

■ 심사결과 공개여부	☐ 공개(전체)
	☐ 부분공개
	■ 비공개(*사유 : 심사위원 개인정보 보호, 신청사업장 및 협력업체 정보 보호*)

■ 심사위원 서명

구분	성명	서　명	찬반(○,×)	기타의견
내부				
외부				

(을지)

■ 심사내용 및 결과

신청 모기업명	매칭지원 결정금액		
	컨설팅과제		안전보건 활동과제 (1유형 추가선정과제)
	1유형	2유형	
모기업 1	*20,000,000원*		*적정*
	10,000,000원	*10,000,000원*	
모기업 2	*250,000,000원*		*적정*
	50,000,000원	*200,000,000원*	
모기업 3	*10,000,000원*		*적정*
	3,000,000원	*7,000,000원*	
	이하여백		

[서식 5-1]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확인서

본인은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촉기간 : 20 . 00. 00 ~ 20 . 00. 00)

- 아 래 -

1. 심사명 :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계획서 심사
2. 심사위원 선정 시 다음의 기피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해 심사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 심사·평가 대상 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③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 소속단체나 기업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⑤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심사위원 선정 시 기피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심사에 참가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되고 공단의 동 사업 심사 시 처분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5-2]

심사위원 심사지침 준수 각서

본인은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심사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00 월 00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5-3]

청 렴 서 약 서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

본인은 위의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서 동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청렴의무 주요 내용

1. 업무관련자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으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한다.
2. 업무관련자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심사 시 알게 된 내용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4. 심사안건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해당심사를 회피한다.

2023년 00월 00일

서 약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서식 6]

2023년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협약서

☐ 지원사업명 : 2023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 컨설팅 수행 주제 :

☐ 협약금액(지원사업 수행예산)

구분		협약금액(부가세 포함)	비고
협약금액(총액)		일금_____원(₩_____원)	
컨설팅비용	"공단" 분담금	일금_____원(₩_____원)	
	"모기업" 분담금	일금_____원(₩_____원)	

☐ 계약보증금 : _____ 원(협약금액(총액)의 15/100이상)

☐ 협약기간 : 2023. . . ~ 2023. . . (개월간)

☐ 협약 당사자

- 주관기관 (이하 "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지역본부장 ㊞
  주 소 :
- 모기업 : 대표 ㊞
  주 소 :
- 컨설팅기관 : 대표 ㊞
  주 소 :

※ 컨소시엄 구성 컨설팅기관(해당 시) : 대표 ㊞
  주 소 :

20 년 월 일

「2023년도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칭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칭한다)가 주관하고, 컨설팅기관(이하 "컨설팅기관"라 칭한다)이 모기업(이하 "모기업"이라 칭한다) 소속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용역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칭한다)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O부를 작성하여 "공단", "모기업", "컨설팅기관"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첨부 1. 협약일반조건
2.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서
3.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운영매뉴얼(별도 제공)

첨부1. 협약일반조건

제1조(지원 목적)

모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원·하청 자율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원·하청 공동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모기업"이란 본 지원사업 참여 신청의 주체이며 "지원기업" 및 "컨설팅 과제" 선정 등을 주관하는 "원청" 또는 "도급사"를 말한다.

② "지원기업"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의 수행대상으로서 "모기업"과 함께 용역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을 말한다.

③ "협력업체"라 함은 본 지원사업의 수행대상으로서 "모기업"으로 부터 도급, 위탁, 용역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④ "지역중소기업"라 함은 ③항에 따라 정의된 기업을 제외한, "계약 상대자" 와의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을 말한다.

⑤ "컨설팅기관"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기업"에서 희망하는 "컨설팅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⑥ "컨설팅과제"라 함은 "지원기업"의 "안전보건수준향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이 지정한 "안전보건활동 수행내용 등" 을 말한다.

⑦ "지원계획서"(이하 "지원계획서)라 함은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에 대하여 "컨설팅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⑧ "수행완료 보고서"라 함은 지원계획서에 의하여 "컨설팅기관"이 실시한 컨설팅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공단"이 승인하는 결과물을 말한다.

⑨ "심사위원회"라 함은 본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원계획 평가 및 수행완료 평가 등 중대한 의사 결정이나 분쟁의 조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의결 조직을 말한다.

⑩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공단"으로부터 사업관리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사업자로서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계획의 소요비용에 대한 적정성 및 수행완료 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모기업"과 "컨설팅기관"은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② "모기업"과 "컨설팅기관"은 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업무와 비용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타협이나 리베이트 제공 등 불성실한 업무 추진과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 시에는 지원 사업비 환수(공단 분담금) 및 공단에서 실시하는 각 종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추진 방법)

① "컨설팅기관"은 "지원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보고서 양식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되, "컨설팅기관"의 고유한 진단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컨설팅기관"의 컨설팅(지도) 업무 수행방법은 "컨설팅기관"의 고유한 컨설팅 기법에 따라 추진할 수 있으나, 컨설팅 업무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지원계획서에 의거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컨설팅기관 간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이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컨설팅기관"이 부담한다.

제5조(수행일지 기록 및 비치)

① "컨설팅기관"은 "공단"에서 정하는 지원사업 수행일지를 업무 수행일 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공단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기관"은 일정별 실시내역을 포함한 지원사업 수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고,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당초계획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모기업"과 합의한 내용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 확인 후 "공단"에게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컨설팅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된 교육일지, 회의록, 조사 자료, 중간 산출물 등을 완료보고 시 "공단"과 "모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수행 평가)

① "모기업"과 "컨설팅기관"은 "공단"의 지원사업 중간(이행)모니터링 및 수행완료평가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공단"의 관계자 면담, 현장 확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평가 결과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중간(이행)모니터링은 지원계획서에 의거한 진행도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수행완료평가는 "모기업"과 "컨설팅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행완료 보고서를 근거로 지원사업 완료내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필요시 "공단"이 "모기업"을 방문하여 실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행완료평가 결과는 제11조에 따른 사업비 분담율 조정에 반영한다.

제7조(보고 및 검수 등)

① "컨설팅기관"은 지원사업 완료 후 "모기업"에게 최종성과물(수행완료 보고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모기업"은 제출받은 최종성과물을 용역의 완료 후 15일 이내(협약기간 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①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성과물(수행완료 보고서 포함)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사업수행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모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컨설팅기관"은 "공단" 또는 "모기업"이 지원사업 최종성과물을 요구할 경우 "컨설팅기관"의 부담으로 해당 보고서를 "공단"과 "모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기업"은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공단"에 통보하고, "모기업"과 "컨설팅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모기업",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4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컨설팅기관"은 계약(협약)이행 보장을 위하여 협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협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하여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선금)

① "컨설팅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모기업"과 "공단"은 협약금액의 40%이내에서 "컨설팅기관"에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모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의 분담금(협약금액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 사업 종료 후 정산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선금 지급 요청 시 "컨설팅기관"은 "모기업"과 "공단"에게 세금계산서 및 선금보증보험증권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시한 경우 "컨설팅기관"은 각각 선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신청기관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컨설팅 비용의 정산 및 지급)

① "공단"과 "모기업"은 지원사업 종료 후, 수행완료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각자의 분담 비율에 따라 "컨설팅기관"에게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이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이 인정된 금액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모기업"은 전항 및 제6조제③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 중 자신의 분담금액에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컨설팅기관"에 기 지급한 금액을 반영하여 가감분을 정산한다.

④ "지원기업"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컨설팅 실시가 불가한 경우, 기 실시한 컨설팅에 대한 비용은 정산할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 제외 협력업체" 에 대하여 컨설팅이 실시 된 경우에는 "공단"과 "모기업"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컨설팅기관"은 "공단", "모기업"에게 제③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컨설턴트 등급 기준 등에 따라 정산된 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분담율 조정)

① "공단"은 "모기업"이 제출한 수행완료 보고서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하여 "컨설팅기관"에게 지급하는 "공단"과 "모기업"의 사업비 분담금율을 최대 20%까지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컨설팅기관"에 기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목표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원사업 수행 완료평가 결과 "공단"으로부터 부실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협약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모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라. "모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이 제13조, 제17조, 제18조에 위반하는 경우

마. "모기업",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이 경영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컨설팅기관"이 허위로 수행일지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사. "컨설팅기관"이 제5조에 따른 수행일지, 교육일지 등 결과물과 제7조에 따른 최종성과물의 제출을 지체하여 기한을 정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아. "모기업"이 "컨설팅기관"로부터 제5조에 따른 수행일지, 교육일지 등 결과물과 제7조에 따른 최종성과물을 제출받고도 "공단"에 대한 제출을 지체하여 기한을 정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 "지원기업"이 "공단" 의 지원사업과 동일한 지원내용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지원기업 중 일부가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지원기업만 제외)

② "모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컨설팅기관"에 기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마호의 경우에 "컨설팅기관"으로부터 기한을 도과하여서라도 결과물 또는 최종성과물을 제출 받은 때에는 그 지체로 인한 손해(지체일수마다 해당 협약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가. 제①항 가. 호의 경우

나. 제①항 나. 호의 경우

다. 제①항 다. 호의 경우

라. 제①항 라. 호의 경우("컨설팅기관"에 의한 사유에 한함)

마. 제①항 마. 호의 경우("컨설팅기관"에 의한 사유에 한함)

바. 제①항 바. 호의 경우

사. 제①항 사. 호의 경우

③ "컨설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컨설팅 비용의 지급일에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한 최고를 하였음에도 "공단" 또는 "모기업"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나. 제18조에 위반하는 경우("모기업"에 의한 사유에 한함)

다. 제①항 마. 호의 경우("모기업"에 의한 사유에 한함)

④ 제①~③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공단" 과 "모기업"은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제②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본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16조에 따른다.

⑥ 제①~③항에 의한 협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본 지원사업의 협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16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비밀유지)

① "컨설팅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모기업" 및 "지원기업"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공단"은 본 협약으로 인해 받은 보고서를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을 공익 목적에 한하여 "컨설팅기관"과 "모기업" 및 "지원기업"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컨설팅기관"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공단"과 "모기업" 및 "지원기업"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4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지원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과 최종성과물 등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공단"과 "모기업"에게 귀속된다.

제15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모기업"과 "컨설팅기관"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 "심사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성과에 관한 증명이 곤란한 때에는 "모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이 자신의 책임으로 수행과정 및 성과의 적정성에 관한 증명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책임)

각 협약 당사자는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른 협약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상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7조(하도급 금지)

"컨설팅기관"은 "공단" 및 "모기업"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양도 등 금지)

"모기업"과 "컨설팅기관"은 "공단"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단"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분쟁해결기관으로 한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공단"이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운영 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공단"은 부당한 이유로 계약 해지를 발생시킨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향후 "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제한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0제④항 관련 지원대상 제외 협력업체>

《 1유형, 지원대상 제외 협력업체 》

❶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❷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❸ 국세·지방세·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❹ 보조금 부정수급자로서 제재대상인 기업
❺ 공단의 국고지원 위탁사업* 해당분야를 지원받은 기업(당해연도)
* 소규모 사업장 민간위탁,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탁, 근골격계질환 예방(위탁), 질식재해예방(위탁) 등

《 2유형, 지원대상 제외 협력업체 》

❶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❷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❸ 국세·지방세·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❹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모기업의 "사내 협력업체"
❺ 보조금 부정수급자로서 제재대상인 기업
❻ 공단의 국고지원 위탁사업* 해당분야를 지원받은 기업(당해연도)
* 소규모 사업장 민간위탁,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탁, 근골격계질환 예방(위탁), 질식재해예방(위탁) 등

<이하 여백>

[서식 7]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선금/정산금 지급 요청서

컨설팅기관명			대표자	
모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모기업 또는 컨설팅기관)	(-)			
전화번호		담당자		
컨설팅 과제명				
신청 내역	협약금액			
	기 지급받은 선금액			
	최종 확정금액			
	선금(정산금) 요청금액			
	입금계좌	계좌번호 : 예 금 주 :		

2023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 입금통장 사본 1부 □ 세금계산서(청구용) 1부 □ (선금)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분) 1부(모기업 제외) □ 4대보험 완납증명원(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분) 1부(모기업 제외)

[서식 8]

컨설팅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매칭지원 위탁기관/공단 작성용)

모니터링 일자 : 2023. . .

□ 컨설팅 개요

모기업명 (담당자)		지원기업명 (담당자)	
컨설팅기관		컨설팅분야	
컨설턴트명		모니터링 수행자	(서명)

□ 컨설팅 수행일정 진행율

과제명	확인사항	진행율		
		계획일수	수행일수	진행율(%)
위험성기법의 전수	*컨설팅 보고서 및 진행사항 등 중간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보고서 및 진행사항 등 중간 점검*			
전체일정				

□ 컨설팅 실적 및 계획

○ 컨설팅 추진실적

수행단계	수행내용	모니터링 결과	비고
실태컨설팅	*실태 컨설팅 수행일자, 내용 및 결과물,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재*	*- 3일차 컨설팅 미실시함 → 2일차 종료함*	*사업비 정산시 삭감검토*
인식개선 교육	*인식개선 교육일자, 내용 및 결과물,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재*	*- 자료 제공 , 교안 내용 등 적정함* *- 교육강사 : 실태컨설팅 요원 투입 등 적정함*	

○ 향후 컨설팅 추진계획

수행단계	향후계획	비고
확인 컨설팅	*확인 컨설팅 수행(예정)일자, 주요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재*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확인 컨설팅	*확인 컨설팅 수행(예정)일자, 주요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모니터링 결과 총평

○ 당 지원기업은 00 모기업소속 사내 협력업체로, '23년 상생협력업사업 매칭지원에 컨설팅과제 1번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로 참여 함(공단 결정 금액 1,500만원)
○ '23.8.2(수) 현장 모니터링 실시 결과
- (잘된점) 매칭지원 계획대비 컨설팅 실시 내용 및 진행율(50%) 적정함
- (개선할점) 컨설팅기관의 지원기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절차" 등 자료 제공(OPS 등) 필요
- (기타 추가사항) 수행완료 보고서 작성내용 등 안내
○ 그 외 추가 특이사항 등 기입

□ 컨설팅 과정의 애로사항

컨설팅기관 측면	
참여기업 (모기업, 지원기업) 측면	

[서식 9]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변경요청서

모기업		
컨설팅기관		
변경사항	☐ 협약기간 (연장)변경 ☐ 컨설팅 계획 변경(과제, 투입일수, 컨설턴트 등) ☐ 기 타( )	
변경내용		
기 존		변 경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매칭지원 분야 변경을 요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모기업	대표자	(인/서명)
컨설팅기관1	대표자	(인/서명)
컨설팅기관2	대표자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10]

2023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

2023 . .

모기업	**대표자**	(인/서명)
컨설팅기관 1	**대표자**	(인/서명)
컨설팅기관 2	**대표자**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수행완료 보고서 요지

❑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역		
모기업		소재지	
모기업 담당자		연락처	
사업장관리번호 (개시번호)		주생산품	
컨설팅기관		협약금액	
컨설턴트		컨설팅기간	
참여 지원기업	지원기업 1, 지원기업 2, 지원기업 3, 지원기업 4, 지원기업 5		

<컨설팅과제> ※ ☑ 해당분야 선택 / 중복 선택 가능

분야		선택	지원내용
①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산업안전분야	□	①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	②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	③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
	산업보건분야	□	④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⑤ 근골격계질환 작업 개선
		□	⑥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② 안전관리 역량향상		□	⑦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대 항목 진단·개선
③ 안전의식 확산			⑧ CEO 인식개선,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추가 선정과제> **※ 1유형 참여 모기업에 한함(모기업에서 체크)**

□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 (합동) 캠페인 □ 안전보건물품 구매

□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교육 참석 지원 □ 안전보건진단

□ 근로자 휴게시설 □ 작업환경측정 □ 기타( )

❑ 컨설팅과제 추진결과

- 1유형(컨설팅과제)

지원기업	컨설팅과제	추 진 계 획	추 진 결 과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지원기업1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검토 - 기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검토(현장 확인 병행) - 위험성평가 기법 안내 및 적정 실시 가이드 제공 -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2개 공정) - 인식개선 교육(20명)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개정(1식) - 위험성평가 결과서 검토(3개 공정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발굴, 개선대책 제시 - 위험성평가 기법 안내(KRAS, JSA 등 4개 기법) - TBM 실시 기준 및 방법 안내 -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2개 공정) - 인식개선 교육(25명)
지원기업2	3대사고유형·8대위험요인	- 현장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인식개선 교육(15명)	
지원기업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현장 공정 및 사용 화학물질의 위험성 분석 - 폭발위험장소 구분 필요성 검토 - 현재의 폭발위험 예방조치 사항 파악 -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적정한 방폭설비 설치 안내 - 인식개선 교육(25명)	
지원기업2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 밀폐공간 작업안전지침 작성(1식) - 밀폐공간 작업 여부 점검 - 밀폐공간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2개 공정) - 현재의 질식재해 예방조치 적정성 검토 - 인식개선 교육(15명)	
지원기업2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체계구축 매뉴얼 검토 및 공동 작성(1식) - 7대 핵심요소 이행상태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 인식개선 교육(15명)	

- 1유형(추가선정과제-안전보건 활동과제) ※ 모기업에서 작성

지원기업	컨설팅과제	추 진 계 획	추 진 결 과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전체	안전보건 세미타	○ 세미나 실시(1회) - 주제 : 중대법의 이해 - 일자 : 2023. 6. 25 - 참석자 : 0000기업 등 5개 기업(40명)	○ 세미나 실시(1회) - 주제 : 중대법의 이해 - 일자 : 2023. 6. 30 - 참석자 : 0000기업 등 6개 기업(50명)
지원기업4	안전보건 물품	○ 안전보건물품 구매·지급 - 안전화(20켤레) - 자동제세동기(1대) - 쿨-키트(30개)	○ 안전보건물품 구매·지급 - 안전화(20켤레) - 자동제세동기(1대) - 쿨-키트(30개)
지원기업5	안전보건진단	○ 진단 실시완료 - 일정 : 9.1~9.30	○ 사업장내 주요 위험요인 등 개선대책 제시 - 진단보고서 참고 - 실시 : 9.1~9.30(OO등 3개소)
지원기업6	근로자 휴게시설	○ 휴게시설 설치(OO등 5개소) - 일정 : 9.1~9.30	○ 휴게시설 설치 완료(OO등 5개소) - 일정 : 9.1~9.30
지원기업7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측정 실시완료 - 일정 : 9.1~9.30	○ 측정주요내용 - 인자: OOO등 O종 - 실시기관 :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 2유형(컨설팅과제)

지원 기업	컨설팅 과제	추 진 계 획	추 진 결 과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지원기업1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검토 - 기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검토(현장 확인 병행) - 위험성평가 기법 안내 및 적정 실시 가이드 제공 -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2개 공정) - 인식개선 교육(20명)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개정(1식) - 위험성평가 결과서 검토(3개 공정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발굴, 개선대책 제시 - 위험성평가 기법 안내(KRAS, JSA 등 4개 기법) - TBM 실시 기준 및 방법 안내 -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2개 공정) - 인식개선 교육(25명)
지원기업2	3대사고유형·8대위험요인	- 현장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인식개선 교육(15명)	
지원기업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현장 공정 및 사용 화학물질의 위험성 분석 - 폭발위험장소 구분 필요성 검토 - 현재의 폭발위험 예방조치 사항 파악 -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적정한 방폭설비 설치 안내 - 인식개선 교육(25명)	
지원기업2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 밀폐공간 작업안전지침 작성(1식) - 밀폐공간 작업 여부 점검 - 밀폐공간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2개 공정) - 현재의 질식재해 예방조치 적정성 검토 - 인식개선 교육(15명)	
지원기업2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체계구축 매뉴얼 검토 및 공동 작성(1식) - 7대 핵심요소 이행상태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 인식개선 교육(15명)	

❑ 첨부서류

- 매칭지원 수행완료 확인서(서식10-1)
- 컨설팅 수행일지(서식10-2)
- 매칭지원 수행 정산자료(서식10-3)
-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선정과제) 수행 결과* 및 소요비용 증빙자료**

  * 세미나, 캠페인, 안전보건진단, 근로자휴게시설,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자료 등의 결과물(진단보고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휴게시설 설치 내역, 자료집, 배포내역, 사진 등)

  **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물가정보자료, 교육 이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 컨설팅 보고서 및 교육 실시 자료(한글파일, PPT, PDF 등 자유로운 형태로 첨부)

[서식 10-1]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수행완료 확인서

2023년도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컨설팅 수행기관의 완료보고서 검토 후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최종완료를 확인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컨설팅기관명	
컨설팅 과제명	
컨설팅 기간	
협약 금액	
완료보고서* 접수일자	
최종완료 확인일자	

2023 년 월 일

(확 인 자)

모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서명)

[서식 10-2]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수행일지

지원기업명		수행일자	2023 . . .
컨설팅기관		컨설팅분야	
참여컨설턴트	*컨설턴트1* (서 명) *컨설턴트2* (서 명)	현장참여자 (지원기업)	

수행일자	수 행 내 용	비 고
2023.5.25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검토* *- 기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검토(현장 확인 병행)*	*실태 컨설팅*
2023.5.26	*- 기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검토(현장 확인 병행)* *- 위험성평가 기법 안내 및 적정 실시 가이드 제공*	*실태 컨설팅*
2023.5.27	*-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2개 공정)* *- CEO 및 관리감독자(2명) 면담 실시(위험성평가 실시 기준)* *- 실태 컨설팅 보고서 작성*	*실태 컨설팅*
:	:	
2023.6.2	*- 인식개선 교육(20명)*	*13:00 ~ 15:00*
2023.7.25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개선사항 적정성 검토*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서 검토(현장 확인 병행)*	*확인 컨설팅*
2023.7.26	*- 기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검토(현장 확인 병행)* *- 확인 컨설팅 보고서 작성*	*확인 컨설팅*
산출물	*※ 수행결과에 따른 컨설팅 보고서, 개선사항 결과물, 배포자료, 교육자료 등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에 별첨)*	

위와 같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모기업	담당	(인/서명)
컨설팅기관1	대표자	(인/서명)
컨설팅기관2	대표자	(인/서명)

[서식 10-3]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수행 정산자료

□ 계획 대비 추진결과

구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참여기업	추진과제	결정금액	집행금액	
컨설팅비용	*지원기업 1*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 (컨설팅)2명× 5회× 600,000원 = 6,000,000원* *○ (교육) 2H× 2회× 300,000원 = 1,200,000원*	*○ (컨설팅)2명× 5회× 600,000원 = 6,000,000원* *○ (교육) 2H× 2회× 300,000원 = 1,200,000원*	
	지원기업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 (컨설팅)2명× 5회× 600,000원 = 6,000,000원* *○ (교육) 2H× 2회× 300,000원 = 1,200,000원*	*○ (컨설팅)2명× 5회× 600,000원 = 6,000,000원* *○ (교육) 2H× 2회× 300,000원 = 1,200,000원*	
	모기업	*안전보건 세미타*	*○ (1식)= 2,000,000원*	*○ (1식)= 2,000,000원*	
	모기업	*안전보건 물품*	*○ (1식)= 2,000,000원*	*○ (1식)= 2,000,000원*	
	모기업	*안전보건 진단*	*○ (1식)= 2,000,000원*	*○ (1식)= 2,000,000원*	
	모기업	*근로자 휴게시설*	*○ (2EA)= 2,000,000원*	*○ (2EA)= 2,000,000원*	
	합계 (VAT포함)		*22,400,000원*	합계 (VAT 포함)	*22,400,000원*

[서식 11]

매칭지원 수행완료보고서 사전검토 결과서(총괄)_모기업

모기업명		근로자수(모기업)	
매칭지원 지원기업 수	□ 사내 (개) □ 사외 (개) □ 지역중소기업 (개)		

신청현황 (참여분야)

<컨설팅과제> ※ ☑ 해당분야 선택 / 중복 선택 가능

분야		선택	지원내용
①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산업안전분야	□	①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	②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	③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
	산업보건분야	□	④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⑤ 근골격계질환 작업 개선
		□	⑥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② 안전관리 역량향상		□	⑦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대 항목 진단·개선
③ 안전의식 확산			⑧ CEO 인식개선,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모기업의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 선정과제)>

□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 (합동) 캠페인 □ 안전물품 구매
□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교육 참석 지원 □ 안전보건진단
□ 근로자휴게시설 □ 작업환경 측정 □ 기타( )

1. 모기업의 컨설팅 총 집행금액 적정성 확인

■ 1유형 (컨소시엄 당 최고 2억원 한도)
■ 2유형 (협력업체 당 최고 3,000만원, 컨소시엄 당 4억원 한도)

집행금액		
	컨설팅과제	□ 1유형 : 33,400,000 원 , □ 2유형 : 5,000,000 원
	활동과제	□ 1유형 추가 선정과제 : 4,000,000 원
총 집행금액		42,400,000원

컨설팅과제 집행금액	38,400,000 원	모기업 분담금	19,200,000 원
		공단 분담금	19,200,000 원
안전보건 활동과제 집행금액	4,000,000 원	모기업 분담금	2,000,000 원
		공단 분담금	2,000,000 원

검토의견	

2. 제출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		검토항목 (적합 : ○, 부적합 : X)	검토의견 (적합/부적합 사유)
안전보건 활동과제	안전보건 활동과제 수행결과 (세미나, 캠페인의 결과물)		
	소요비용 증빙자료(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물가정보자료, 교육이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3. 과제 유형별 검토의견

■ 지원기업별 1유형(컨설팅 과제)

지원기업명	추진과제	집행금액(원)	검토금액(원)	검토의견 (적합 / 부적합 사유)
지원기업 1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7,850,000		부적합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	7,850,000		적합
지원기업 2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1,000,000		적합

■ 모기업의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 선정과제) : 안전보건 세미나, 캠페인, 안전보건 진단 등

추진과제	단위	세부내역	집행금액 (원)	검토금액 (원)	검토의견 (적합 / 부적합 사유)
안전보건 세미나	1식	• 참여 협력업체 안전보건 세미나 2회 - 내용 : ① 안전보건체계 구축지원 방법, ② 실태 컨설팅 시 발굴된 위험요인 공유, ③ 중대법 관련 내용 세미나 등 - 대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CEO 10명 - 장소: OO 세미나실 - 일정(예정) : '23 .4. 5.	3,000,000		
안전보건 캠페인	1식	• 참여 협력업체 합동 안전보건 캠페인 1회 - 내용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 사고사망만인율 0.37‰ 달성을 위한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대중소 상생 안전캠페인 - 대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 30명 - 일정(예정) : '23. 4. 5 - 장소 : OO 협력업체 제 1공장	1,000,000		
안전보건 진단	1식	• 참여 기업 안전보건 진단 (1식) - 내용 : 사업장내 주요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제시 - 대상: OO 등 3개소 - 일정(예정) : '23. 8.30~9.30	5,000,000		
산출금액 합계(부가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16,000,000		

■ 지원기업별 2유형 (컨설팅 과제)

지원기업명	추진과제	집행금액(원)	검토금액(원)	검토의견 (적합 / 부적합 사유)
지원기업 1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3,000,000*		*적합*
지원기업 2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1,000,000*		*적합*
지원기업 3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1,000,000*		*적합*

[서식 12]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수행완료 심사위원회 회의록

심사일시		심사장소	
심사안건	▸ 심사대상 기업 : *OOO 등 OO 개소* - 매칭지원 확정금액 : *총 OO 억원*		

■ **심사내용 및 결과**

○ **심사대상 기업 :** *OOO 등 OO 개소*

○ **매칭지원 확정금액 :** *총 OO 억원*

이상의 내용으로 결정 함/승인 함

[붙임1] 기업별 수행완료 평가표

[붙임2] 기업별 수행완료 평가 집계표

■ 심사결과 공개여부	□ **공개(전체)**
	□ **부분공개**
	■ **비공개***(사유 : 심사위원 개인정보 보호, 신청사업장 및 협력업체 정보 보호)*

■ **심사위원 서명**

구분	성명	서 명	찬반(○,×)	기타의견
내부				
외부				

(을지)

■ 심사내용 및 결과

심사 모기업명	수행완료 평가점수	매칭지원 확정금액		
		1유형 컨설팅과제	1유형 안전보건활동과제	2유형 컨설팅과제
모기업 1	*75*	*20,000,000원*		
		9,000,000원	*1,000,000원*	*10,000,000원*
모기업 2	*62*	*20,000,000원*		
		9,000,000원	*1,000,000원*	*10,000,000원*
모기업 3	*53*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원*	*9,000,000원*
	이하여백			

[서식 12-1]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수행완료 평가표

(컨설팅기관별 평가)

2023년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 수행의 충실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23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모기업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컨설팅분야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점
세부추진과제 달성도* (20)	계획서에 따른 추진결과는 적정한가? - 매우우수(90%이상), 우수(80%이상), 보통(60%이상), 미흡(40%이상), 불량(20%미만)	20~17	16~13	12~9	8~5	4~1	
추진방법 타당성 (20)	컨설팅 과제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의 내용은 최초 계획내용과 일치하게 수행하였는가?	20~17	16~13	12~9	8~5	4~1	
수행요원 구성 및 수행능력 (20)	사업완료에 따른 컨설팅 요원의 자격은 적합하며, 전문성과 수행능력은 최초 계획대비 일치하는가?	20~17	16~13	12~9	8~5	4~1	
수행내용 충실성 (20)	참여기업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지원하였는가?	20~17	16~13	12~9	8~5	4~1	
공헌도(20)	컨설팅 결과물의 성과가 참여기업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20~17	16~13	12~9	8~5	4~1	
합 계 (100)		총 점 점					

* 추진과제 달성도 평가 : 모기업당 지원기업별 컨설팅 과제 달성도 평균을 측정(1유형 안전보건 활동과제는 평가에서 제외)

2. 평가의견

※ 수행요원 구성 및 수행능력 항목 등은 사전검토서와 연계하여 평가

[서식 12-2]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수행완료 평가 집계표】

◎ 과 업 명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수행완료 평가
◎ 평가대상 : *OOO 기업(기업별 작성)*

평가위원	평가점수	비고
평 균		
총 점		
이하여백		

일자 : 2023. . .

담당 : *업무담당자* (인/서명)	확인 : *부서장* (인/서명)

[서식 12-3]

심사위원 심사지침 준수 각서

본인은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수행완료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수행완료"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심사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2023년 00 월 00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12-4]

청 렴 서 약 서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수행완료 심사위원회

본인은 위의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수행완료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서 동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청렴의무 주요 내용

1. 업무관련자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으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한다.
2. 업무관련자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심사 시 알게 된 내용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4. 심사안건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해당심사를 회피한다.

2023년 00월 00일

서 약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 별지 서식 1> 안전보건 진단보고서 서식(양식)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

- 사업장명 -

202○. ○○.

㈜○○○ 산업안전

[별첨1] <예시 1> : 책등 기재사항

	안전 (보건, 종합) 진단보고서 사업장명 2020○.○ ㅇㅇ산업안전	

[별첨2]<예시 2> : 내표지 기재사항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

- 사업장명 -

202○. ○○.

㈜ ○○ 산업안전

[별첨3]<예시 3> : 제출문안 작성

제 출 문

○○○○ (주) 대표이사 귀하

이 보고서를 ○○○○(주) 안전(보건, 종합)진단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 ○. ○

진단기관 : ㈜○○ 산업안전

[별첨4]<예시 4> : 본문 목차작성

- 목 차 -

[PART 1] - 공통

제1장 진단개요 ·····

제1절 서 언 ·····

제2절 사업장 개요 ·····

제3절 진단현황 ·····

제4절 주요 공정흐름도 ·····

제5절 중대재해 발생현황 및 대책(해당시) ·····

제6절 재해통계 분석 ·····

제7절 위험성 기준 ·····

제2장 진단총평 ·····

제3장 진단결과 ·····

제1절 진단결과 총괄 ·····

제2절 분야별 진단결과 ·····

1. 안전보건시스템분야 / OO(page 번호)

[PART 2] - 안전진단

2. 기계안전분야 / OO
3. 전기안전분야 / OO
4. 화공안전분야 / OO
5. 건설안전분야 / OO (※제조업 내 개·보수 공사 시 작성)
6. 안전일반분야 / OO (※이상의 항목을 제외한 일반안전분야 작성)

[PART 3] - 보건진단

7. 산업보건관리분야 / OO
8. 작업환경관리분야 / OO
9. 건강관리분야 / OO
10. 산업환기분야 / OO
11. 인간공학분야 / OO

제2절 부록 및 참고자료 ·····

○ 진단분야별 작성범위

- 표준모델의 목차구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안전진단보고서 - PART 1 + PART 2

(2) 보건진단보고서 - PART 1 + PART 3

(3) 종합진단보고서 - PART 1 + PART 2 + PART 3

[별첨5]<예시 5> : 본문내용 작성

제1장 진단개요

제1절 서언

○ 진단구분 (명령/자율, 종합/안전/보건 구분) 및 진단사유를 명기한다.
○ 진단 주관기관 및 진단 소요기간을 명기한다.
○ 진단대상시설 및 진단공정을 명기한다.
○ 진단팀별 구성인원을 작성한다.
○ 진단범위(예 : 시스템분야, 협력업체 관리분야, 화공안전분야 등)를 명기한다.
○ 마지막에 협조감사 문구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2절 사업장 개요

1.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업 종					
근 로 자 수	OO명(직영 OO명, 협력업체 O개사 OO명)				
부 지 면 적	전체 OOOm^2				
주 생 산 품					

2. 사업장 배치도

사업장 Lay-out
(전경사진으로 대체 가능)

3. 사업장 조직도

4. 안전보건 조직도

5. 주요 협력업체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범위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만 작성한다.)

가. 상주 협력업체 현황 : 총O개사, O명

협 력 사 명	인원(명)	작업공정 또는 주요업무

나. 비상주 협력업체 현황(한시적 작업) : 총O개사, O명

협 력 사 명	인원(명)	작업공정 또는 주요업무

제3절 진단현황

1. 진단종류

- (종합/안전/보건)진단 (명령/자율진단)

2. 진단대상

- OO사업장 OO공정 (☐ 전체 / ☐ 부분)

3. 진단반 및 업무분장

(진단 반장을 포함하여 진단반별로 조직도를 작성하고 진단 분야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기)

4. 진단반 구성현황 (O개 기관 총 OO명)

구분	소속 및 직책	성명	분야	자격	진단대상	진단기간 (현장/보고서)
진단 기관					OO공장 OO공정	
진단 기관						
진단 기관						

5. 진단일정 : 년 월 일(요일) ~ 년 월 일(요일) [O일간]

- 현장진단 : 년 월 일 ~ 년 월 일(O일간)
- 보고서 작성 : 년 월 일 ~ 년 월 일(O일간)

6. 진단장비

구분	장비명	모델	용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제4절 주요 공정흐름도

1. 공정흐름도

(주요 공정흐름을 다이어그램 방식으로 도식화하여 작성)

2. 공정개요

- 각 공정별로 대략적인 공정내용을 표로 제시하되 단위공정 또는 생산 제품별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면 그룹화하여 제시

공정명	제조공정 설명(요약)	주요 설비 (유해위험설비 중심)

제5절 중대재해발생 현황 및 대책(해당시)

1. 중대재해 발생현황 요약

※ 육하원칙에 의해 요약기술

2. 중대재해 발생 설비(기인물)

3. 중대재해 원인분석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이미 개선이 완료된 사안이라도 근원적 안전성확보 측면에서 개선대책을 제시하되 세부진단 개선항목 기술에 준하여 제시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한 분석 및 근원적 안전대책 제시는 중요한 사안으로 가급적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재해부터 기술
○ 분석대상 중대재해는 아래와 같음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6절 재해통계 분석

□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00～'00년, 0년간)

※ 분석기간은 최근 3년간을 일반적인 분석기간으로 하되 분석자가 조정 가능

1. 재해현황 분석 및 시사점

※ 기술 내용은 총괄현황, 재해유형, 평균 재해율 등 총론을 기술하되 표,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시인성을 강화하고 분석된 재해 통계와 업종대비 재해수준, 재해자 근속연수별 통계, 발생 시간대, 성별 등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요약 기술

2. 동종업체 평균재해율 비교

※ 통계산출 가능시 동종업체 평균과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등 비교

3. 개선방안

※ 시사점을 중심으로 개선대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프로그램 운영, 장기근속자 안전보건교육강화, 타사의 우수 안전보건 사례 적용 검토 등) 제시

제7절 위험성 기준

□ 위험성 기준

- 점검 항목별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작성하고, 사업장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을 진단반이 별도 제시

  ※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가능성 및 중대성은 사업장 담당자 또는 현장근로자의 면담, 재해빈도, 그간의 재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거나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참조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1. 가능성(빈도)

※ 빈도 매트릭스 제시

2. 중대성(강도)

※ 강도 매트릭스 제시

3. 위험도 산정

※ 위험도 산정 매트릭스 제시

4.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결정은 산정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도 계산값(조합)에 따라 그 위험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가 또는 허용할 수 없는 범위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도의 수준에 따라 관리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서 위험감소대책 설정에 대한 기준이 됨.

제2장 진단총평

(작성요령)

○ 진단총평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핵심사항은 진단사업장의 가장 본질적이고 일반적인 위험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

- 그간 해당사업장의 재해발생 통계에 입각한 재해유형, 재해다발 설비와 이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원칙 제시
- 사업장의 업종, 생산공정의 특성상 보유한 기본적인 위험성(예를 들어 식료품 가공공장의 경우 설비 세척, 살균 등에 사용되는 다량의 물에 의한 누전, 감전 위험 등)에 대해 제시

○ 다음으로는 진단대상 사업장의 각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기술하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요약하여 작성한다.

- 기술시 안전보건시스템분야, 안전분야(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제조업 내 개·보수시), 안전일반), 보건분야(산업보건관리, 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 산업환기, 인간공학) 중에서 사업장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선요구사항을 요약하여 총론만 적시(각론상 개별사항은 사안별 진단내용에서 언급되므로 불필요)

○ 마지막으로 관리시스템(조직 등),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질적수준에 대해 언급

- 질적수준은 타사업장 대비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각각 언급하여 형평성 고려

○ 결론적으로 진단 총평은 해당 사업장의 실태에 따른 수준, 시급한 개선 내용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잠재된 위험성에 대하여 언급되어야 함

제3장 진단결과

(작성요령)

□ 제1절 : 진단결과 총괄

○ 진단결과 문제점/개선방안 및 진단장비를 활용한 측정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표로 제시함으로서 사업장에서 개선활동을 누락없이 실시할 수 있고, 진단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함

1. 진단결과 총괄표

○ 분야는 진단분야를 기재

○ 문제점은 진단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공정명, 설비명을 명확히 하여 요약 기재

○ 개선방안은 항목별 진단결과 개선방안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법조항은 해당 문제점의 법적근거, 해당되는 본문 페이지를 기재

○ 비고란은 '필수', '권고'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진단장비 측정결과 총괄표

○ 진단 시 사용된 모든 진단장비별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여 진단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전체 위험수준 파악이 용이토록 함

○ 측정결과 항목에는 실제 측정값 기재

○ 기준항목은 측정 항목별 법적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진단자 권고치가 있는 경우 권고치를 제시하고 비고란에 권고기준이라는 점을 명기

○ 적정여부는 기준(또는 진단자 권고치) 대비 적정, 부적정으로 표기

□ 제2절 : 분야별 진단결과

○ 진단결과는 각 공장 혹은 공정/설비별로 그룹화하여 순서대로 작성 가능

- 가능한 과학적 진단기법*과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시

  * 피해예측프로그램, 피로수명 예측, 열화상 분석, 직무스트레스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 기업 안전문화 평가 등

- 진단항목별 위험도 산출표는 해당사업장 기준 또는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제시

제1절 진단결과 총괄

1. 진단결과 총괄표

연번	분야	문제점	개선방안	법조항 본문 page	비고

2. 진단장비 측정결과 총괄표

장비명	측정장소	측정결과		측정사진	비고
		기준	적정여부		

제2절 분야별 진단결과

1. 안전보건시스템 분야

○ 재해발생 현황분석, 안전보건계층별 역할 및 활동의 적정성,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운영의 적정성,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시스템분야 진단 항목에 대해 관련서류 및 매뉴얼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안전보건시스템분야에 해당하는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2) 개선대책

[법적사항]

○ 해당분야 문제점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적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권장사항]

○ 법적 개선대책을 제외한 권장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관련규격 및 참고자료
- 해당되는 법 조항, KOSHA Guide 지침명 또는 기타 자료의 제목 및 내용을 기재한다.

2. 기계안전분야

○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방지,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기계안전분야에 해당하는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 관련사진을 첨부하고, 필요시 진단 장비를 활용한 측정실시 및 측정값을 기재한다.

위치		[사진 2-1] 관련 사진 설명	
진단 장비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측정값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현재 위험수준을 산출한다.

[현재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공정	위험성 수준	위험 수준 [최대 20점(빈도5×강도4)]																			
OO 공정	허용불가 위험	빈도(4)					강도(4)				현재 상태 빈도 4단계, 강도 4단계로써 종합 위험도는 16점임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개선대책

[법적사항]

○ 해당분야 문제점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적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권장사항]

○ 법적 개선대책을 제외한 권장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완료시 위험 감소 정도를 산출한다.

[개선완료시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위험 수준 [최대 20점(빈도5×강도4)]																			
빈도(1)					강도(4)				개선 후 빈도 1단계, 강도 4단계로 종합 위험도는 4단계로 낮아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관련규격 및 참고자료
- 해당되는 법 조항, KOSHA Guide 지침명 또는 기타 자료의 제목 및 내용을 기재한다.

3. 전기안전분야

○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교류아크용접기 관리상태, 폭발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전기안전분야에 해당하는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 관련사진을 첨부하고, 필요시 진단 장비를 활용한 측정실시 및 측정값을 기재한다.

위치		[사진 3-1] 관련사진 설명	
진단 장비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측정값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현재 위험수준을 산출한다.

[현재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공정	위험성 수준	위험 수준 [최대 20점(빈도5×강도4)]																			
OO 공정	허용불가 위험	빈도(4)					강도(4)				현재상태 빈도 4단계, 강도 4단계로써 종합 위험도는 16점임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개선대책

[법적사항]

○ 해당분야 문제점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적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권장사항]

○ 법적 개선대책을 제외한 권장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완료시 위험 감소 정도를 산출한다.

[개선완료시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위험 수준 [최대 20점(빈도5×강도4)]																			
빈도(1)					강도(4)				개선 후 빈도 1단계, 강도 4단계로 종합 위험도는 4단계로 낮아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관련규격 및 참고자료
- 해당되는 법 조항, KOSHA Guide 지침명 또는 기타 자료의 제목 및 내용을 기재한다.

4. 화공안전분야

○ 사업장의 위험물 취급 및 관리현황, 화기관리현황,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관리, 화학설비 및 건조설비 관리, 폭발성·발화성·인화성물질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화공안전분야에 해당하는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 관련사진을 첨부하고, 필요시 진단 장비를 활용한 측정 실시 및 측정값을 기재한다.

위치		[사진 4-1] 관련사진 설명	
진단 장비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측정값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현재 위험수준을 산출한다.

[현재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공정	위험성 수준	위험 수준[최대 20점(빈도5×강도4)]																			
OO 공정	허용불가 위험	빈도(4)					강도(4)				현재상태 빈도 4단계, 강도 4단계로서 종합 위험도는 16점임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개선대책

[법적사항]

○ 해당분야 문제점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적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권장사항]

○ 법적 개선대책을 제외한 권장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완료시 위험 감소 정도를 산출한다.

[개선완료시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위험 수준 [최대 20점(빈도5×강도4)]																			
빈도(1)					강도(4)				개선 후 빈도 1단계, 강도 4단계로 종합 위험도는 4단계로 낮아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관련규격 및 참고자료
- 해당되는 법 조항, KOSHA Guide 지침명 또는 기타 자료의 제목 및 내용을 기재한다.

5. 건설안전분야 (제조업 내 개·보수 공사시)

○ 사업장 내 개·보수 공사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된 위험 기계기구 관리, 감전재해 예방, 화재·폭발 예방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개·보수 공사에 해당하는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 관련사진을 첨부하고, 필요시 진단장비를 활용한 측정 실시 및 측정값을 기재한다.

위치		[사진 5-1] 관련사진 설명	
진단 장비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측정값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현재 위험수준을 산출한다.

[현재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공정	위험성 수준	위험 수준[최대 20점(빈도5×강도4)]																			
OO 공정	허용불가 위험	빈도(4)					강도(4)				현재상태 빈도 4단계, 강도 4단계로서 종합 위험도는 16점임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개선대책

[법적사항]

○ 해당분야 문제점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적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권장사항]

○ 법적 개선대책을 제외한 권장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완료시 위험 감소 정도를 산출한다.

[개선완료시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위험 수준[최대 20점(빈도5×강도4)]																			
빈도(1)					강도(4)				개선 후 빈도 1단계, 강도 4단계로 종합 위험도는 4단계로 낮아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관련규격 및 참고자료
- 해당되는 법 조항, KOSHA Guide 지침명 또는 기타 자료의 제목 및 내용을 기재한다.

6. 안전일반분야

○ 작업장 및 통로에 의한 위험방지, 개인보호구 선정 및 착용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기타 안전일반분야에 해당하는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 관련사진을 첨부하고, 필요시 진단장비를 활용한 측정 실시 및 측정값을 기재한다.

위치		[사진 6-1] 관련사진 설명	
진단 장비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측정값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현재 위험수준을 산출한다.

[현재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공정	위험성 수준	위험 수준 [최대 20점(빈도5×강도4)]																			
OO 공정	허용불가 위험	빈도(4)					강도(4)				현재상태 빈도 4단계, 강도 4단계로써 종합 위험도는 16점임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개선대책

[법적사항]

○ 해당분야 문제점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적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권장사항]

○ 법적 개선대책을 제외한 권장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완료시 위험 감소 정도를 산출한다.

[개선완료시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위험 수준[최대 20점(빈도5×강도4)]																			
빈도(1)					강도(4)				개선 후 빈도 1단계, 강도 4단계로 종합 위험도는 4단계로 낮아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관련규격 및 참고자료
- 해당되는 법 조항, KOSHA Guide 지침명 또는 기타 자료의 제목 및 내용을 기재한다.

7. 산업보건관리분야

○ 작업장 청결, 채광 및 조명, 사무실 및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대책, 휴게시설·세척시설 설치기준 및 개선대책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보건관리분야에 해당하는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 관련사진을 첨부하고, 필요시 진단장비를 활용한 측정 실시 및 측정값을 기재한다.

위치		[사진 7-1] 관련사진 설명	
진단장비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측정값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현재 위험수준을 산출한다.

[현재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공정	위험성 수준	위험 수준 [최대 20점(빈도5×강도4)]																			
OO 공정	허용불가 위험	빈도(4)					강도(4)				현재상태 빈도 4단계, 강도 4단계로써 종합 위험도는 16점임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개선대책

[법적사항]

○ 해당분야 문제점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적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권장사항]

○ 법적 개선대책을 제외한 권장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완료시 위험 감소 정도를 산출한다.

[개선완료시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위험 수준[최대 20점(빈도5×강도4)]																			
빈도(1)					강도(4)				개선 후 빈도 1단계, 강도 4단계로 종합 위험도는 4단계로 낮아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관련규격 및 참고자료
- 해당되는 법 조항, KOSHA Guide 지침명 또는 기타 자료의 제목 및 내용을 기재한다.

8. 작업환경관리분야

○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관리대상/허가대상/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대책,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경고표시 부착,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분진 및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대책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작업환경분야에 해당하는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 관련사진을 첨부하고, 필요시 진단장비를 활용한 측정 실시 및 측정값을 기재한다.

위치		[사진 8-1] 관련사진 설명	
진단 장비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측정값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현재 위험수준을 산출한다.

[현재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공정	위험성 수준	위험 수준 [최대 20점(빈도5×강도4)]																			
OO 공정	허용불가 위험	빈도(4)					강도(4)				현재상태 빈도 4단계, 강도 4단계로써 종합 위험도는 16점임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개선대책

[법적사항]

○ 해당분야 문제점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적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권장사항]

○ 법적 개선대책을 제외한 권장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완료시 위험 감소 정도를 산출한다.

[개선완료시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위험 수준[최대 20점(빈도5×강도4)]																			
빈도(1)					강도(4)				개선 후 빈도 1단계, 강도 4단계로 종합 위험도는 4단계로 낮아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관련규격 및 참고자료
- 해당되는 법 조항, KOSHA Guide 지침명 또는 기타 자료의 제목 및 내용을 기재한다.

9. 건강관리분야

○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여부,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사후관리 이행의 적정성에 대해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건강관리분야에 해당하는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 필요시 관련사진을 첨부한다.

위치		[사진 9-1] 관련사진 설명

(2) 개선대책

[법적사항]

○ 해당분야 문제점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적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권장사항]

○ 법적 개선대책을 제외한 권장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관련규격 및 참고자료
- 해당되는 법 조항, KOSHA Guide 지침명 또는 기타 자료의 제목 및 내용을 기재한다.

10. 산업환기분야

○ 관리대상/허가대상/금지유해물질 취급작업장 국소배기장치 설치여부 및 제어풍속 등 성능 측정, 후드/덕트/배풍기/공기정화장치 등 적정설치 여부, 전체 환기장치 설치 여부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환기분야에 해당하는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 관련사진을 첨부하고, 필요시 진단장비를 활용한 측정 실시 및 측정값을 기재한다.

위치		[사진 10-1] 관련사진 설명	
진단 장비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측정값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현재 위험수준을 산출한다.

[현재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공정	위험성 수준	위험 수준[최대 20점(빈도5×강도4)]																			
OO 공정	허용불가 위험	빈도(4)					강도(4)				현재상태 빈도 4단계, 강도 4단계로써 종합 위험도는 16점임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개선대책

[법적사항]

○ 해당분야 문제점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적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권장사항]

○ 법적 개선대책을 제외한 권장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완료시 위험 감소 정도를 산출한다.

[개선완료시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위험 수준[최대 20점(빈도5×강도4)]																				
빈도(1)					강도(4)				개선 후 빈도 1단계, 강도 4단계로 종합 위험도는 4단계로 낮아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관련규격 및 참고자료
- 해당되는 법 조항, KOSHA Guide 지침명 또는 기타 자료의 제목 및 내용을 기재한다.

11. 인간공학분야

○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여부, 유해요인조사 실시대상 및 실시여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대상 및 시행여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관한 조치 현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인간공학분야에 해당하는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 관련사진을 첨부하고, 필요시 진단장비를 활용한 측정 실시 및 측정값을 기재한다.

위치		[사진 11-1] 관련사진 설명	
진단 장비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측정값	진단장비 사용시 작성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현재 위험수준을 산출한다.

[현재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공정	위험성 수준	위험 수준[최대 20점(빈도5×강도4)]																			
OO 공정	허용불가 위험	빈도(4)					강도(4)				현재상태 빈도 4단계, 강도 4단계로써 종합 위험도는 16점임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개선대책

[법적사항]

○ 해당분야 문제점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등 법적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권장사항]

○ 법적 개선대책을 제외한 권장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 필요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완료시 위험 감소 정도를 산출한다.

[개선완료시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위험 수준[최대 20점(빈도5×강도4)]																				
빈도(1)					강도(4)				개선 후 빈도 1단계, 강도 4단계로 종합 위험도는 4단계로 낮아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관련규격 및 참고자료
- 해당되는 법 조항, KOSHA Guide 지침명 또는 기타 자료의 제목 및 내용을 기재한다.

제2절 부록 및 참고자료

○ 진단보고서의 개선대책 부분에 명시하였던 관련규격 및 참고자료 (KOSHA Guide 등)의 내용, 기타 자료를 첨부한다.

[별첨 6] 안전보건진단 계약서

(　　)진단 계약서(샘플, 참고용)

1. 사업명 : *상생협력활동 사외협력업체 안전보건진단*
2. 금　액 : 일금 *100,000,000원*
3. 계약기간 : *23년 8월 1일부터*
   23년 8월 30일까지 (30일간)
4. 보고서 제출일자 : *23년 9월 30일(진단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5. 계약 당사자

   의뢰자 : *OO전자(모기업)*

   수행자 : *㈜OO산업안전*

   진단대상 : *OO사외협력업체1, OO사외협력업체2, OO사외협력업체3*

상기(　　)사업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동 사업참여에 있어 공단의 사업추진 지침 등을 준수한다.

제1조(사업장의 대상 및 범위) 본 (　)사업은 계약서에 의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수행토록한다.

제2조(기간) 본 (　　)사업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된 기간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기간합의시) 계약 당사자는 실진단기간, 자료수집·분석 등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합의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 본 (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진단비"라 한다)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다. 또한, 공단 참여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 내부 지침에 따른다.

제4조(보고서) ① 수행자는 사업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수행결과에 관한 보고서 (　　)부를 의뢰자에게 제출한다.

제5조(상호협조) 수행자는 (　　)사업기간중 의뢰자의 요청이 있을시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의뢰자와 합의 하여야 하며 의뢰자는 수행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도면 등의 제공, 측정에 필요한 계기등의 부착과 각종 준비작업, 원재료, 제품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밀보장) ① 수행자는 (　　)사업 기간중 지득한 기밀사항이나 기술자료 등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 누설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행자는 제4조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당사자는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신의 성실) 계약 당사자는 신의를 가지고 (　　)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변경등) 계약 당사자는 상호 동의없이 계약을 취소,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9조(기간연장) 계약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내에 (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거나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뢰자의 사정으로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안내공문에 의거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본 (　)계약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 및 (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본 (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담당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의뢰자 : OO전자(모기업)

수행자 : ㈜OO산업안전

<#별지 서식 2> 휴게시설 설치완료 점검 확인서 양식

휴게시설 설치완료 점검 확인서

□ 휴게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연번	항목	문항	적합여부	
1	크기 적정성	· 최소면적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인가?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적합	□ 부적합
		·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6㎡x공동 사업장수'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면적	□ 적합	□ 부적합
		· 공단에 제출한 투자계획서와 일치하는가?(보조금 신청시 작성)	□ 적합	□ 부적합
2	설치위치 적정성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였는가?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적합	□ 부적합
		· 화재폭발위험장소/유해물질 취급장소/소음/분진을 저장·취급하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는가?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적합	□ 부적합
		·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가?	□ 적합	□ 부적합
3	안내표지 부착	· 휴게실 입구 또는 보기쉬운 장소에 근로자 휴게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4	냉난방 시설	· 냉·난방 및 습도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신청서 상의 모델과 동일한가?(보조금 신청시 작성)	□ 적합	□ 부적합
		· 온습도 확인가능한가?	□ 적합	□ 부적합
5	조명시설	· 공단에 제출한 투자계획서와 일치하는가?(보조금 신청시 작성)	□ 적합	□ 부적합
		· 조도를 100~200lux 수준으로 조절이 가능한가?	□ 적합	□ 부적합
6	휴게비품·설비	· 신청서 상의 제품(쇼파, 의자, 테이블)과 동일한가?(보조금 신청시 작성)	□ 적합	□ 부적합
7	담당자 지정	·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건축법 등 관련법령 준수(휴게실 설치 시 작성)

연번	항목	문항	적합여부	
1	건축법 등 준수	· 건축법, 소방법, 대기환경보존법 등 법적사항(인허가 등)을 준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을 통하여 개선한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충족 등 위의 사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모기업 대표자 (서명)